

제63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이두 연구의 새로운 전개

일시: 2023년 2월 14일(화) 10:00~17:40

장소: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302호

주최: 구결학회

제63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이두 연구의 새로운 전개

일시: 2023년 2월 14일(화) 10:00~17:40

장소: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302호

주최: 구결학회

■ 제63회 구결학회 전국 학술 대회 일정표 ■

시간	발표 내용 및 발표자/토론자	사회자
10:00~10:20	참가자 등록	
10:20~10:30	<개회식> 개회사: 김성주(구결학회장)	문현수(인하대)
[개인 연구 발표]		
10:30~11:00	한국어 추측 부사 ‘설마, 아무래도, 아마도’의 의미 변화 발표자: 강서현(고려대)	하정수(동국대)
11:00~11:30	연결어미 ‘-나’의 의미 기능에 대한 통시적 연구 발표자: 이흥구(서울대)	
11:30~13:00	<점심 식사>	
[기획 주제 발표] 기획 주제: 이두 연구의 새로운 전개		
13:00~13:30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이두사전 편찬의 규모와 방법 발표자: 이건설(단국대)	장경준(고려대)
13:30~14:00	어말어미 표기자로 본 이두의 변천 발표자: 이용(서울시립대)	
14:00~14:20	<휴식>	
14:20~14:50	1379년 張某 漢陽府 奴婢許與斜給立案에 대한 考察 발표자: 조남곤(고려대)	장경준(고려대)
14:50~15:20	기존 吏讀 자료의 보충과 재해석: 濟州 지역 吏讀文을 중심으로 발표자: 오창명(제주국제대)	
15:20~15:40	<종합 토론> 좌장: 박성종(가톨릭관동대) 토론자: 황선엽(서울대) 김병준(서울대) 허인영(인하대)	박성종 (가톨릭관동대)
16:40~17:00	<휴식>	
[교육 및 시상]		
17:00~17:10	연구윤리 교육	문현수(인하대)
17:10~17:20	구결학회 학술논문상 시상	
17:20~17:30	총회	
17:30~17:40	<폐회식> 폐회사: 김성주(구결학회장)	

■ 목 차

<개인 연구 발표>

한국어 추측 부사 ‘설마, 아무래도, 아마도’의 의미 변화	강서현	7p
연결어미 ‘-나’의 의미 기능에 대한 통시적 연구	이흥구	29p

<기획 주제 발표>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이두사전 편찬의 규모와 방법	이건식	49p
어말어미 표기자로 본 이두의 변천	이용	77p
1379년 張某 漢陽府 奴婢許與斜給立案에 대한 考察	조남곤	91p
기존 吏讀 자료의 보충과 재해석: 濟州 지역 吏讀文을 중심으로	오창명	115p

<개인 연구 발표>

한국어 추측부사 ‘설마, 아무래도, 아마도’의 의미 변화 연구¹⁾

강서현(고려대)

1. 머리말

본고는 추측부사 ‘설마’, ‘아무래도’, ‘아마도’를 대상으로 하여 통시적인 의미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해당 어휘들이 주로 어떠한 의미를 거쳐왔으며 그러한 의미는 [추측]과 개념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고찰할 것이다.

통시적 관점의 연구에서 추측부사는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추측부사에 대해서는 개별 어휘를 중심으로 어휘사를 기술하거나 부사의 하위분류 체계를 다루면서 추측부사를 부분적으로 언급한 몇몇 논의가 확인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설마, 아무래도, 아마도’ 중 ‘설마’는 기존에 김무림(2008), 이상훈(2012) 등에서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고찰한 바 있으나 ‘아무래도’나 ‘아마도’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설마, 아무래도, 아마도’는 통시적 변화 과정에서 서로 유사한 의미를 거쳐왔고 [추측] 의미를 획득하였으며, 공통적으로 비한정사라는 형태적 기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당 어휘들의 의미 변화 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 개념적 논의를 먼저 수행하고, 이후 ‘설마’, ‘아무래도’, ‘아마도’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개념적 논의

2.1. 양화와 대안집합

본고의 핵심은 한국어의 추측부사 ‘설마, 아무래도, 아마도’가 비한정사라는 공통의 형태적 기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의미 변화 과정에서 [추측] 외에 공통적인 다른 의미([양보], [부정극성] 등)를 거쳐 왔으며 이러한 의미들은 사실 일정한 관련성 하에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안 집합 및 양화의 개념에 대해 먼저 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측]과 비한정사,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의미들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대안의미론의 발상은 질문과 답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임동훈 2012:253 주 40). 의문문은 사실 질문에 대한 잠재적인 답변 하나하나를 포괄하는 집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Hamblin 1973), 이때 의문문에 쓰인 의문사는 개별 답변에서 달라지는 변수들을 포괄한다.

(1) ㄱ. 밖에 무엇이 왔니?

ㄴ. 밖에 ㅅ가 왔어.

ㄷ. 밖에 {신문, 세탁물, 택배, 우유, ... }이(가) 왔어.

1) 이 발표문은 강서현(2023)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이다.

(1ㄱ)의 질문은 의문사 ‘무엇’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 ‘물건의 종류’에 해당하는 변항 x 를 포함하는 (1ㄴ)을 갖게 된다. 이때 변항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타난다. (1ㄴ)은 변항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를 나열한 것인데, ‘신문, 세탁물, 택배, 우유, ...’처럼 변항 x 에 대입해볼 수 있는 원소들은 대안집합(alternative set)을 형성한다(Hamblin 1973, Karttunen 1977 참고).

비한정사와 의문사는 굉장히 밀접한 의미를 공유한다. 의문사는 잠재적인 답변의 집합을 대안집합으로 가지나, 대안집합의 원소 중 어떤 것이 의문사 자리에 들어가 주어진 명제를 만족시킬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비한정사 역시 의문사와 같이 잠재적인 지시대상으로 구성된 대안집합을 갖지만 특정한 대상이 문면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불확실성을 갖는다. 둘이 구분되는 지점은 단지, 의문사는 불확실성의 원인인 ‘정보의 공백’을 나타내는 동시에 ‘정보에 대해 요청’하는 반면 비한정사는 ‘정보의 공백’을 나타내는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것이다(Bhat 2004:228). 따라서 (1ㄴ)은 사실 변항 x 를 비한정사로 대치하여 정보의 공백을 나타내는 ‘밖에 무언가 왔어’ 정도로도 표현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의문사와 비한정사는 모두 잠재적인 대안집합을 가지며, 대안집합의 개념은 비한정사뿐 아니라 [추측] 및 그 외 관련 의미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논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존재양화’와 ‘전칭양화’ 개념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양화는 기본적으로 지시대상의 ‘양’과 관련된 개념이다. 양화는 지시대상의 양이 담화 영역의 전체에 해당하는지,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크게 전칭 양화(universal quantification)와 존재 양화(existential quantification)로 나뉜다. 전칭 양화는 담화 영역(domain of discourse)의 모든 개체가 주어진 명제를 만족시킨다는 것이고, 존재 양화는 담화 영역에 명제를 만족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개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2) ㄱ. 모든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다.

ㄴ. 어떤 일은 쉽게 끝났고, 어떤 일은 늦게까지 끝나지 않았다.

(2ㄱ)은 전칭 양화사, (2ㄴ)은 존재 양화사의 예이다. (2)에서 밑줄 친 부분은 앞서 (1ㄴ)에서 ‘ x ’로 표시하였던 변항의 위치와 대응되는 것으로, 해당 위치에 잠재적으로 올 수 있는 요소들은 대안집합을 이룬다. 예를 들어 (2ㄱ)의 변항은 {학생1, 학생2, 학생3, ...}의 대안집합을 갖는데, 대안집합의 원소 전부가 해당 명제를 만족시키면 모든 원소가 변항 자리에 나열될 수도 있으나 보통 ‘모든’과 같은 전칭양화사가 쓰이게 된다. (6ㄴ)에서는 변항 자리에 비한정사 ‘어떤’이 놓였다. ‘어떤’은 존재 양화사로 작용하여, 변항 자리에 와서 명제를 만족시키는 대안집합의 원소가 하나 이상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2.2. [추측]의 정의 및 대안집합과의 상관관계

[추측]은 인식양태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므로 인식양태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인식 양태가 나타내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사실성 판단 영역으로, 명제 내의 정보에 대해 화자가 어느 정도로 확신하는지를 나타낸다. 즉 현실과 가상의 상황을 비교하여 가상의 상황이 현실 세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Saeed

2003:137).

인식양태의 영역은 사실성에 따라 크게 [필연성(necessity)]과 [가능성(possibility)]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필연성]은 명제의 내용에 대해 모든 가능 세계에서 참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 [가능성]은 적어도 하나의 가능 세계에서는 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Lyons 1977:791 참고)²⁾. ‘0’부터 ‘1’까지 이르는 확신의 척도를 설정한다면 ‘1’은 인식론적으로 필연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0’은 인식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필연성]은 ‘1’에 해당하고, [가능성]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정도의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다(Lyons 1977:800 참고). 본고에서 논의하는 추측은 [필연성]과 구분되는 [가능성]의 영역에 해당한다.

[추측]은 양화 및 대안집합의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³⁾. 양화의 관점에서 [추측]을 바라보면 모든 가능세계는 양화의 담화 영역이 되어 대안 집합을 이룬다.

(3) 내가 아는 바가 구현되는 가능세계 x에서 명제 p는 참이다.

만일 내가 아는 바가 구현되는 가능세계⁴⁾의 집합을 $\{w_1, w_2, \dots, w_{100}\}$ 으로 가정했을 때, 모든 원소가 (3)의 명제를 만족시킨다면 명제 p는 [필연성]을 나타내고 대안집합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지만 전부 포함하지는 않는다면 명제 p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변항 x의 대안집합이 $\{w_1, w_2, \dots, w_{100}\}$ 라면 명제 p는 [필연성]을 갖고, $\{w_{56}\}$ 이나 $\{w_3, w_{21}, w_{73}\}$, $\{w_1, w_2, \dots, w_{99}\}$ 등이라면 명제 p는 [가능성]을 갖는다.

(4) ㄱ. 지금 우리집 고양이는 반드시 집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 지금 우리집 고양이가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이다.

ㄴ. 지금 우리집 고양이는 집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다.

⇔ 지금 우리집 고양이가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 참인 가능세계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명제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이 될 때 이 명제는 전칭 양화의 개념을 나타내고(4ㄱ), 명제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참이 되나 모든 가능 세계에서 참이 되지는 않을 때 이 명제는 존재 양화의 개념을 나타낸다(4ㄴ). 앞서 [추측]은 [가능성]과 [필연성] 중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추측]은 양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존재 양화와 관련된다.

비단 인식 양태뿐만 아니라 당위 양태, 동적 양태도 양화적 해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식 양태는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지식에 기반한 가능 세계를 상정하고, 당위 양태는 의무지어지는 바에 따른 가능 세계를 상정하며 동적 양태는 능력에 기반한 가능 세계를 상정한다는 차이가 있다(Kratzer 1981 참고). [추측] 의미와의 긴밀한 관련으로 인해 추측부사가

2) 영어의 인식양태 체계에서 ‘필연성’은 주로 양태동사 ‘must’로, 가능성은 ‘may’에 대응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must’는 ‘가능한 오직 하나의 결론’을 나타내며, ‘may’는 ‘가능한 결론’을 나타낸다는 Palmer(2001:25)의 설명은 둘이 속해있는 의미 영역의 차이를 잘 설명해준다.

3) Kratzer(1977, 1981)에서는 가능 세계 의미론을 도입하여 각종 양태의 개념을 [가능성]과 [필연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의의 기반을 제공한다.

4) Kratzer(1981), 전영철(2022) 참고.

당위 양태나 동적 양태 의미가 드러나는 맥락에 쓰이기도 한다.

2.3. [양보]와 대안집합

‘설마, 아무래도, 아마도’의 의미 변화 과정에서 [양보]는 여러 어휘에서 [추측] 의미로 변화하는 주요 경로가 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보]는 선행절의 사태가 후행절 명제의 성립에 비관여적임을 나타내는데(박재연 2011:179-180), 이때 [양보]의 선행절은 [가정]과는 달리 다수의 명제를 함의하는 일이 많다(Haspelmath&König 1998:565 참고).

(5) $\neg$. If p then q

$\neg$. If {a or b or c or d ...} then q (Haspelmath&König 1998:565)

(5 $\neg$)에서 [가정]의 선행절 명제인 ‘p’는 잠재적으로 ‘not p’를 대안으로 갖지만, ‘not p’를 함의하지는 않는다. ‘p’ 위치에 ‘not p’가 들어가면 이는 틀린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양보]의 선행절 명제가 갖는 대안집합의 원소(a, b, c, ...)들은 그중 어떤 것이 초점을 받아 문면에 실현되어도 선행절과 후행절은 서로 비관여적이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된다. 이때 선행절에 올 수 있는 다수의 명제의 성립 여부가, 후행절의 사태 실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을 통해 양보적 의미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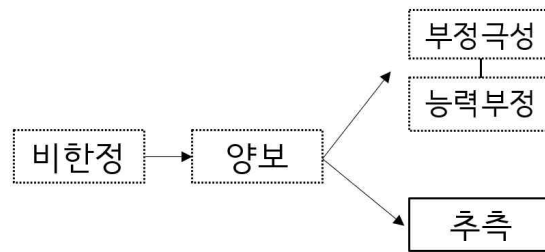
[양보]의 선행절은 의미적으로 다수의 명제를 함의하지만 당연히 실제 언어에서는 이를 늘 총망라하여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대안집합 내 복수의 명제를 모두 함의하기 위해 조건적 양보가 표현되는 방식은 범언어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Haspelmath & König 1998: 563), 그 중 본고의 논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전칭 양화사 양보(Universal concessive conditionals)’를 살펴보겠다.

(6) No matter how much financial support we get, we will go ahead with our project.

(6)과 같은 ‘전칭 양화사 양보’ 구문은 자유선택사(예. wh-ever)나 전칭양화사(예. all the same) 같은 요소를 통해 선행절 명제의 변항 자리가 갖는 대안집합의 원소들을 모두 아우른다. (6)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적든, 보통이든, 많은 간에 프로젝트의 이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때 [양보] 구문은 비한정사나 의문사를 포함할 수 있다.

3. 추측부사의 의미 변화 과정

3.1. 설마



<그림 2> ‘설마’의 의미 변화 경로

추측부사 ‘설마’는 기원적으로 비한정사 ‘현’과 의존명사 ‘마’가 결합한 ‘현마’가 ‘혈마’, ‘설마’ 등의 형태 변화를 거쳐오면서 현대한국어의 ‘설마’가 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이 절에서는 비한정사였던 ‘현마’가 어떠한 변화 과정을 통해 [추측] 의미를 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마’는 ‘현’의 비한정사 용법을 이어받아 다음과 같이 ①[비한정/의문]의 의미로 15세기까지 쓰였다.

- (7) ㄱ. 寶瓶과 火珠와 沸星이 비칠 날에 하늬 風流 | 엇더하시니 종과 물와를 현맨들 알리오 <1447 월인천강지곡 上:19a>
 ㄴ. 여원 못 가온디 몸 커 그우닐 龍을 현맛 벌에 비늘을 썩라노 <1459 월인석보 2:47b>
 ㄷ. 우리 물들흔 勝智를 일허 업게 ㅎ야 迷惑ㅎ야 씨디건 디 현맛 劫을 디난디 모르 리로소니 (若吾輩者失滅勝智 迷淪已來不知過若干劫耶) <1459 월인석보 14:09a-9b>
 ㄹ. 果記는 經들해 ㅎ 사르물 바르 ㄹ치샤 後에 現 劫 디나 아모 世界에 부터 ㄷ 외야 일후른 아되오 나랏 일후른 아되오 正法 像法 末法이 현매라 ㅎ샤미라 <1464 능엄경언해 1:17b>

또한 ‘현’과 ‘현마’는 양보절에서 ②[양보]를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하였다.

- (8) ㄱ. 石壁에 ㄹ를 올리샤 도즈글 다 자브시니 현 번 뻥운들 ㄴ미 오르리잇가 (絕壁躍馬 賊以悉獲 雖百騰奮 誰得能陟) <1447 용비어천가 6:46b>
 ㄴ. 전 ㄹ리 현 버늘 ㄷ들 三十 年 天子 | 어시니 모던 ㅅ를 일우리잇가 (爰有蹇馬 雖則屢蹶 三十年皇 悍謀何濟) <1447 용비어천가 5:11a>
 ㄷ. 王事를 爲커시니 行陣을 조츠샤 不解甲이 현 나리신들 알리 (祇爲王事棘 行陣日 隨逐 幾日不解甲) <1447 용비어천가 10:45a>
 (9) ㄱ. 이 ㄹ쑈 體는 微妙ㅎ야 相 업서 이슈미 ㄷ외디 아니ㅎ며 현마 ㅅ도 업수미 ㄷ외 디 아니ㅎ느니라 (此之心體 如肇師云 微妙無相不可爲有 用之彌勤 不可爲無) <1459 월인석보 9:21b>
 ㄴ. 金剛은 ㅅ에서 난 ㄹ 구든 거시니 현마 스라도 슬이디 아니ㅎ고 玉 다듬는 거시

라 <1459 월인석보 2:28b-29a>

- ㄷ 상네 물 타아 大闕 門에 드나들며 殿下와 혼가지로 交床에 앉느니 현마 崔沆 林衍이라도 이 곧디 몬더니이다 (常騎馬出入宮門 與殿下並據胡床 雖崔沆林衍 亦未若此 <1490 삼강행실도 충 32a>

양보문에서 ‘현’과 ‘현마’는 [자유선택]의 의미로 쓰인다. (8)에서 선행절의 ‘현 번 뻘운들’은 ‘얼마나 많이/아무리 (석벽에) 올려봐도’ 정도로 이해해볼 수 있다. 양보문의 후행절은 양보문의 선행절에서 서술되는 사태를 따랐다면 보통 실현되지 않아야 하는 사태를 제시하여 비관여성을 나타낸다. 이때 선행절에서 갖는 전체 선택지의 각 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들이 모두 후행절의 사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나타내면 그 표현 효과는 더욱 극대화되며, ‘현’과 ‘현마’가 그러한 [자유선택]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현’과 ‘현마’가 양보문에 쓰여 선행절을 이끌 때 후행절에는 부정의 맥락이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선행절에서 제시된 사태에 의해 기대되는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후행절에서 제시하는 [양보]의 의미적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현마’가 이끄는 양보문의 양보절은 명제의 변항값에 무엇이 대입되는 성립된다. 즉, 선행절의 명제가 갖는 대안집합의 원소를 전칭적으로 함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후행절에 부정의 맥락이 나타나면, 모든 경우의 수를 부정하는 ③[부정극성]의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⁵⁾). [부정극성]의 ‘현마’는 후기 중세한국어부터 나타나 근대한국어 시기에도 일부 쓰인다. 우선 예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10) ㄱ. 제 보아 아론 전츠로 느외야 현마 모딘 罪業을 짓디 아니 흐리니 (由自證見業果報故乃至命難亦不造作諸惡之業) <1447 석보상절 9:31a>
 ㄴ. 우리 힘미 사오나바 현마 그르디 못 흐리니 (我力微弱終不能解 假使毘嵐猛風不能吹却) <1459 월인석보 4:23a>
 ㄷ. 오늘 죽디비 현마 도즈기 겨집 아니 드외요 리라 (今日破亡 自可即死 終不爲賊婦) <1490 삼강행실도 열 13a>
 ㄹ. 나는 나히 만코 웃던은 나히 점스오시니 내 현마 뒤히 못 설 거시니 <17세기 서궁일기 10a>
 ㅁ. 이 계교는 현마 힘터 못 흐 거시니 님의 우음을 엇디 흐리오 <연대미상 후슈호전 12:33a>

5) Haspelmath(1998:34,각주8)에서는 부정의 맥락 외에도 쓰이는 어휘에도 ‘부정극성(negative polarit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리 적절치 않으며 대신 해당 현상 및 어휘에 대해 ‘척도 역전(어)(scale reversal (item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정합적이라고 하였으나, 이미 수많은 논의에서 ‘부정 극성’이라는 용어가 단단히 자리 잡았으므로 해당 논의에서도 ‘부정 극성’이라는 용어를 택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도 척도 역전 맥락에서 부정의 의미를 더하는 어휘를 ‘부정 극어’로 칭한다.

6) 이정민(1997, 2005)에서는 부정극어가 기저적으로 양보 개념에서 촉발되는 척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부정의 맥락에서, 어떠한 명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척도상 개연성이 가장 큰 부분으로부터 개연성이 가장 적은 부분으로 양보해 내려가 보아도 이들이 모두 부정된다면 이는 [부정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양보문의 선행절에서는 척도 함축에 의해 선행절 명제가 갖는 대안집합의 원소를 전칭적으로 함의하고, 후행절과의 비관여성을 표시함으로써 [양보]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때 후행절에서 부정의 맥락이 나타났을 때, ‘현마’가 이끄는 양보절이 전칭적 함의를 지니므로 이는 전칭 부정, 즉 [부정극성]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10)에서 ‘현마’는 ‘아니/아니하-, 못/못하-’와 같은 부정의 표현과 함께 쓰여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0ㄱ)은 ‘그들은 절대 나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정도의 의미, (10ㄴ)은 ‘우리의 힘이 미약해 (주검을) 절대 풀지 못할 것이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두 예문은 부정극성의 ‘현마’를 통해 미래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양태적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10ㄷ, ㄹ, ㅁ)은 모두 강한 의지를 드러내어 당위양태적 필연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떻게 양보절에 쓰이는 문장부사 ‘현마’가 ‘현마 … -아니하리라’와 같은 단문 구성에서 쓰이게 되었는지이다. ‘현마 … -어도 아니하리라’와 같이 어떠한 통사적 구성이 반복하여 쓰이다 보면, 해당 구성 내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두 단어의 연어적 사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하나의 의미에 전이되어 의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의 ‘personne’는 원래 라틴어 ‘persone(person)’에서 온 것인데, 부정소 ‘ne’와 공기하여 ‘ne … personne’로 쓰이면서 ‘personne’ 자체로도 ‘nobody’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Ullmann 1957:198), ‘머리털’이나 ‘담배꽁초’가 준 ‘머리’나 ‘꽁초’ 역시 줄기 전의 형태가 갖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신중진 2021:44). 이러한 예에서는 ‘A+B’의 구성이 빈번하게 쓰인 후 ‘A’만으로도 ‘A+B’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의 전이 현상이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양보문 ‘현마(A) … -어도(B) … 아니하리라’도 이러한 기제를 통해 ‘현마(A) … 아니하리라’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 (11) ① 현마 p -어도, q 아니하리라
 → ② 현마 하야도, q 아니하리라
 → ③ 현마 q 아니하리라

양보문에서 화용적인 초점⁸⁾은 선행절이 아닌 후행절에 있다. 양보문에서 양보절은 결과절에 나타난 명제의 실현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후행절의 명제는 늘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양보문의 선행절에 어떠한 명제가 대입되더라도 후행절의 명제는 늘 성립하기 때문에, 양보절에서 점차 명제적 내용이 빠지고 ‘현마 하야도’ 정도로 쓰이다가 형식에서의 감쇄를 겪어 [양보] 의미가 ‘현마’에 모두 전이되고 ‘현마 q 아니하리라’ 정도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마’는 ‘절대 … 아니다’라는 [부정극성]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한편 [부정극성]과 관련하여, 16세기 이후 특정한 수사의문 표현에만 한정하여 [부정극성]의 일종으로 특별히 능력의 부정을 강조하는 ③[능력부정]을 나타내는 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7) 후행절의 어미를 ‘-리라’로 표현한 것은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8) 임동훈(2015)는 초점을 가로(정보)초점과 세로(양화)초점으로 분류한다. 가로초점은 문장 차원에서 화용적으로 초점과 배경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고, 세로초점은 대안집합의 원소들 사이에 초점을 받아 나타난 요소와 초점을 받지 않은 요소가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통합관계와 계열관계의 차이로도 이해해볼 수 있다. 여기서 ‘화용적인 초점’이란 문장 차원에서 배경과 구분되는 가로초점을 말한다.

- (12) ㄱ. 옷 묻 어더 니블 주른 나도 아뢰 현마 엇딜고 <1550~1592 순천김씨언간 20>
 ㄴ. 다몬 내 일만 조심홀 이리니 너나몬 이리야 현마 엇디홀고 <17세기 전기 진주 하씨묘 출토언간 11>
 ㄷ. 이 역시 노부와 달문의 운익이 괴구호미런가 시부니 현마 엇지 호리오 <연대미상 엄씨효문청행록 16:13a>
 ㄹ. 저의 명운이며 팔지라 현마 어이 호리오 <연대미상 엄씨효문청행록 27:8b>
 ㅁ. 원슈의 고기를 먹지 못호미 한이나 현마 엇지 호리오 텃야며 명애라 오직 창턴 이 부도호미를 탄홀 썬이라 <연대미상 완월회맹언 9:2a>

(12ㄷ-ㅁ)에서 ‘현마’가 갖는 의미가 비교적 잘 드러나는데, 모두 개인의 운이나 팔자를 탓하며 별다른 방법이 없음을 말하는 맥락에서 ‘현마 엇지 호리오’ 구문이 쓰이고 있다. 이렇듯 이 구문은 고전소설류에서 운명을 탓하는 맥락에서 자주 나타난다. 문맥상 ‘달리 어찌겠는가, 그래서 어찌겠는가’ 정도로 풀이되는데, 수사적 표현이므로 결국 ‘어찌할 방법이 없다, 어찌할 수가 없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⁹⁾. ‘아무리 해도 ...’와 같이 척도의 극단을 나타내는 [양보] 용법의 ‘현마’의 의미를 고려해보면, 이는 ‘아무리 해봤자 달리 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구문은 의미적으로 주어의 ‘능력’¹⁰⁾과 관계되는 동적양태에서의 가능성과 관련된다. ‘달리 어찌할 수가 없다’는 나를 둘러싼 외부적 상황 혹은 조건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해결할 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가능세계 의미론의 관점에서 각종 양태의 개념이 [가능성]과 [필연성]의 개념으로 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인식양태뿐 아니라 동적양태도 양화 개념으로 이해되는 가능세계의 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때 비한정사가 갖는 양화적 속성이 ‘현마 ... -리잇가’ 구문에서 동적 양태와 관련한 가능세계의 영역으로 전이된 것으로 생각된다

복문 구성에서 쓰이던 [양보]의 ‘현마’가 어떻게 ‘현마 ... 리잇가’ 구문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앞서 [부정극성]에서 논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앞서 (8)에서 ‘현’이 [양보]의 의미로 쓰였을 때 수사의문문에서 나타난 예를 살펴본 바 있는데, 이처럼 ‘현’은 주로 ‘... -ㄴ들 ... -리잇가’ 구문에서 쓰이는 경향을 보인다. 자료에서 많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현마’는 ‘현’의 [양보] 용법을 이어받아, ‘현마’가 [양보] 의미로 처음 나타났을 때 ‘현마 ... -ㄴ들 ... -리잇가’ 구문이 먼저 높은 빈도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 앞서 살펴본 대로 양보절의 형식이 축소되어 ‘현마 ... -리잇가’가 구문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능력부정]의 ‘현마 엇지하리’는 거의 19세기까지 쓰이다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에는 ‘현마’의 의미 중 [추측]만 남게 되므로 20세기의 ‘현마 엇지하리’ 구문은 ‘설마 어떤 일이야 일어나겠는가’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13).

9) 이상훈(2012)에서는 이와 같은 예의 ‘현마’를 ‘차마’ 또는 ‘설마’로 풀이하며 [추측]의 ‘현마’와 동계의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때의 ‘현마’는 ‘달리’ 정도로 풀이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추측]의 ‘현마’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10) Palmer(2001:10)에 따르면 ‘능력(ability)’은 주체의 신체·정신적 힘과, 이러한 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상황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3) 첩이 화순하면 무죄한 스름을 설마 엇지 흥을잇가 <1912 완월루 53>

[능력부정]과 비슷한 시기에 [양보]에서 변화한 ④[추측]의 용법도 주로 수사의문문에서 쓰여 [능력부정]의 ‘현마’와 유사한 구문적 특성을 보이지만, [능력부정]은 동적양태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반면에 [추측]은 인식양태의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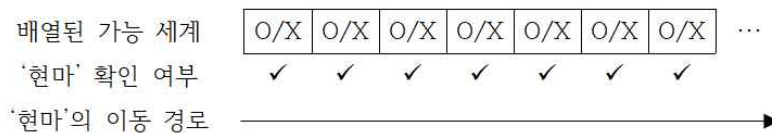
(14) ㄱ. 너희 등의 현마 다 아버지 처즌 업슨 사름일다 네 사던 디 도라와 네대로 도로 살면 우연하랴 <1593 선조국문교서 1a>

ㄴ. 대군이 당시 열 술도 못하시니 현마 이제 죽이오리잇가 <17세기 서궁일기 28a-28b>

ㄷ. 주려 죽으려 하고 首陽山에 들엇거니 현마 고스리를 먹으려 지야시랴 <1713년 樂學拾零 37a>

(14ㄱ)은 ‘너네 중 설마 아버지 처자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는 ‘설마 아버지 처자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수사의문문 표현을 통해 강한 [추측] 내지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현마’는 (14ㄴ)과 같이 ‘-리잇가’와 호응하는 경우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추측]의 ‘현마’가 ‘... -ㄴ들 ... -리잇가’ 구문에서 쓰이는 [양보]의 ‘현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마’는 전반적으로 수사의문의 표현에서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나타낸다.

[추측]의 ‘현마’도 앞서 살펴보았던 ‘현마 엇디리’ 구문의 ‘현마’와 동일한 형성 과정을 거쳐 ‘현마 ... -ㄴ들 ... -리(잇고)’구문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추측]의 ‘현마’는 인식양태와 관련한 가능세계에서의 양보를 나타내고, ‘현마 엇디리잇가’의 ‘현마’는 동적양태의 관련한 가능세계에서의 양보를 나타낸다. [양보]의 ‘현마’는 전체 선택지의 각 항을 하나 하나 짚어가며 이들이 모두 후행절의 사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후행절에서 강조하는 사태의 실현이 저지될 경우의 수는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 [추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추측]의 ‘현마’가 양보해 내려오는 척도는 인식적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그림 3> 양태 의미의 ‘현마’의 인지적 도식

인지적으로 설명하자면, 인식양태와 관련되는 [추측]의 표현은, 내가 아는 바에 의해 구현된 모든 가능세계가 선상으로 배열되어 있고 ‘현마’가 그 위에서 움직이며 ‘현마 p -리잇가(설마 p는 아닐 것이다)’의 명제 p가 실현되는 가능세계가 혹시라도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동해나가는 도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추측]의 ‘현마’를 사용하는 화자는 ‘(내가 사태가 실현되는지 가능성을 짚 탐지해 보았을 땐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현마 p -리잇가’ 정도의 함의를 가지고 ‘현마’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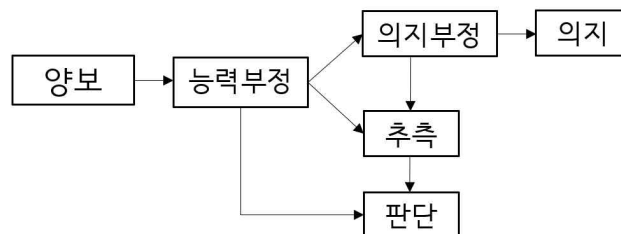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명을 고려했을 때 ‘현’의 조건적 양보 용법은 대안 집합의 원소에 대한 전칭적 함의를 전제하고 ‘현마’는 이러한 용법을 이어받았으므로 ‘현마’는 확신의 정도의 차원에서 ‘ $0 < p < 1$ ’인 [가능성]보다 ‘0’ 혹은 ‘1’인 [필연성]을 나타내는 어휘가 되어야 할 듯한데 왜 [추측]의 부사가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15) ㄱ. 설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ㄴ. 설마 내가 잘못된 걸까?

‘설마’는 현대한국어에서 (15ㄱ)처럼 강한 확신을 드러내는 데 쓰이기도 하고, (15ㄴ)처럼 확신이 부족한 경우에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설마’는 (15ㄴ)처럼 어느 정도 의심의 의미가 더해진 [추측]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생각된다. ‘설마’가 전칭적 함의를 잃고 완전한 [확신]에서 약간 물러난 정도의 강한 [추측]을 드러내는 것은 실제 언어 표현에서 [가능성]과 [필연성]의 경계가 모호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태에 대해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 더 쉽다는 화용적인 요인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Ramat&Ricca(1998:236)에서는 인식양태 부사가 오랜 시간 동안 쓰이게 되면, 이전보다 낮은 실현 가능성을 가리키게 되는 의미적 약화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추측]의 ‘현마’와 유사하게 [양보]로부터 변화하였을 것이라 추정되는 추측부사 ‘아마도, 아무래도’ 역시 [가능성]을 가리키며, 범언어적으로도 어원을 따져보았을 때는 전칭적 함의를 갖는 [필연성]의 표현이 [가능성]의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¹¹⁾.

3.2. 아무래도



<그림 4> ‘아무래도’의 의미 변화 경로

‘아무래도’는 [양보] 의미를 나타내는 구 구성인 ‘아무리 하여도’가 줄어든 형태가 굳어진 어휘로, 16세기에 처음 나타나 현대한국어에서 활발하게 쓰인다. 기본적으로 [양보] 의미를 함의하는 ‘아무리’가 부정 표현과 공기하여 어떠한 행위를 수행할 능력을 부정하는 ①[능력부정]의 표현이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현마’가 [양보]에서 [부정극성]으로 변화했듯이, ‘아무래도’ 역시 ‘아무리 해도 ... 못하다’ 정도의 구문에서 [부정극성]의 용법을 얻게 된 것이다. ‘현마’의 양보 구문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역시 ‘아무리’와 ‘-어도’가 유발한 척도 함축으로 전칭적 [양보] 의미를 표현하므로 ‘아무리 하여도 ... 못하다’와 같이 부

11) ‘설마’와 유사한 예로 터키어의 ‘herhalde’는 문자 그대로 ‘어쨌든, 어떻든’ 정도로 해석되어 전칭적 [양보] 의미를 함의하는데, 현재 터키어에서 [가능성]의 [추측]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Ramat&Ricca 1998:237).

정의 맥락에서 [부정극성]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 (16) ㄱ. 외라비 므를 아므려도 엇디 몰ᄃᆞ니 <1550~1592 순천김씨언간 64>
 ㄴ. 네 박른 아므려도 보내디 몰ᄃᆞ니 무명이나 사 보내고저 ᄃ노라 <1550~1592 순천김씨언간 14>
 ㄷ. 형혀 홀가 너기니 날도 침고 아므려도 몰ᄃᆞ니 보내노라 <1550~1592 순천김씨언간 39>
- (17) ㄱ. 노롬이라도 그 놀수가 사오나오면 아모리 ᄃ여도 이기지 몰ᄃᆞ오니 <1790 隣語大方 6:14a>
 ㄴ. 아모리 ᄃ여도 言行一同ᄃ기는 쉽지 아니ᄃ오니 <1790 隣語大方 3:26a>

‘아무래도’가 처음 등장하는 16세기 <순천김씨언간>에서 ‘아무래도’는 전부 위 (16ㄱ-ㄷ)과 같이 ‘아무래도 … 못하다’ 구문으로 나타났다. (16ㄱ-ㄷ)에서 편지의 발신자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도하거나 마음 먹었지만 개인의 능력이나 외부의 상황상 결국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때 ‘아무래도’는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정도의 뜻으로, 모든 노력 및 고민을 한 후에도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양보 용법에서 비롯하여 [능력부정]에 대한 부정 의미를 강조하는 부정극어로 쓰이는 것이다.

17세기부터 ‘아무리 하여도’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하여도’ 역시 [능력부정]의 ‘아무래도’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17ㄱ, ㄴ)에서 ‘아무리 하여도’는 ‘아무리 시도해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등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능력부정]의 의미에서 ‘아무래도’와 ‘아무리 하여도’가 엄밀한 구분 없이 쓰이는 양상은 20세기에도 지속되나, 현대한국어에서는 ‘아무래도’와 ‘아무리 하여도’를 서로 바꾸어 쓸 수 없는 맥락이 많다.

한편 표면상으로는 [능력부정]으로 쓰이나 ②[의지]의 부정을 내포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아무리 하여도’에서 1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 (18) ㄱ. 두 참이도록 거르기 격기ᄃ신티 ᄃ믈며 이러ᄃᆞᄃ 배 아므려도 밧디 못ᄃᆞ 일이오니 <1676 捷解新語 7:2a>
 ㄴ. 그 욱을 본 후는 아모려도 못 같지라 <1764 이후 日東壯遊歌 1:35b>
- (19) ㄱ. 받고저 ᄃ읍건마는 스스 써시 아니오니 아모리 ᄃ여도 쫓디 몰ᄃᆞ 일일로송이다 <1676 捷解新語 8:20a-21a>
 ㄴ. 외입ᄃᆞ 산ᄃᆞᄃ가 식다ᄃᆞ ᄃᄃᄃ고 술 먹으며 권쥬가 한나 못 드르라 아모리 ᄃ여도 그저 먹든 못ᄃᆞ리라 <1840 춘향전 12a>

(18ㄱ)은 일본에 간 조선의 통신사가 극진한 대접을 받아 일본에서 주는 선물까지는 차마 받지 못하고 사양하겠다는 맥락에서 ‘아무래도’가 쓰였다. 여기서 이때 ‘받디 못ᄃᆞ 일’은 선물을 받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19ㄱ)도 이와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쓰인 것인데 이때는 ‘아무래도’ 대신 ‘아무리 하여도’가 쓰였다. 앞서 [능력부정]에서 ‘아무리 하여도’가 모두 쓰일 수 있었던 것처럼,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아무래도’(18ㄱ, ㄴ)와 ‘아무리 하여도’(19ㄱ, ㄴ)가 근대한국어 시기에 큰 의미 차이 없이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었다. (18ㄱ, ㄴ)와 (19ㄱ, ㄴ)의 [의지] 용법은 ‘못’ 부정,

‘-르 수 없’이 쓰여 표면적으로는 [능력부정]의 구문과 흡사해 보이지만, 사실 이는 강한 [의지]의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마 ‘아무래도’가 [능력부정]을 나타내는 구문에 쓰인 데서 비롯되어 [의지]의 부정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된 것이 아닐까 추정해볼 수 있다.

(20) ㄱ. 쇼장이 죽스온들 엇지 청병 디군 중의 운장을 바리고 홀노 신야의 도라가리오
아모리 하여도 장군과 스침을 함기 하려 하느이다 <연대 미상 삼국지 경판
3:12b>

ㄴ. 쇼지 아모리 하여도 모친 싱전에 부친과 상면하시게 하리이다 <1917 광해통
전 13>

ㄷ. 닉가 몸편하기를 취하야 집에 감안이 안저슬 길이 업스니 아모려도 부산까지
가야 하겠습니다 <1913 우중행인 203>

(20)의 예와 같이 [의지]의 ‘아무래도/아무리 하여도’가 부정의 맥락 외에 나타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근대한국어 후기의 자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세기에 확대된다. 이는 [의지]의 용법이 자주 등장하면서, 점차 부정 맥락에서의 쓰임에서 탈피하여 긍정 맥락에까지 사용되는 사용 맥락의 확장을 보여준다. ‘아무리 하여도’는 20세기 이후에도 부정소와 공기하여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간혹 보이지만, 긍정의 맥락에서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는 (20ㄴ)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부정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20세기 초반 이후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21) ㄱ. 현재의 망각을 비추는 과거의 등불엔 아무래도 무턱대고 박수만 칠 수는 없다.

ㄴ. 교문을 나와서 나는 아무래도 그냥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ㄷ. 아무래도 화해해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ㄹ. 나 아무래도 결혼할까 봐.

현대한국어에서도 ‘아무래도’는 부정(21ㄱ,ㄴ)과 긍정맥락(21ㄷ,ㄹ) 모두에서 [의지]를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무래도’는 원래 [부정극성]의 의미를 나타내던 것으로, 강한 의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했으나 (21ㄷ,ㄹ)처럼 강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맥락에서도 쓰이게 된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추측]의 ‘현마’가 전칭적 함의를 갖지만 화용적인 요인에 따라 의미가 약화되어 [확신]에서 출발해 점차 [추측]의 의미로도 쓰이는 것과 유사하다.

한편 16-17세기부터 ‘아무래도’에서 [능력]이나 [의지]와 ③[추측] 의미가 함께 간취되는 예들이 확인된다.

(22) ㄱ. 그 그티 담증이 대발하야 아모려도 사디 못홀가 하더니 <1579~1640 이복길가
3>

ㄴ. 우리도 代官의 구실이면 아므려도 ㄹ음알기 어려울 양이오니 <1676 捷解新語
4:22a>

ㄷ. 선창의 먹여 노코 물구멍 헤여 보니 아모려도 못 툄디라 <1764 이후 日東壯
遊歌 2:36a>

- ㄷ. 내 스설홀 썬으로는 아프리 햏여도 가져 도라갈 일은 업스올 써시니 <1676 捷解新語 8:6a>
 ㄹ. 내 즈를 부르난 사름은 아프리 햏여도 나를 거오지 아니리라 햏고 <1774 三 譯總解 2:8a>

(22ㄱ)에서 ‘아무래도’는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살지 못할까 하였는데’ 정도로 해석되어, [능력부정]의 의미로 쓰였으나 [추측]의 의미도 함께 전달된다. (22ㄴ)은 ‘우리도 대관의 일이면 아무래도 마음대로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로 해석되는데, 이때 역시 [능력부정]의 의미와 [추측]의 의미가 함께 전달된다. (22ㄷ)도 앞선 예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와 [추측]의 문법 요소가 함께 쓰여 [능력부정]과 [추측]의 의미를 함께 전달하는 예이다. 본인의 [의지]나 제3자의 [의향]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ㄷ 것이-’, ‘-리-’ 등과 같은 문법 요소와 공기하여 [추측]의 의미를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22ㄷ, ㄹ). 이처럼 17세기-18세기에 [추측] 의미가 간취되는 예들은 모두 [능력부정]이나 [의지부정]과 함께 나타나 [부정]의 맥락에서 쓰였다. 이때 나타나는 [추측] 의미는 [확신]에 가까운 부정적 [추측] 의미이다.

- (23) ㄱ. 작금년이 겹세가 되고 올흔 참햏이라 햏니 아모려도 근노를 만히 햏듯 일콧스오며 <1800~1849 순원왕후언간(순원왕후→김조순?)>
 ㄴ. 아모려도 동을 스 가지고스 견딿을 듯 <1847년 11월 1일 의성김씨언간(진성이씨→김진화)>
 ㄷ. 아모려도 네 중병인가 햏노라 <1864 남원고스 1:39b>
 ㄹ. 아무리 햏여도 병이 들겟소이다 <1912 화중화 11>

19세기부터는 [부정]의 맥락에서 쓰이지 않아도 [추측] 의미를 나타나는 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3)에서 ‘아무래도/아무리 햏여도’는 [능력]이나 [의지]와 같은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 맥락에서 ‘-ㄷ 듯’, ‘-ㄴ가 햏-’, ‘-겠-’ 등 [추측]의 문법 요소와 호응하여 [추측] 의미만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의지]의 ‘아무래도’가 [능력부정]에서 비롯한 부정적인 맥락에서의 사용제약을 탈피하여 그 밖의 구문에서도 사용되는 양상과 비슷한 것이다. 한편 (23)의 용례에서는 화자의 확신의 정도에 있어 필연성보다는 가능성의 [추측] 의미가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앞서 ‘현마’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확신]이 화용적 요인에 따라 [추측]의 요소로 변화하는 양상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20세기 초반 이후에도 [추측] 의미의 ‘아무래도’는 계속하여 쓰이나, ‘아무리 햏여도’는 [추측] 의미로 쓰이는 예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아무래도’가 긍정맥락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여지없이’ 정도의 함의를 가지며 ④[판단]을 나타내는 경우도 20세기부터 확인된다.

- (24) ㄱ. 크로포트킨은 아무래도 한 과학가요 혁명가이다 <1926년 9월 1일 동광>
 ㄱ'. 20세면 아무래도 수양기요 저축기로 불 수밖예 없읍니다 <1926년 12월 1일 동광>
 ㄴ. 다섯 살에 신문을 죽죽 보아, 아무래도 신동이라 하겠군 <1914년 5월 21일 매일신보>

- ㄷ. 그들을 예술가로서 평할 때는 떠스터예프스키 - 보담 톨스토이가 아무래도 진짜이다 <1938년 8월 1일 삼천리>
- ㄹ. 幼兒가 乳母를 사모함같이 人間에게는 아무래도 神이 요구된다 <1934년 9월 1일 삼천리>

(24ㄱ, ㄱ', ㄴ, ㄷ)의 ‘아무래도’는 ‘어떠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이와 같이 평가될 수 있다’ 정도의 맥락에서 [확신]을 표현한다.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24ㄱ)이 ‘-ㄴ 수밖에 없’이라는 [능력부정]의 표현을 사용한 (24ㄱ')과 거의 유사한 함의를 갖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판단]의 용법 역시 [능력부정]의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지없이) ... 로 볼 수밖에 없다’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여지없이) ... 이다’의 구문으로 옮겨 온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4ㄴ)처럼 어떠한 내용이 화자의 판단하에 다른 여지가 거의 없는 보편적인 사실로 여겨질 때도 ‘아무래도’가 쓰일 수 있다. (24)의 용법들은 대체로 현대한국어의 ‘아무래도’에도 남아 있는 듯하다.

3.3. 아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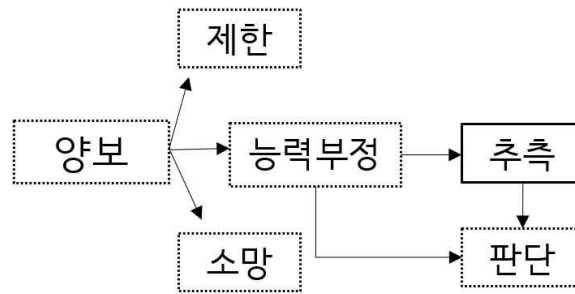
3.3.1. ‘아마/아마도’의 형태

‘아마/아마도’의 형태적 구성은 지금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허재영(2001:250), 이흥구(2021:68) 등 일부 연구에서 ‘아마도’가 비한정사 ‘아ㅁ’와 관계되었을 것이라 추정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아마도’가 ‘아ㅁ’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어의 추측부사 중 “혹” 계열(시혹, 혹시, 혹, 혹자), 설마, 아무래도, 어쩌면’이 모두 비한정사에서 기원하였으며, 아래에서 논의할 ‘아마도’의 의미가 ‘아무래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기 때문이다.

형태면에서 ‘아마도’와 ‘아ㅁ’는 성조면에서 각각 RLH와 RL로 나타나 서로 부합한다. 그러나 ‘아마도’는 ‘아ㅁ’와 다르게 제2음절의 중성에서 ‘ㅏ’가 나타나는데, ‘아ㅁ’에서 파생된 어휘들의 제2음절 중성은 대부분 ‘·’나 ‘ㅓ’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마도’의 ‘ㅏ’는 설명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아마커나’를 고려하면 ‘아마/아마도’의 형태가 ‘아ㅁ’에서의 변화를 통해 나타났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는 있다.

다음으로 ‘아마도’와 ‘아마’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도’와 ‘아마’의 시기별 출현 양상과 의미적 분포를 고려하면 ‘아마도’가 ‘아마’에 선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표준』, 『고려』에서는 ‘아마도’를 ‘아마’의 강조형 정도로 간주하고 있으나, 위 사전들의 기술과는 달리 ‘아마’가 ‘아마도’에서 ‘-도’가 떨어져 나간 채로 굳어진 어휘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현대한국어 이전에 나타나는 ‘아마’와 ‘아마도’는 시기에 따라 출현 양상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는 문헌상으로 15세기, ‘아마’는 16세기에 나타나고,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시점도 ‘아마도’는 17세기, ‘아마’는 19세기이다. 이와 함께 후술한 ‘아마도’의 통시적 의미를 함께 고려하면 ‘아마도’가 ‘아마’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이른 시기에 나타나 활발하게 쓰이다가 ‘아마’의 사용 확대 후 무표적인 지위를 ‘아마’에게 넘겨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3.3.2. ‘아마/아마도’의 의미



<그림 5> ‘아마도’의 의미 변화 경로

‘아마도’는 15세기에 최초출현례가 보이고, ‘아마’는 15세기에 확인되는 예가 없다. 아래 15세기 ‘아마도’의 예를 보인다.

- (25) 迦葉佛 위흐스바 이 짜해 精舍 이르스불 제도 이 개야미 이에서 사터니 처섬 이
에서 사던 저그로 오늬낫 ㄱ장 해면 아흐흔 劫이로소니 제 흔 가짓 모믈 몬 여
희여 죽사리도 오랄써 흐노라 아마도 福이 조스르빅니 아니 심거 몬홀 꺼시라
(汝迦葉佛時 汝亦爲佛 於此地中起立精舍 而此蟻子亦在中生 迦葉佛 乃至今日 九
十一劫 受一種身 不得解脫 生死長遠 唯福爲要 不可不種) <1447 석보상절
6:37b-38a>

(25)은 개미가 91겹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죽고 살기를 반복하며 계속 구멍 속의 개미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사리불이 측은해하며 복을 쌓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이다. 맥락상으로는 ‘아마도’를 [추측]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지만, ‘아마도’가 한문 원문의 ‘唯’와 대응한다는 점에서 해석을 재고할 여지가 있다. ‘唯’는 주로 언해문에서 ‘오직’, ‘다만’, ‘-뿐’ 등 [제한]의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해석되어왔기 때문이다.

이흥구(2021:68)에서는 이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25)의 한문 원문에 나타난 ‘唯’를 고려하고, König(1985:278)에서 ‘anyway’류 표현이 ‘제한/한정’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한 설명을 근거로 하여 ‘아마도’가 ‘오직, 단지’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이때 ‘아마도’가 ‘아무’와 ‘-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아마도’가 기본적으로 [자유선택]의 의미를 가지며, 선행 담화와의 관련성을 부정함으로서 한정 의미 획득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아마도’의 해석에 주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아마도’는 앞서 살펴보았던 ‘아무래도’와 유사한 어휘로, 기본적으로 비한정사 ‘아무’로부터 비롯된 ①[양보] 의미를 나타내는 데서 출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는 그 자세한 형태적 구성을 알 수는 없으나 ‘아무’와 보조사 ‘-도’가 결합한 것으로 보여 척도적 기능과 관련된 [양보]나 [부정극성]의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후술할 것이지만 16-17세기의 ‘아마도’는 부정의 맥락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최초 문증례 (25)에서는 긍정의 맥락에서 쓰이고 있으며 후기 중세-근대한국어에서 ‘아마도’가 갖는 [소망]의 의미도 긍정 맥락에서 더 자주 나타나므로 [부정극성]보다는 [양보]가 ‘아마도’의 근본적인 의미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양보]에서 ②[제한]의 의미는 어떠한 관련 하에 파생될 수 있을까? 앞서 [양

보]의 ‘현마’는 전칭적 함의를 가져 선행절에서 함의하는 전체 선택지의 각 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들이 모두 후행절의 사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때 비관여성을 나타내는 표현 효과가 강조되어 후행절에서 강조하는 사태의 실현이 저지될 경우의 수는 ‘0’에 수렴하게 된다. 즉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직 후행절의 사태가 실현되는 경우의 수밖에는 다른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26) 金剛은 쇠에서 난 못 구든 거시니 현마 스라도 술이디 아니하고 玉 다듬는 거시라 <1459 월인석보 2:28b-29a>

(26)은 ‘금강이 쇠에서 난 가장 굳은 것이므로 아무리 불에 살라도 사르지 아니하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즉 금강을 1초 동안 불에 사르든, 수천 시간 동안 불에 사르든간에 금강은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통해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오직 ‘금강이 불에 타지 않는’ 사태 하나뿐이다. 선행절에서 전제되는 다수의 명제와 후행절 명제의 관여성을 부정하였으므로 선행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후행절 사태는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제를 통해 [양보]는 [제한]의 의미를 함의할 수 있다¹²⁾.

- (27) 산치란 더럽다 하고 아마도 놀고기^만 먹고 존 광어과 존 여술 즐기더라 <17세기 서궁일기 9a>

(27)의 ‘아마도’ 역시 여러 다른 음식 중에서 날고기‘만’ 먹는 행위에 주목하여 [제한]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처럼 [제한]의 표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예는 이후에 거의 보이지 않으며 이에서 직접 파생된 다른 의미도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제한]은 [양보]를 기본 의미로 하여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후술할 ‘아마도’의 다른 의미와 관련성을 갖는다.

‘아마/아마도’가 ③[소망]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는 16세기부터 나타나 17-18세기 연간 자료에서 자주 확인된다. ‘아마도’는 편지 말미에 당부의 말과 함께 쓰여 [소망]의 뜻을 나타내었다. 특히 17세기에는 ‘아마도’의 전체 용례 중 60%가 넘는 예가 해당 용법으로 쓰였다.

- (28) ㄱ. 효근 것드리 누너 불이니 아마도 쉬이 가끄저 헛디 못으미 본디 븐디 아니코 설온 이룬 수업스니 <1550~1592 순천김씨연간 166>
 ㄴ. 아마도 아회들 드리고 조심하여 겨소 하 편치 아녀 이만 <17세기 전기 진주하씨연간 16>
 ㄷ. 아마도 글 힘서 하고 도히 잇거^라 <18세기 청성 성대중 가서>
 ㄹ. 아마도 자내 편치 아니호 디도 수이 편하고 아회들 다 편히 이시물 브^라 호너 <17세기 전기 진주하씨연간 38>
 ㅁ. 아마도 조심하여 평안^호심을 원^호옵 <17세기 유시정연간 12>

12) (25)에서 ‘아마도’와 대응되는 ‘唯’ 역시 ‘오직’과 ‘비록 … 하더라도’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중세한국어에서는 해당 구성이 [자유선택]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하귀녀 2005:211-2, 이상훈 2019:191, 이흥구 2021:64).

- (30) ㄱ. 師는 스스로니 아못 일도 잘흐는 사르물 師ㅣ라 흐느니 <1459 월인석보 2:46a>
 ㄴ. 아모 거괴도 제 무래 위두흔 거슬 王이라 흐느니라 <1459 월인석보 1:24a>
 ㄷ. 아모 덕도 도흐니라(所在可止耳) <1459 월인석보 20:74a>

(하귀녀 2005:212)

(30)에서는 ‘아모 NP도’의 구성이 [자유선택]의 의미로 쓰인 예가 확인된다. 이와 같은 예를 고려하면 ‘아마도’ 역시 ‘아무’와 ‘-도’의 결합이나 현대한국어와는 달리 [자유선택]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따라서 ‘아마도’ 역시 ‘아무쪼록’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소망]의 표현에서 의미를 강조하는 데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망]의 ‘아마도’는 20세기 초반에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17·18세기와는 달리 19세기에는 비교적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추측] 의미의 ‘아마도’의 증가와 ‘아무쪼록’의 사용 확대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근대한국어 후기로 갈수록 ‘아마도’는 [추측]을 나타내는 어휘로 굳어진다. 더불어 ‘아무쪼록’이 17세기에 등장하여 19세기부터 쓰임이 활발해졌는데, 19세기 후반 이후의 연간 자료에서 [소망] 의미의 ‘아마도’는 사라졌으나 ‘아무쪼록’이 쓰이기 시작한다. [소망] 의미에서의 ‘아마도’의 쇠퇴에 힘입어 비슷한 의미의 ‘아무쪼록’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아마도’에서도 ‘아무래도’와 유사하게 부정 표현과 공기하여 능력의 부정을 표현하는 예가 16세기부터 나타나 20세기 초반까지 확인된다.

- (31) ㄱ. 나도 아마도 음식을 일절 못 머그니 민망코 <17세기 유시정언간 7>
 ㄴ. 아마도 섭섭 굿브를 덩티 못흐여 흐노라 <1661~1662 인선왕후연간(인선왕후→숙회공주)>
 ㄷ. 환자는 아마도 그지업선 윈 덕 거슨 그만흐여 두엇다 <1699 안동김씨가 아들 송상기에게 보낸 편지>
 ㄹ. 아마도 내 오래 못 살 거신니 속저른 업다 <1550~1592 순천김씨연간 31>
 ㅁ. 절라도 갈 뿌디 만커늘 밋두기를 여게 보내엿다 이녀니야 아마도 못 브리로다 <1550~1592 순천김씨연간 149>
 ㅂ. 목화던 도디는 아마도 홀 이 업스니 서뤄 집의셔 네대로 브틸가 싹브다 <1699 은진송씨연간(송규렴→칠원윤씨)>

(31ㄱ-ㄷ)은 ‘아마도’가 ④[능력부정]의 맥락에서 쓰인 예, (31ㄹ-ㅂ)은 [능력부정]과 함께 ⑤[추측]까지 표현한 예이다. 우선 (31ㄱ-ㄷ)의 ‘아마도’는 앞서 살펴 보았던 [능력부정]의 ‘아무리 해도’로 대치할 수 있다. 앞서 ‘아무래도’는 16세기에 [능력부정]의 맥락에서 ‘아무래도 … 못하다’ 구문으로 쓰인다고 한 바 있는데, (31ㄱ-ㄷ) 역시 ‘아마도 … 못하다 (모르다)’ 구문이 쓰여 대상 사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정한다. (31ㄷ)은 ‘이자를 거

두어들이는 일은 아무래도 끝이 없어 외파로 떨어져 있는 곳의 것은 그만하여 두었다¹⁴⁾’라는 뜻인데, 이때의 ‘아마도’ 역시 ‘아무래도’ 정도로 해석되어 이자를 다 거두어들이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앞서 ‘아무래도’에서 [능력부정]의 표현이 [추측]의 문법 요소와 공기하면서 점차 [추측]의 표현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본 바 있는데, (31ㄷ-ㄴ)과 같은 예 역시 [능력부정]에서 [추측]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경우로 생각된다. (31ㄷ-ㄴ)은 ‘-ㄷ 것이-’, ‘-리-’, ‘-ㄷ’과 같이 [추측]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문법 요소와 공기하여 [능력부정]과 확신의 정도가 높은 [추측]의 의미를 함께 드러낸다. ‘아마/아마도’의 의미 변화 경로는 ‘아무래도’와 같이 [능력부정]을 먼저 거친 후 [추측]으로 향했을 듯하다.

- (32) ㄱ. 즈디는 저기 난브니 아마도 남디 허사홀 거시니 구월 스이 다시 기와 보내마
<1550~1592 순천김씨연간 35>
ㄴ. 乘船날은 덩치 아니호연스오나 아마 旬望間의 되오린 <1790 隣語大方 6:13b>
ㄷ. 이 그림은 彩色은 잘 메웁습거니와 失格호 디 이시니 아마 용호 그림이 아닌
가 시보외 <1790 隣語大方 9:1a>
ㄹ. 엇지 이런 큰 허물의 처호리오 아마 현재 지언이 과도호미 잇는냐 <연대미상 완
월회맹연 148:6b>

이미 16세기부터 [능력부정]에서 [추측]으로의 의미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아마도’가 부정의 맥락에서 벗어난 환경에서 [추측]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32ㄱ,ㄴ). 약 18세기부터는 [추측]의 ‘아마도/아마’의 사용 빈도가 이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다. 그런데 (32ㄷ,ㄹ) 같은 경우 낮은 정도의 확신을 보여준다. ‘아마/아마도’와 같이 전칭적 함의를 갖는 ‘현마’, ‘아무래도’와 같은 어휘에서 의미의 강도가 낮아지는 예를 앞서 살펴본 바 있는데, [추측]의 ‘아마/아마도’ 역시 전칭적 부정의 의미에서 [추측]으로 변화하고 오랫동안 쓰이면서 [추측]의 강도가 한편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후반부터 ‘아마/아마도’는 거의 전적으로 [추측]의 부사로 사용되며 점차 사용 빈도가 늘어난다. [추측]의 빈도가 증가하는 시점부터 이전까지 잘 나타나지 않았던 ‘아마’형이 늘어나기 시작하며, 이러한 양상은 지속되어 현대한국어에 와서는 ‘아마’가 ‘아마도’보다 무표적으로 여겨지게 된다.

한편 앞서 ‘아무래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쩔 도리 없이’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며 현재 시점에 대한 ⑥[판단]의 맥락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비슷한 예가 ‘아마도’에서도 근대한국어 시기부터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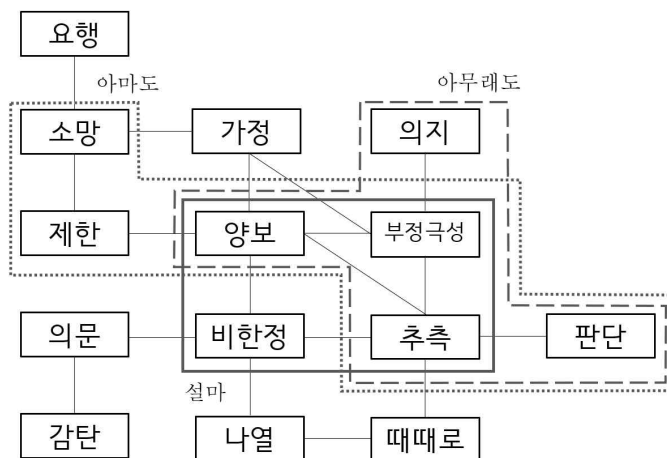
- (33) ㄱ. 가간의 어즈러울 바를 싹각디 아니믄 아마도 잘못호 일이로디 발서 허락호 거슬
노피 엇디 다른 의논을 호리오 <연대미상 완월회맹연 103:13b>
ㄴ. 아마도 시름 풀기는 술만호 거시 업세라 <1876년 歌曲源流 88>
ㄷ. 그 부인 장호시도다 일국직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르구나 <1921 효녀실기심청
17b>

14) <한국고문서자료관>의 해석을 참고하였다.

ㄷ. 소재 비록 전장 출입하는 장쉬는 아마도 여지라 엇지 장부를 뒤적히리오 <1900
강태공전 下:13a>

(33)의 ‘아마도’는 모두 현대한국어의 ‘아무래도’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아마도’는 (33
ㄱ)에서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없는 명확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고, (33ㄴ)에서도
‘시를 푸’는데 ‘술’ 외에 딱히 비교대상이 없음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 (33ㄷ)에서는 ‘일국재
상의 부인이라 아무래도 다르구나’ 정도의 표현에서 ‘아마도’가 나타났는데, 이때의 ‘아마도’
는 ‘역시 다른 여지 없이, 어쩔 도리 없이’의 함의를 갖는다. (33ㄹ)에서는 결론에 대한 직
접적인 원인의 표현에 ‘아마도’가 쓰였다. ‘아마도’에서 (33)의 용법은 근대한국어 시기에
자주 확인되지 않고, 20세기 이후에는 위에 제시한 예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4. 의미지도 및 유형론적 사례



<그림 6> ‘설마, 아무래도, 아마도’의 통시적 의미지도

각 어휘는 모두 [추측]과 [부정극성], [양보]의 영역을 공유한다. 세 어휘 모두 [부정극성]과 [양보] 의미를 거쳐왔다는 것은 [추측]과 해당 의미들과의 연관성이 깊음을 보여준다. 이를 고려하면 다른 언어에서도 [추측]의 요소가 공시적·통시적으로 [양보]나 [부정극성] 의미를 갖는 경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언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로 다른 언어에서도 한국어와 유사하게 비한정사 혹은 의문사를 기원으로 하여 [추측]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광범위하거나 심도 있는 분석을 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연구대상 어휘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비한정]> [양보]> [추측]’의 의미 변화 현상이 유형론적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일부 예를 보이고자 한다.

현대일본어의 ‘**nandemo**[何でも]’는 ‘무엇’을 의미하는 ‘なに’에 양보의 조사 ‘でも’가 결합한 것으로, 보통 ‘무엇이든지, 어쨌든’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나 (1)과 같이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언급하는 [추측]의 의미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

- (1) ㄱ. 何でも近く結婚するらしい (어쩌면 조만간 결혼할 것 같다)

(『교학사』)

ㄴ. 何でも近いうちに円の切上が有るそうだ (어쩌면 근간에 엔화의 절상이 있을 것
이라고 한다) (『엣센스』)

[자유선택]에서 비롯된 [양보] 의미에서 시작하여 [추측] 의미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何でも’은 앞서 살펴본 한국어의 ‘아무래도, 설마, 아마/아마도’와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스크리트어의 ‘**kathamapi**’는 ‘어떻게, 왜’ 등을 의미하는 의문사 ‘katham’과, 영어의 ‘also, even’ 정도에 대응되는 초점의 첨사 ‘-api’가 결합하여 형성된 어휘로 ‘어떻게 해서든’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며 부정소와 함께 쓰이면 ‘결코 ... 않다’는 의미의 부정극어로 쓰인다(Macdonell, 1929). 이를 차용한 고대 마라티어에서 ‘kathamapi’는 ‘아마도’의 [추측] 의미를 나타낸다(Tulpule & Feldhaus 1999). 즉 산스크리트어에서 ‘kathamapi’는 의문사에 첨사가 결합하여 ‘어떻게 해서든’ 정도의 전칭적 [양보] 의미를 나타내었고 이것이 고대 마라티어에서 차용되어 [추측] 의미를 나타낸 것인데, 이는 [양보]로부터 발달하여 [추측] 의미로 발달한 ‘설마, 아무래도, 아마도’의 의미 변화 과정과 유사하다.

6. 결론

‘설마’, ‘아무래도’, ‘아마도’는 [자유선택]의 용법을 갖는 비한정사 ‘현’, ‘아무’가 [양보] 용법에서 쓰이다가 추측부사로 변화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부정극성]의 맥락에서 쓰이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들 어휘는 초기에 양보문의 선행절에서 자유선택사가 갖는 전칭적 함의로 인해 거의 모든 가능세계에서 사태가 실현된다는, 사실성 판단의 영역으로 따지면 [확신]에 가까운 [추측] 의미를 나타내었으나 점차 그 범위가 넓어져 보다 사실성 정도가 낮은 [추측] 의미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어의 해당 어휘와 유사하게 다른 언어에서도 비한정사 혹은 의문사에서 출발하여 [양보]를 거쳐 [추측]을 나타내는 요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참고 문헌

- 김무림(2008), "'설마, 얼마'의 어원",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연구원.
- 박재연(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인식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7, 115-147.
- 신중진(2021), "의미 변화 이론의 수용 그리고 새 관점", 『한국어 의미학』 72, 31-57.
- 이상훈(2012), "중세한국어의 ‘현마’", 『국어사연구』 15, 295-319.
- 이상훈(2019), "중세어 ‘아모’에서 기원한 어형 연구", 『구결연구』 42, 187-209.
- 이정민(2005), "부정극성: 양보에 기저를 둔 척도성", 김영화 외, 『부정과 부정어』, 한국문화사, 185-224.
- 이흥구(2021), 『중세 한국어 양보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동훈(2012), "'은/는'과 종형의 의미 관계", 『국어학』 64, 217-271.
- 임동훈(2015), "보조사의 의미론", 『국어학』 73, 335-373.
- 전영철(2022), "한국어 양상 범주의 형식의미론적 접근에 대하여", 『인문논총』 79.2.,

7-38.

- 하귀녀(2005), "국어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재영(2001), "중세국어 부정극성어 '아마라타' 연구", 『언어학』 28, 239-261.
- Bhat, D. N. S.(2004), *Pronouns*, Oxford: Oxford University of Miami Papers.
- Haiman, J.(1974), Concessives, Conditionals, and Verbs of Volition. *Foundations of Language*, 11(3), 341-359.
- Hamblin, C.L.(1973), Questions in Montague English, *Foundations of Language*, 10 (1): 41-53.
- Haspelmath, M.(1997), *Indefinite Pronouns*, Oxford: Clarendon Press.
- Haspelmath, M. & E. König(1998), Concessive Conditionals in the Languages of Europe, *Adverbial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s of Europe*, Mouton de Gruyter, 563-640.
- Karttunen, L.(1977), Syntax and Semantics of Question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1): 3-44.
- Kratzer, A. (1977), What 'must' and 'can' Must and Can Mea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337-355.
- Kratzer, A. (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Words, Worlds, and Contexts: New Approaches to Word Semantics* (ed. by H-J. Eikmeyer and H. Rieser), Berlin: Walter de Gruyter, 38-74.
- König, E. (1985). Where do Concessives Come from? On the Development of Concessive Connectives, *Historical Semantics: Historical Word-Formation*, Walter de Gruyter.
- Lee, C. (1997), Negative Polarity and Free Choice Where Do They Come From, *Proceedings of the Eleventh Amsterdam Colloquium*, Paul Dekker, Martin Stokhof, Yde Venema (eds.), ILLC University of Amsterdam.
- Macdonell, A. A.(1929), A practical Sanskrit dictionary with transliteration, accentuation, and etymological analysis throughou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sal.uchicago.edu/dictionaries/macdonell/>>
- Palmer, F. R.(2001), *Mood and Modality*,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mat, P., & Ricca, D. (1998). Sentence adverbs in the languages of Europe. *Adverbial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s of Europe*, 187-275.
- Saeed, J. I.(2003), *Semantics*, 2nd ed., Blackwell Publishing.
- Tulpule, S.G. & Feldhaus, A.(1999), A dictionary of old Marathi. Mumbai: Popular Prakashan. <<https://dsal.uchicago.edu/dictionaries/tulpule/>>
- Ullmann, S.(1957), *The Principles of Semantics*, Oxford Uni.

연결어미 ‘-나’의 의미 기능에 대한 통시적 연구¹⁾

이홍구(서울대)²⁾

목 차

1. 서론
 2. 기본적 논의
 3. 연결어미 ‘-나₂’의 의미 기술
 4. 연결어미 ‘-나₂’의 변화의 방향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본 연구는 흔히 ‘대조’나 ‘양보’로 기술되어온 한국어 연결어미 ‘-나’에 대한 것으로 그 의미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중세 한국어의 ‘-나’가 조건성을 띠는 어떤 요소에서 점차 대조의 의미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볼 것이다. 이때, 구분을 위해 흔히 이접의 의미로 기술되어 온 것은 ‘-나₁’로 역접의 의미로 기술되어 온 것은 ‘-나₂’로 부르도록 하겠다.

후기중세 한국어의 연결어미 ‘-나₂’는 현대 한국어와 같이 ‘대조’나 ‘양보’ 혹은 ‘역접’의 의미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기술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허용 1975, 이기문 1961/1998, 안병희·이광호 1990 등). 기존에는 대조와 양보가 어떻게 다른지, 개별 표현이 나타내는 기능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에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던 듯하다. 아울러 중세 한국어의 대조 표현만을 대상으로 한 논의는 찾기 어려우며 ‘-나₂’의 의미 기능에 대한 통시적 연구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던 중세 한국어의 ‘-나₂’는 세부적인 의미 기능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박진호(2012: 487)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ㄱ. 天子 | 간하느 신하 닐곱 사람을 두면 비록 道 | 업스나 그 天下를 일티 아니호고
(天子 | 有爭臣七人이면 雖無道 | 나 不失其天下호고) <소학 2:71a> [박진호 (2012: 487)의 예]
- ㄴ. *천자가 간하는 신하 일곱 사람을 두면 비록 도가 없으나 그 천하를 잃지 않고

1) 본 발표문은 2021년에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 “중세 한국어 양보문 연구”의 4.2.1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ㄱ)의 경우 ‘천자가 간하는 신하 일곱 사람을 두면’은 특정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조건적 양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1ㄴ)과 같이 현대 한국어로 바꾸어 보면 ‘-나₂’가 매우 어색하다. 현대 한국어의 ‘-나₂’는 선행행절이 사실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것이나, 후기중세 한국어의 ‘-나₂’는 사실이 아닌 경우 즉, 조건적 양보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세부적인 지점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나₂’의 의미 기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아울러, 사실적 표현이 특별한 구문이나 표현의 도움 없이 조건적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운데, 반대로 조건적 표현이 몇몇 맥락에서 사실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어떠한 의미 기능이 먼저 생겨났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현대 한국어로 이어졌는지도 규명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나₂’의 의미 기능을 통시적으로 기술해 변화의 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유형론을 참조하여 해당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보 요소들을 분류하고 그 특징들을 기술한 König(1985, 1986, 2006)와 Haspalmath & König(1998), König & Siemund(2000) 등의 논의를 참고하였다.³⁾

2. 기본적 논의

2장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기에 앞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양보와 대조를 정의하고 범언어적 발달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양보와 대조의 정의

먼저 양보(concessive)는 어떤 지식이나 사태가 다른 지식이나 사태에 관여한다는 기대를 부정(denial of expectation)하여 두 지식이나 사태가 비관여적임(irrelevance)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 ㄱ. 밥을 먹어도(A) 배가 부르지 않다(not-B).
 ㄴ. (기대) 밥을 먹으면(A) 배가 부르다(B).⁴⁾

(2ㄱ)의 경우 ‘밥을 먹는 사태’와 ‘배가 부른 사태’가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두 사태 또한 관여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를 (2ㄴ)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ㄱ)에서는 이러한 기대를 부정하여 두 사태가 비관여적임을 나타내고 있다.⁵⁾

본고에서 사용하는 ‘양보’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실적 양보는 사태가 사실인 것이며 조건적 양보는 사실인지에 대해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⁶⁾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 접속 관계의 원형성에 대한 논의인 Comrie(1986), 기존 논의들을 정리한 논의인 Rudolph(1996), 통사론적 논의인 Azar(1997), 여러 참조 문법을 망라한 Xrakovski(2012) 등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4) “Even though it is raining(p), Fred is going out for a walk(~q).”과 같은 문장의 기대 표상 방식으로 “If it is raining(p), one normally does not go out for a walk(q).”(König 1988)와 “The more it rains, the less people go out for a walk.”(Azar 1997) 등이 제안된 바 있다. 우리는 조건 연결사 ‘-면’을 사용한다.

5) 기대는 화용론적 개념으로, 전제되었거나 전제된 것에서 추론된 일반 명제에 해당한다. 이에 보편적인 지식과 관련하여 추론되거나 맥락을 통해 추론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를 부정하여 두 지식이나 사태 사이의 비관여성을 나타내는 것을 양보문이라 할 수 있다.

- (3) ㄱ. 어제 비가 {왔지만/왔는데도/왔음에도} 소풍을 갔다. [박진호(2012: 487)의 예]
 ㄴ. 내일 비가 {와도/오더라도/올지라도} 소풍을 갈 것이다. [박진호(2012: 487)의 예]
 ㄷ. (기대) 비가 오면 소풍을 가지 않는다.

먼저 (3ㄱ)과 (3ㄴ)은 모두 선행절에서 발생하는 기대인 (3ㄷ)을 부정해 선·후행절의 사태가 비관여적임을 표현하고 있어 양보라 할 수 있다. 이때, (3ㄱ)의 ‘비가 오는 사건’과 ‘소풍을 간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것으로 사실적 양보에 해당한다. 반면 (3ㄴ)의 경우 ‘비가 오는 사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조건적 양보라 할 수 있다.

두 범주의 구분이 유용한 까닭은 각각에 사용되는 표현이 다르다는 데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조건적 양보에 주로 사용되는 요소로 ‘-더라도, -든지라도’ 등이 존재하고 사실적 양보에만 사용되는 요소인 ‘-지만, -고도’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서정섭 1991, 박진호 2011, 이순옥 2017 등).⁷⁾

대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 ‘내용상 서로 대립되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어주는 접속 관계’(윤평현 1989: 59)를 제시할 수 있다. 사실을 나열하는 병렬 표현도 맥락에 따라 대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대조에 사용되는 표현이 사실적 양보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다. Lakoff(1971: 129)에 따르면 영어의 ‘but’은 대조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기대의 부정(양보)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 (4) ㄱ. John is tall but Bill is short. [Lakoff(1971: 129)의 예]
 ㄴ. John is tall but he is no good at basketball. [Lakoff(1971: 129)의 예]

(4ㄱ)의 경우 ‘tall’과 ‘short’ 사이의 명시적인 반의관계를 찾을 수 있으나 (4ㄴ)은 그렇지 않다. 기대의 부정과 비관여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한국어의 ‘-나₂, -지만’과 같은 대조의 연결어미도 사실적 양보로 사용될 수 있다.

대조와 양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은경(1996: 203-204)에서는 ‘주어가 다르고 서술어가 반의 관계인 경우’, ‘주어가 다르고 다른 요소가 대조되며 서술어는 동일한 경우’, ‘주어는 동일하나 다른 요소가 대조되며 서술어가 반의 관계인 경우’ 세 가지를 의미론적 대조로, 맥락의 도움을 받아 기대의 부정으로 해석되는 것을 화용론적 대조로 구분한 바 있다. 예를 살펴보겠다.

6) ‘조건적 양보’로 지칭한 이 범주는 그동안 ‘concessive conditionals’, ‘irrelevance conditionals’, ‘hypothetical concessives’ 등 다양하게 명명되어왔다. 한국어의 학계에서도 ‘양보적 조건’과 ‘조건적 양보’ 두 용어가 모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문자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전자는 이 범주를 조건의 특수한 경우로 파악하는 입장을 후자는 이 범주가 양보의 내부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 두 견해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접속 범주들은 원형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경계를 단절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보의 하위부류이면서 동시에 조건의 특수한 경우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박진호(2012: 486)의 “[양보적 조건]은 조건과 양보의 교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언급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본고는 편의상 ‘조건적 양보’를 선택하였다.

7) 이러한 현상은 범언어적으로도 확인되는데 단적인 예로, 영어의 조건적 양보는 ‘even if’에 의해 주로 표현되며 사실적 양보는 ‘although’, ‘even though’ 등의 접속사, ‘in spite of’ 등의 전치사, ‘nevertheless’, ‘even so’ 등의 접속부사 등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Haspelmath & König 1998: 566)

- (5) ㄱ. 철수는 크지만 영화는 작다. [이은경(1996: 203-204)의 예]
 ㄴ. 철수는 가난하지만 깨끗하다. [이은경(1996: 203-204)의 예]
 ㄷ. (기대) 가난하면 깨끗하지 못하다.

(5ㄱ)에는 ‘크다-작다’의 명시적인 반의관계가 보인다. 이런 경우를 의미론적 대조라 할 수 있다. 반면, (5ㄴ)의 ‘가난한 것-깨끗한 것’의 관계는 의미론적 반의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화용론적 해석에 의존하여 (5ㄷ)과 같은 기대를 상정해 설명하는 것이 더 원활하다. 이처럼 대조의 연결어미가 기대의 부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경우 선·후행절은 모두 사실에 해당한다. 이은경(1996)에서는 이를 ‘화용론적 대조’라 하였으나 본고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사실적 양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이은경(1996)과 본고의 구분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인데, 화용론적 대조이자 사실적 양보인 것은 대조로도 볼 수 있고 양보로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Comrie(1986)에서는 조건과 기타 인접 범주들의 식별에 대해 필요충분조건(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이 아닌 원형(prototype)의 관점에서 구성을 식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접한 범주의 경우 개념적으로 공통점을 보이며 동일한 표현이 두 범주를 모두 포괄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⁸⁾

이에, 양보의 경우 조건적 양보와 조건이 공통점을 공유하고, 대조와 사실적 양보가 공통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며(이는 박진호(2012: 486)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다시 원형이론적 관점에서 의미론적 대조는 대조의 중심적 부분에, 화용론적 대조(사실적 양보)는 주변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화용론적 대조(사실적 양보)에 해당하는 것은 대조에도 속할 수 있고 양보로 떼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화용론적 대조를 사실적 양보라고 부르고 의미론적 대조는 대조라고 부르도록 한다.



<그림 1> 문장 접속의 개념 공간 (일부)

2.2. 범언어적 발달 양상

조건적 양보는 귀결절(apodosis)에 대응하는 다수의 전제절(protasis)을 상정하는 방식을 취해 두 사태나 지식이 비관여적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다 (Haspelmath & König 1998: 565).

If {a or b or c or d ...} then q

즉, a인 상황에도 후행절이 참이고 b, c, d 등인 상황(혹은 not-a인 상황)에도 q가 참임을 표현함으로써 a인 것과 관계없이 q가 성립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8) 특히 ‘양보’라는 범주 자체에 대해 König(2006)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 바 있다. ‘어린아이가 가장 늦게 배우는 범주’, ‘문어 형식의 발달과 함께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양보가 다른 접속 관계보다 후천적으로 생겨났고 문법화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다른 문법 요소로부터 발달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대조, 조건 등의 문법 요소를 내부에 포함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수의 전제절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König(1986), Haspelmath & König(1998)에서는 범언어적 주요 하위 유형(major subtype)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현대 한국어와 중세 한국어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 실현 유형은 확인된다(이순옥 2017, 이흥구 2021).

- (6) ㄱ. Even if you drink (only) a little, your boss will fire you. [König(1986: 231)의 예]
 ㄴ. Whether he is right or not, we must support him. [König(1986: 231)의 예]
 ㄷ. However much advice you give him, he does exactly what he wants to do. [König(1986: 231)의 예]

(6ㄱ)은 ‘even’을 제외하면 ‘네가 술을 조금 마신다면 너의 상사가 너를 자를 것이다’ 정도의 단순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나 첨가 초점사(additive focus particle) ‘even’에 의해 양보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⁹⁾ 이때 사용된 첨가 초점사는 초점화된 표현과 동일한 성질을 지닌 대안 집합이 존재함을 전제하는 것이다(Karttunen & Peters 1979).

(6ㄴ)은 대안 조건(alternative conditionals)에 관계된 것이다. 이 유형은 둘 이상의 대안적 상황을 제시하고, 제시된 상황에서 모두 후행절 사태가 성립함을 표현함으로써 비관여성을 표현하는 것이다.¹⁰⁾ 구체적으로 (6ㄴ)에서는 ‘그가 옳음’과 ‘옳지 않음’ 두 대안 조건을 나열하였고 두 경우 모두 그를 도울 것임이 표현되었다.

(6ㄷ)은 자유 선택사(universal/free choice quantifier)와 관계된 것이다.¹¹⁾ 전제절에 있는 변항에 어떤 것이 오든 후행절이 항상 참이 됨을 표현함으로써 비관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Haspelmath & König(1998: 570)에서는 이러한 자유 선택사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특히 비관여성을 나타내는 표현(ever ..)과 비한정사(wh- ..)가 결합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6ㄷ)의 자유 선택의 대상은 조언의 정도로, 조언을 얼마나 해주든 후행절은 명제가 항상 성립함이 표현되었다.

본고에서는 (6ㄱ)과 같은 유형을 첨가 초점사 양보, (6ㄴ)과 같은 유형을 대안 조건적 양보, (6ㄷ)과 같은 유형을 자유 선택사 양보라 부른다.¹²⁾

다음으로 사실적 양보는 양립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절이 모두 사실임을 단언함으

9) 이러한 양보 유형은 첨가 초점사나 강조 초점사 단독 혹은 첨가 초점사나 강조 초점사와 조건/시간 연결사의 복합(Focus particle/emphatic particle and/or conditional/temporal conjunction)에서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 한국어로는 ‘-어도, -더라도’ 정도가 이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범언어적으로는 영어의 ‘even if, even though’, ‘even so’, 독일어의 ‘ob-gleich’, ‘ob-wohl’, 라틴어의 ‘et-si’, 그리스어의 ‘ei-kai’, 프랑스어의 ‘quand même, lorsque même’, 일본어의 ‘keredomo’, 말레이어의 ‘-enkil-um’, 터키어의 ‘cond de’ 등이 있다.

10) 현대 한국어 ‘-거나, -든지’ 등의 이접 표현이 이 유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레즈기어의 ‘... V-t’a-ni ... V-t’a-ni’, 라틴어의 ‘sive ... sive’, 영어의 ‘whether ... or ...’, 아르메니아어의 ‘V_{SUBJ} t’e V_{SUBJ}’ 등이 있다.

11) 현대 한국어에서도 비한정 대명사와 이접 표현 등의 복합으로 실현될 수 있다. 범언어적으로는 영어의 ‘although’, ‘albeit’, ‘however’와 독일어의 ‘bei all’, ‘allerdings’, 라틴어의 ‘quamquam’, 프랑스어의 ‘toutefois’, ‘tout ... que’, ‘bienque’, 헝가리어의 ‘habár’ 등이 있다.

12) 현대 한국어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는 첨가 초점사 양보, (b)는 대안 조건적 양보, (c)는 자유 선택사 양보에 해당한다.

(a). 아인슈타인이 풀어도(A) 이 문제는 풀 수 없다(not-B).

(b). 당신이 먹었든지(A) 안 먹었든지(not-A) (간에) 음식값은 당신이 치러야 한다(not-B).

(c). 무슨 일을 맡겨도(A) 철수는 항상 훌륭하게 해낸다(not-B).

로써 비관여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범언어적인 사실적 양보 표현을 조사, 분류한 König(1985, 1988, 2006)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8) ㄱ. 자유 선택사(universal/free choice quantifier)¹³⁾
- ㄴ. 첨가초점사/강조사와 조건적/시간 연결사(Focus particle/emphatic particle and/or conditional/temporal conjunction)¹⁴⁾
- ㄷ. 공존, 동시 발생을 나타내는 표현(Remarkable co-occurrence/co-existence)¹⁵⁾
- ㄹ. 인간 행위주나 경험주에 적용되는 개념을 가진 표현(notions such as ‘obstinacy,’ ‘contempt,’ and ‘spite,’ that is, from notions originally applicable only to human agents or experiencers)¹⁶⁾
- ㅁ. 기원적으로 ‘사실’ 등의 의미를 가진 표현이나 강조적 단언에 사용된 표현(expressions originally used for emphatic affirmation, Expressions with the original meaning ‘true’, ‘indeed’, ‘fact,’ or ‘well’)¹⁷⁾

(8ㄱ), (8ㄴ) 두 유형은 조건적 양보에서 발달한 것이다. 조건적 양보는 흔히 사실적 양보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교량을 거쳐 사실적 양보 표현으로 굳어진 경우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단적으로 영어의 ‘even though’나 한국어의 ‘-고도’는 첨가초점사를 내부에 가지고 있는 조건적 양보 표현이었으나 현대에는 모두 사실적 양보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8ㄷ)의 경우 사실인 두 절이 이어졌을 때 맥락에 의해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함축을 거쳐 의미가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배경제시나 대조 표현이 속할 수 있다. 선·후행절에 모두 사실인 명제가 오는 배경제시나 대조 연결어미들의 경우, 맥락이 허용된다면 양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8ㄹ), (8ㅁ)은 의미 탈색(bleaching)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실적 양보 표현은 대부분 대조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양보의 유형론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있다. 하나는 범언어적으로 조건적 양보 표현이 사실적 양보 표현으로도 사용되거나 발달하는 경우는 많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그 역의 변화 즉, 사실적 양보 표현이 조건적 양보 표현으로 발달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Haspelmath & König 1998: 592).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¹⁸⁾

13) 영어의 ‘although, albeit, for all, all the same, however’, 독일어의 ‘bei all, allerding, wiewohl’, 라틴어의 ‘quamquam’, 프랑스어의 ‘toutefois, tout ... que, (com)bienque’, 핀란드어 ‘vaikka’, 헝가리어의 ‘habár’ 등이 있다.

14) 영어의 ‘even though, even so’ 독일어의 ‘ob-gleich, ob-wohl, ob-schon, wenn-gleich’, 라틴어의 ‘et-si’, 그리스어의 ‘ei-kai’ 프랑스어의 ‘quand même, lorsque meme’ 핀란드어의 ‘jos-kin, sitten-kin’, 일본어의 ‘keredomo’, 말레이어의 ‘-enkil-um’, 터키어의 ‘cond + de’ 등이 있다.

15) 영어의 ‘nevertheless, notwithstanding, just the same, regardless, still, yet’, 독일어의 ‘dennoch’, 라틴어의 ‘nihilominus’, 프랑스어의 ‘cependant, n’empêche que’ 스페인어의 ‘aunque’, 터키어의 ‘iken, bununla beraber’, 헝가리어의 ‘mégis’ 등이 있다.

16) 영어의 ‘in spite of, despite’, 프랑스어의 ‘en dépit de, au mépris de’, 독일어의 ‘trotz, trotzdem’, 스페인어의 ‘a pesar de’, 네덜란드어의 ‘ondanks’, 아랍어의 ‘ragman’ 등이 있다.

17) 영어의 ‘true’, 독일어의 ‘zwar’, 라틴어의 ‘quiden’, 프랑스어의 ‘avoir beau’, 헝가리어의 ‘ugyan’, 일본어의 ‘no ni’, 캄보디아어의 ‘dbyt, dbyt-tae’, 나와틀어의 ‘in-tlá-nel, im-ma-nel’ 등이 있다.

18) 배경 제시 등 다른 표현의 경우도 사실적 양보와 대조 표현으로 발달할 수 있으나 본 논의에서는 유용하지 않고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제외하고 그림을 그려 보았다.

專_口 自_ラ… 受_尸 不_ッ…ハ 要_キ 衆生_ヲ… 與_ッ…(not-B) 然_セ…_ハ… 後_リ…_ハ 方_ニ 食_ッ…カ(佛子 云何爲菩薩分減施 此菩薩稟性仁慈 好行惠施 若得美味 不專自受 要與衆生 然後方食)[불자야, 어떠한 것을 보살의 分減施라 하는가 하면 이 보살은 타고난 仁慈이라서 즐겨 惠施를 行하니 만약 맛있는 음식을 얻어도 오로지 스스로 받지 않고서 필히 중생에게 주고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후에야 비로소 먹으며,] <화소 09:09-12>

ㄴ. (기대)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A) 스스로 받는다(B).

ㄷ. 尸羅_乙 犯_ッ…_ハ 有_セ…_ハ (A) 而_ハ 輕舉 不_ッ…_ハ (not-B) (有犯尸羅而不輕舉)[시라를 범한 바가 있어도 가벼이 들추지 않고] <유가 17:12-13>

ㄹ. (기대) (누군가) 시라를 범함이 있으면(A) 들춰낸다(B).

(10ㄱ)의 경우 맛있는 음식을 얻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어 조건적 양보로 볼 수 있다. (10ㄴ)과 같이 기대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부정해 음식을 혼자만 먹지 않고 중생에게 먼저 준다고 하였다.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A) → 스스로 받는다(B).

? (C) → 스스로 받지 않는다(not-B).

(10ㄷ)도 시라를 범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어 조건적 양보로 볼 수 있다. (10ㄹ)과 같이 기대를 기술할 수 있다. (10)의 예문에는 모두 선어말어미 ‘-_ㄱ(₃)-’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이접의 ‘-거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황선엽(2002: 124)에 의하면, 이접이라면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둘 이상의 항이 존재해야 하는데 (10)의 선행절의 표면에는 하나의 항밖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거나’가 양보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_ㄴ’ 외에 이접 표현인 ‘-_ㄴ’도 조건적 양보로 실현되는 경우가 발견되어 함께 살펴볼 만하다. 아래 (11)은 이접 표현 ‘-_ㄴ’가 조건적 양보의 하나인 대안 조건적 양보로 실현된 예이다.

(11) 又 彼_ハ {於_レ晝夜_ハ… 若_シ 行_ッ…(A1) 若_シ 住_ッ…(A2) 衣服… 飲食… 命緣…_ハ… 習近_ノ…_ハ… 如_ハ…(又 彼如於晝夜若行若住, 習近衣服飲食命緣) [또 그는 밤낮으로 다니거나 머무르거나 간에, 의복이니 음식이니 명연이니 하는 것을 가까이 익히는 것과 같이] <유가 27:21-22>

(11)은 전형적인 대안 조건적 양보로, ‘밤낮으로 다니는 것’(A1)과 ‘밤낮으로 머무르는 것’(A2)에 관계없이 ‘언제나 衣服, 飲食, 命緣을 가까이 익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2. 후기중세 한국어의 ‘-나’

후기중세 한국어의 연결어미 ‘-나’는 주로 사실적 양보(화용론적 대조)로 사용되나 조건적 양보와 의미론적 대조의 예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12)는 사실적 양보(화용론적 대조)로 볼 수 있는 예이다.

(12) ㄱ. 東征에 功이 無 이나(A) 所掠을 다 노_{ᄃᆞ}샤(C) 歡呼之聲이 道上에 滿_{ᄃᆞ}흐니 (not-B) (東征無功 盡放所掠 歡呼之聲 道上洋溢) <용가 41上>

- ㄴ. (기대) 정벌이 못 이루어지면(A), 환호하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지 않다(B).
 ㄷ. 諸王妃와 公主와를 주시고 니르샤디 富貴에 나기런 모로매 蠶桑의 쉽디 아니호
 물 아롤디니 이 비록 무기 **버릴 거시나(A)** 民間에 이션 오히려 어두미 어려우
 니(not-B) 그럴식 켜여 너를 뵈노니 아디 몬호미 몬호리라 헝더시다(以賜諸王
 妃와 公主호시고 謂曰호샤디 生長富貴호얀 當知蠶桑之不易니 此雖荒類棄遺 | 나
 在民間호얀 猶爲難得이니 故로 織以示汝호노니 不可不知也 | 라호더시다) <내훈
 2하:51b-52a>
 ㄹ. (기대) 실 토막이 버릴 만한 것이면(A) 민간에서 구하기 쉽다(B).

(12ㄱ)는 당태종이 동방 정벌을 완수하지는 못했으나 포로를 풀어주어 사람들이 기뻐했
 는 배경 이야기가 있어 사실적 양보라 할 수 있다. 기대는 (12ㄴ)과 같이 상정할 수 있으며
 환호하는 소리가 가득한 까닭으로 노략한 것(所掠)을 다 놓았다는 것(C)이 명세되어 있다.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동방 정벌에 공이 못 이루어지면(A)	→ 환호하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지 않다(B).
노략한 바를 놓으시면	(C) → 환호하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다(not-B).

(12ㄷ)도 사실적 양보로 볼 수 있다. 왕비와 공주들에게 하는 발화로 선행절에서 실 토막이
 버릴만한 것임을 제시하여 (12ㄹ)과 같은 기대를 상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기대를 부정해
 민간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조건적 양보의 경우다. 현대 한국어의 ‘-나₂’는 대조와 사실적 양보로만 사용되
 고 조건적 양보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서는 ‘-나₂’가 조건적 양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예문들도 일부 발견된다.

- (13) ㄱ. [法華經을 受持讀誦하면] 비록 無漏智慧를 得디 **몬호나(A)** 意根이 淸淨호미
 이 곧홀씩(C) 이 사르미 스랑호야 헤아리며 말 닐오미 다 佛法이라(not-B)(雖
 未得無漏智慧 而其意根 淸淨如此 是人有所思惟 籌量言說 皆是佛法) <월식
 17:74a>
 ㄴ. (기대) 무루지혜(의 경지)를 얻지 못하면(A) 생각하며 말하는 것이 모두 불법
 인 것은 아니다(B)
 ㄷ. 父母 | 비록 **엮스시나(A)** 장초 善을 홀 저기 父母의 도훈 일홈 긴토물 스랑호
 야 모로매 果斷히 호며(not-B) 장초 不善을 홀 저기 父母의 붓그러우며 辱드
 윈 일 긴틸가 스랑호야 모로매 果斷히 마롤디니라(not-B)(父母 | 雖沒호시나
 將爲善홀식 思貽父母令名호야 必果호며 將爲不善홀식 思貽父母羞辱호야 必不果
 | 니라) <내훈 1:58a>
 ㄹ. (기대) 부모가 없으면(A) 부모를 생각해 선한 일을 과감하게 하지 않는다(B).

(13ㄱ)은 부처님의 발화로 ‘법화경’을 수지독송(受持讀誦)하여 얻는 공덕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수지독송을 하면 무루지혜(無漏智慧)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지독송을
 했음에도 무루지혜를 얻지 못한 경우를 가정해,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이 생각하거나 말하
 는 것이 모두 불법(佛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조건적 양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13ㄷ)의 경우도 부모가 없는 것을 사실이라 하기는 어렵고, 그런 경우를 가정하여 후행절
 이 사태가 항상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다.

부모가 없으면(A)	→ 부모를 생각해 선한 일을 과감하게 하지 않는다(B).
?(C)	→ 부모를 생각해 선한 일을 과감하게 한다(not-B).

이러한 예들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면 ‘-나₂’의 쓰임이 매우 어색해 현대 한국어의 ‘-나₂’의 기능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²¹⁾

다음으로 의미론적 대조의 예다. 석독 구결 문헌에는 ‘-나₂’가 의미론적 대조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후기중세 한국어에서도 많은 예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아래는 의미론적 대조로 볼 만한 예들이다.²²⁾

- (14) ㄱ. 남지니 甲을 니버 가시나 거지븐 므츄매 지비 잇도다(丈夫則帶甲 婦女終在家)
 <두시-초 12:22a>
 ㄴ. 저르며 壯호며 老耄호미 種種으로 變호야 다르나 보몬 달오미 업스니 이 곧 生滅中에 生滅 아니호는 거시라(幼壯老耄 | 種種變異호나 而見은 無有異호니 此 | 卽生滅中에 不生滅者也 | 라) <능엄 2:9a>

(14ㄱ)에서 ‘남진’은 갑옷을 입고 갔으나, ‘거집’은 집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의미론적 대조라 할 수 있다. (14ㄴ)은 ‘幼壯老耄’은 다름이 있지만 ‘見’은 다름이 없다는 것이 대조되는 것으로 보인다.²³⁾

cf) 몇 문헌에서의 ‘-나₂’의 분포 경향

‘-나₂’의 사실적 양보의 의미 기능은 문헌 별로 다른 분포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釋譜詳節』에서는 ‘-나₂’가 사실적 양보로 사용된 예가 확인되지 않으나 『月印釋譜』에는 사실적 양보로 사용된 예가 비교적 많이 발견된다.²⁴⁾ 특히 (15)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예문이 ‘비록 ... -어도’에서 ‘비록 ... -나₂’로 수정된 경우도 존재한다.

- (15) ㄱ. 비록 無漏智慧를 得디 몬호야도(A) 意根이 淸淨호미 이러흐씨(C) 이 사르미 스랑호며 헤아리며 니르는 마리 다 부텃 法이라 아니 眞實호니 업스며 또 先佛入 經 中에 니르산 배리라(not-B) <석상 19:25a>
 ㄴ. 비록 無漏智慧를 得디 몬호나(A) 意根이 淸淨호미 이 곧흐씨(C) 이 사르미 스랑호야 헤아리며 말 닐오미 다 佛法이라 眞實티 아니호 디 업스며 또 몬젓 부텃 經 中에 니르산 배라(not-B) <월석 17:74a>²⁵⁾

(15)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언해로 파악되는 것이다. (15ㄱ)의 “몬호야도”는 (15ㄴ)에서 “몬호나”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은 『釋譜詳節』와 『月印釋譜』 사이의 문제상의 차이점 정도로 제시해 둘 수 있을 듯하다.²⁶⁾

21) 다만, 간경도감 문헌에서 ‘-나₂’가 조건적 양보로 사용된 예가 많지는 않으며, 대부분 조건 표현의 영향권 안에 있어 조건적 양보로의 실현이 순수하게 ‘-나₂’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지적해 둘 수 있다.

22) 후기중세의 경우 ‘-나₂’는 대부분 ‘雖’나 ‘縱’에 인해되어 ‘비록 -나’ 구성으로 나타난다.

23) 이러한 의미론적 대조의 예는 『釋譜詳節』이나 『月印釋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24) 투석에 가까운 ‘그러나’를 제외하고, 약 33건 발견할 수 있었다.

25) 원문은 “雖未得無漏智慧 而其意根 淸淨如此 是人有所思惟 籌量 言說 皆是佛法 無不眞實 亦是先佛經中所說” 정도로 볼 수 있다.

한편, 후기중세 한국어의 ‘-나₁’의 경우도 조건적 양보의 하나인 대안 조건적 양보와 자유 선택사 양보로 모두 사용될 수 있었다.

(16) ㄱ. 시혹 뱀커나(A) 시혹 뱀티 아니커나(~A) 즉재 便安호느니라(或吐或不吐即安)
<구급방상42b>

ㄴ. 世尊하 이마티 므슴 닛가 正定 求홀 싸르미 헝다가 道場에 있거나(A1) 너나몬
딕 디나 헝니거나(A2) 散亂 므슴모로 聚落에 노노매 니르리도(A3) 우리들 무
리 상네 반드기 조차 이 사르물 侍衛호야(世尊하 如是修心호야 求正定人이 若
在道場커나 及餘經行커나 乃至散心으로 遊戲聚落호야도 我等徒衆이 常當隨從호
야 侍衛此人호야) <능엄 7:65b>

ㄷ. 아므란 므술히어나 자시어나 ㄱ올히어나 나라히어나 빈 수프리어나 이 經을 너비
펴며 藥師琉璃光如來入 일후를 디니스바 恭敬 供養호스ᄃ리웃 잇거든 우리들히 이
사르물 衛護호야 一切 苦難을 버서나고 願호논 이를 다 일의 호리이다(隨於何等村
城國邑空閑林中 若有流布此經或復受持藥師琉璃光如來名號 恭敬供養者 我等眷屬衛
護是人 皆使解脫一切苦難 諸有願求悉令滿足) <월석 9:61b>

ㄹ. 目連이 노흔대 그 어미 몰여 드러가며 불려 닐오디 아가 아가 하 설버호노니
아므레나 救호야 내오라(目連放 却阿孃被獄主驅入獄中 喚言我兒 嬌子嬌子 苦痛
難忍 百方作計 救取阿孃) <월석 23:87b>

(16ㄱ)은 A와 부정의 형식을 취하는 not-A가 이접 연결되었고, (16ㄴ)에는 대안 집합이 되는 A들이 이접 연결되었다. 이를 통해 비관여성을 얻어 (16ㄱ)은 ‘토를 하든 하지 않든’, (16ㄴ)은 ‘대상이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후행절이 항상 성립됨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조건적 양보라 할 수 있다. (16ㄴ)에서는 ‘-어도’가 공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16ㄷ)의 ‘아므란’은 ‘아므’에 접미사 ‘-라’가 통합되어 ‘아므라호-’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⁷⁾ 자유 선택의 대상으로 장소 명사인 ‘므술(A1), 잣(A2), ㄱ올(A3), 나라호(A4), 빈 수플(A5)’ 등이 나열되었다. 자유 선택사 양보와 대안 조건적 양보와 공모하는 예로 볼 수 있을 듯하다. (16ㄹ)의 ‘아므레나’의 경우 ‘어떻게든’ 정도의 의미로 파악된다.²⁸⁾ 비한정 대명사 ‘아므’에 방법의 접미사 ‘-레’(혹은 ‘-려’)가 결합한 형태에 이접 표현인 ‘이나’가 결합해 방법에 대해 자유 선택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²⁹⁾

3.3. 현대 한국어의 ‘-나₂’

26) 두 문헌 사이의 간격이 반세기도 안된다는 점과 비슷한 시기 문헌인 『龍飛御天歌』에도 ‘-나₂’가 사실적 양보로 사용된 예가 11건 정도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짧은 시간 내에 주로 쓰이는 연결어미가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문헌의 문체가 달랐다고 할 수 있겠다.

27) 이는 이현희(1985: 233)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접미사 ‘-라’는 ‘-려’와 모음조화쪽으로 분간되는 것으로 그 의미는 방향이나 방법 정도라 할 수 있다.

28) 물론 ‘아므레나’ 자체를 어휘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듯하다. 아울러, 이때의 ‘아므레나’는 당위의 양태와 의미가 통할 수 있는 듯하다. 아래와 같은 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내 다몬 혼 앞 이 더런 모던 ㅼ들 머그니 아므레나 고티게 호리라 호고(吾唯一弟. 忽生邪見恐永迷沒 我當方宜除其惡念 即還宮內)” <석상 24:27a>의 경우 ‘마땅히, 반드시’ 정도의 의무 양태에 해당하는 한문 원문에 대해 ‘아므레나’로 언해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29) 이 구성에 대해 이상훈(2019: 200)에서는 ‘아므려’에 ‘이나’가 통합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아므려’는 15세기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므(아모)’에 접미사 ‘-레’와 ‘이나’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본 바 있다. 물론 ‘아므려’의 경우도 접미사 ‘-려’가 통합한 것이 아니라 ‘아므리호야’에서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현희(1985: 18-19)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현대 한국어의 연결어미 ‘-나₂’는 사실적 양보(화용론적 대조)와 의미론적 대조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7) ㄱ. 철수는 회사원이나 영화는 학생이다. [박진호(2012: 486)의 예]
 ㄴ. 어제 비가 왔으나 소풍을 갔다. [박진호(2012: 487)의 예]
 ㄴ'. 만약 비가 {*오나, *오지만, 와도, 올지라도} 소풍을 갈 것이다.
 ㄷ. (기대) 비가 오면 소풍을 가지 않는다.

(17ㄱ)의 경우 철수와 영화가 ‘직업’에서 차이점을 보여 의미론적 대조라고 할 수 있다. (17ㄴ)은 (17ㄷ)과 같은 기대를 상징할 수 있는 사실적 양보다. 이러한 ‘-나₂’는 조건적 양보로는 사용될 수 없는데, (17ㄴ')과 같이 사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나₂’가 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 한국어의 연결어미 ‘-나₁’도 조건적 양보의 하나인 대안 조건적 양보와 자유 선택사 양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8) ㄱ. 밀거나 곱거나 네 아내가 아니냐? [윤평현(1989: 57)의 예]
 ㄴ. 그는 오나 가나 말썽이다. [윤평현(1989: 57)의 예]
 ㄷ. 무슨 일을 맡기(거)나 철수는 항상 훌륭하게 해낸다.
 ㄹ. 어떻게 연락을 취하든지 철수는 받지 않을 것이다.

(18ㄱ, ㄴ)은 선행절에 나열된 사건들과 후행 사건이 서로 비관여적인 대안 조건적 양보라 할 수 있다. (18ㄱ)은 아내가 ‘미운 것’과 ‘고운 것’은 모두 그 사람이 아내라는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18ㄴ)도 ‘오는 것’과 ‘가는 것’이 그가 말썽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18ㄷ, ㄹ)은 자유 선택사 양보다. 각각 비한정사 ‘무슨’과 ‘어떻게’와 ‘-(거)나’나 ‘-든지’가 공기하여 일의 종류, 연락의 방법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일의 종류와 연락의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후행절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연결어미 ‘-나₂’의 변화의 방향

4.1. 변화의 경로

3장을 통해 확인한 의미 기능의 분포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19) ㄱ. **전기 중세**: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로 사용된 예는 발견되나 의미론적 대조로 사용된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³⁰⁾
 ㄴ. **후기 중세**: 사실적 양보의 예가 주로 발견되었고 조건적 양보와 의미론적 대조로 사용된 예도 일부 발견되었다.
 ㄷ. **현 대**: 의미론적 대조와 사실적 양보로 주로 사용되고 조건적 양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30) 다른 차자표기 자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문한 탓일 수 있으나, 다른 차자표기 자료에서도 의미론적 대조의 예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나₂’의 의미 기능의 통시적 발달

	의미론적 대조	화용론적 대조 (사실적 양보)	조건적 양보
전 기 중 세			
후 기 중 세			
현 대			

먼저 분포로 보았을 때, 석독구결 문헌에서 ‘-ㄴ₂’가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미론적 대조로 사용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원형 이론의 관점에서 ‘대조’라는 범주를 살펴본다면, 화용론적 대조보다는 의미론적 대조가 더 중심에 가까운 기능이라 할 수 있다. ‘-ㄴ₂’가 확고한 대조 표현이라면 더 원형적인 속성을 가지는 의미론적 대조의 예가 충분히 발견되어야 할 것인데, 전기중세 한국어에서 그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전기중세 한국어의 ‘-나₂’는 대조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고 양보 표현으로 기술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다음으로, [표 1]을 보면 현대 한국어로 갈수록 점차 조건적 양보의 기능은 축소되고, 의미론적 대조의 기능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점차 조건적 양보에서 대조 쪽으로 의미 기능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후기중세 한국어는 이러한 변화의 중간 단계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₂’는 주로 사실적 양보로 사용되지만 일부에서 여전히 조건적 양보로의 쓰임도 발견되며 의미론적 대조의 쓰임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2장에서 정리한 변화의 경향을 참조해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설명해볼 수 있다. 앞서 범언어적으로 조건적 양보 표현이 사실적 양보 표현으로도 사용되거나 발달하는 경우는 많으며, 반대로 사실적 양보 표현이 조건적 양보 표현으로 발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Haspelmath & König 1998: 592). ‘-나₂’의 경우 중세 한국어에서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로 사용될 수 있었는데, 범언어적 의미 변화의 방향성으로 본다면, 사실적 양보에서 조건적 양보의 기능으로 확대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반대로 조건적 양보에서 사실적 양보의 기능으로 확대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평행 사례인 ‘-고도’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고도’는 중세 한국어에서는 조건적 양보로 사용되던 것이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실적 양보로 의미가 변화하였다. 아울러, 다른 사실적 양보 표현(‘-나₂, -지만’ 등)과는 다르게, (20)과 같이 조건 표현의 영향권 내부에 있는 경우 조건적 양보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특징도 보인다.³¹⁾

- (20) 만약 徭役의 이중 부담이 문제였다면, 그것은 토지를 지급하지 {않고도/*않으나/*않지만} 시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종) [이순욱(2017: 33)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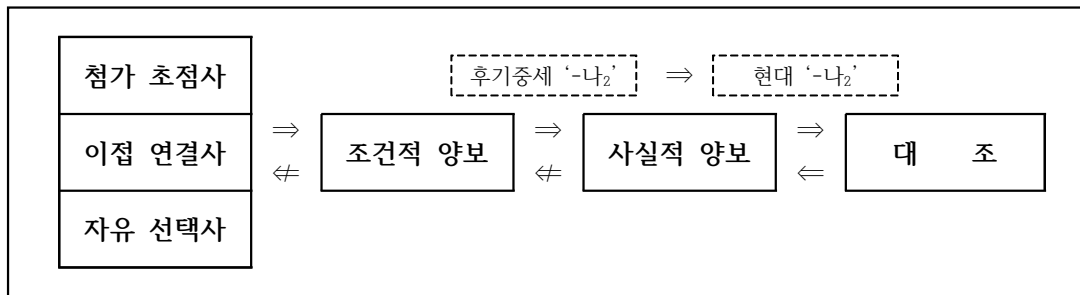
[표 2] ‘-고도’의 의미 기능의 통시적 발달

	의미론적 대조	화용론적 대조 (사실적 양보)	조건적 양보
후 기 중 세			
현 대			

31) 언어 화석으로 설명해볼 여지가 있는 특징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모습은 중세 한국어의 ‘-나₂’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평행하게 ‘-나₂’도 조건적 양보에서 사실적 양보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해볼 만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전기중세 한국어의 ‘-나₂’는 조건적 양보에서 사실적 양보로 의미 변화를 겪는 중에 있었으며, 아직 의미론적 대조까지 포괄하지는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가 점차 대조의 의미 기능도 획득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조건적 양보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₂’는 기원적으로 조건성을 떨 수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의미 변화 혹은 분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설명 방식을 이용하면 대조로 기술되어온 표현이 어떻게 조건적 양보로도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해결될 수 있다.



<그림 3> ‘-나₂’의 발달 방향

4.2. 이접 표현과의 관련성

그렇다면 어떤 표현에서 ‘-나₂’가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 가설로 동음이의 표현인 이접의 ‘-나₁’와의 관련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나₁’은 대안 조건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조건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건적 양보로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은 사실적 양보, 의미론적 대조 표현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범언어적으로 관찰되기도 한다. 단적으로 영어의 ‘however’는 본래 ‘어떻게든’ 정도의 의미를 보여 조건적 양보 표지로 나타났던 것이나, 현대에는 단순 대조 표지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앞서 살핀 석독구결의 예도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다.

- (21) ㄱ. 若_ㄱ 美_ㄴ 味_ㄷ 得_ㄹ 方_ㅅ(A) 專_ㅈ 自_ㅊ 受_ㅌ 不_ㅍ 要_ㅊ 衆生_ㅊ 與_ㅊ 不_ㅍ 然_ㅊ 後_ㅊ 方_ㅊ 食_ㅊ (若得美味 不專自受 要與衆生 然後方食) [만약 맛있는 음식을 얻어도 오로지 스스로 받지 않고서 필히 중생에게 주고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후에야 비로소 먹으며] <화소 09:09-12>
- ㄴ. 又 彼_ㄴ {於} 晝夜_ㄴ 若_ㄴ 行_ㅅ(A1) 若_ㄴ 住_ㅅ(A2) 衣服_ㅅ 飲食_ㅅ 命緣_ㅅ 習_ㅅ 近_ㅅ 如_ㅅ (又 彼如於晝夜 若行若住 習近衣服飲食命緣) [또 그는 밤낮으로 다니거나 머무르거나 간에, 의복이니 음식이니 명연이니 하는 것들 가까이 익히는 것과 같이] <유가 27:21-22>

(21)의 두 예문은 모두 조건적 양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원문에 ‘若’이 발견된다. 앞서 조건적 양보는 다수의 선행절에 대해 후행절이 비관여적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21ㄱ)의 경우도 표면에는 ‘맛있는 음식을 얻는 경우’만 드러났으나, ‘덜 맛있는 음

식을 얻는 경우’에도 후행절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를 명세하면 ‘맛있는 음식을 얻어도(/거나), 덜 맛있는 음식을 얻어도(/거나), 혼자 먹지 않고 나누어 먹는다.’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대안 조건적 양보로 (21ㄴ)의 예문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³²⁾ 이외에 (22)와 같은 자유 선택사 양보도 형식과 의미상 ‘-나₁’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관련지어 생각해볼 만하다.

- (22) ㄱ. 무슨 일을 맡기나 철수는 항상 훌륭하게 해낸다.
 ㄴ. 아므레나 救訖야 내오라(百方作計 救取阿孃) <월석 23:87b>

이는 아직 가설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 다른 차자표기 자료 및 근대 시기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나₂’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석독구결의 ‘-ㄴ₂’의 경우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로 해석될 수 있었다. 후기중세의 ‘-나₂’는 주로 사실적 양보(화용론적 대조)로 해석되며, 조건적 양보와 의미론적 대조로 해석되는 예도 일부 발견할 수 있었다. 현대의 ‘-나₂’는 의미론적 대조와 사실적 양보로만 사용된다.

범언어적인 발달의 경로를 참조한다면, 기원적으로 ‘-나₂’는 대조 표현이 아니라 조건성을 띠 수 있는 어떤 요소에서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세 한국어 시기에 ‘-나₂’는 조건적 양보에서 사실적 양보로 의미 기능이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점차 대조 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다.

<참고문헌>

- 김지오(2019), 고대국어 연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결연구』 43, 구결학회, 55~87.
 남풍현(1999), 『국어사를 위한 구결 연구』, 태학사.
 류병률(2013), 한국어 조사 ‘-이나’의 의미와 쓰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마원걸(2020), 부사 유(猶)의 새김에 대하여: 오히려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44, 구결학회, 213~257.
 박용찬(1996), ‘마른’, ‘건마른’, ‘컨마른’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1, 서울대학교출판부, 161~190.
 박용찬(2006), 15세기 국어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재연(2014),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확장에서의 환유와 은유, 『국어학』 70, 국어학회, 117~156.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박진호(2003), 중세국어 부사 파생 접미사 ‘-더/려/다/라’에 대하여, 『형태론』 5-1, 23~30.
 박진호(2012),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의미 기술, 『국어학』 63, 국어학회, 459~520.

32) 특히 (10)에서 확인한 석독구결의 ‘-ㅂ(ㅅ)ㅂ’는 모두 조건적 양보로 해석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 73, 국어학회, 375~435.
- 박진희(2011), 국어 절 접속의 의미 관계 유형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정섭(1991), 국어 양보문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지연(2004), 대립과 양보 접속어미의 범주화, 『어문학』 84, 어문학회, 75~98.
-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건식(2017), 字吐釋讀口訣에 나타난 ‘조건’과 ‘양보’의 부사와 보조사에 대하여, 『구결연구』 39, 구결학회, 129~168.
- 이금영(2020), 근대 국어 ‘-도’ 통합형 양보 관계 연결어미 연구, 『어문연구』 105, 어문학연구회, 5~33.
- 이기문(1972/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상훈(2011), 중세국어 양보부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훈(2019), 중세어 ‘아모’에서 기원한 어형 연구, 『구결연구』 42, 구결학회, 187~209.
- 이순옥(2017), 한국어 양보의 표현 방책과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1996),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국어학총서 31』, 태학사.
- 이 용(2000), 연결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영(2007), 連結語尾 “-지만”의 形成 過程에 대한 再考察, 『대동문화연구』 57,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319~362.
- 이현희(1985), ‘ㄸ다’ 語詞의 성격에 대하여: 누러ㄸ다류와 엇더ㄸ다류를 중심으로, 『한신 논문집』 2, 221~245.
- 임동훈(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국어학회, 88~130.
- 장요한(2010), 『15세기 국어 접속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학총서 67』, 태학사.
- 장윤희(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47~80.
- 최재희(1989), 국어 접속문의 구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 용(1975), 『우리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zar, M. (1997), Concession Relations as Argumentation, *Text* 17.3, 301-316.
- Comrie, B. (1986), Conditionals: A Typology, *On Condition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77-99.
- Dixon, R. M. W. & A. Y. Aikhenvald (2009), *The Semantics of Clause Linking: A Cross-linguistic Typ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spelmath, M. (1993), *A Grammar of Lezgian*, Walter de Gruyter.
- Haspelmath, M. & E. König (1998), Concessive Conditionals in the Languages of Europe, *Adverbial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s of Europe*, Mouton de Gruyter, 563-640.
- Karttunen, L. & S. Peters (1979), Conventional Implicature, *Syntax and Semantics* vol. 11: *Presupposi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König, E. (1985). Where do Concessives Come from? On the Development of Concessive Connectives, *Historical Semantics: Historical Word-Formation*, Walter de Gruyter.
- König, E. (1986). Conditionals, Concessive Conditionals and Concessives: Areas of contrast, *On condition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29–246.
- König, E. (1988). Concessive Connectives and Concessive Sentences: Cross-linguistic Regularities and Pragmatic Principles,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Oxford: Blackwell, 145–166.
- König, E. (1991a), Concessive Relations as the Dual of Causal Relations, *Semantic Universals and Universal Semantics*, Mouton de Gruyter, 190–209.
- König, E. (1991b). *The Meaning of Focus Particles: A Comparative Perspective*, Routledge.
- König, E. & P. Siemund. (2000), Causal and Concessive Clauses: Formal and Semantic Relations, *Cause-Condition-Concession-Contrast. Cognitive and Discourse Perspectives*, Mouton de Gruyter, 341–360.
- König, E. (2006), Concessive Clauses,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Second edition)*, Elsevier. 820–824.
- Lakoff, R. (1971), Ifs, Ands and Buts about Conjunction,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New York: Hort, Rinehart and Winston, 114–149.
- Mizuno, Y. (2007), Although Clauses in English Discourse: A Functional Analysis, Ph, D. Thesis, Hokkaido University.
- Rosch, E. (1975),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 Rudolph, E. (1996), *Contrast Adversative and Concessive Relation and their expression in English, German, Spanish Portuguese on Sentences and Text Level*, Walter de Gruyter.
- Sweetser, E. (1991),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Xrakovskij, V. (2012), Concessive Constructions: Meaning, Syntax, and Typology, *Typology of Concessive Constructions*, LINCOM, 3–79.

<기획 주제 발표>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이두사전 편찬의 규모와 방법

이건식(단국대)

1. 서언

이 글은 2020년 11월 3일에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서 편찬한 『이두사전』은 기존의 이두사전보다 약 2.5배 이상의 규모로 확장되었고, 이두토에 대한 형태소 분석 정보와 현대어 풀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기록 수단인 이두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궁극적인 이두사전을 편찬하는 디딤돌을 만들고, 또 이두의 문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두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서 편찬한 『이두사전』의 편찬 규모와 편찬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표제 항목의 수, 세기별 채록 용례 수, 용례를 채록한 문헌의 종류와 용례 수’ 등의 측면에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이두사전』의 편찬 규모를 제시하여 이두라는 기록 수단의 전모를 남김없이 보여 줄 수 있는 최상의 이두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즉, 최상의 이두사전이 새로이 발굴할 이두토의 표제 항목은 무엇이며 이두토를 채록할 문헌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해명되어 궁극의 이두사전 편찬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이두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남김없이 잘 이해해야만 궁극의 이두사전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실은 비용과 연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여 이두 연구자들이 희망하는 이두사전의 모습은 그렇게 빨리 드러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이두사전』의 편찬 과정에서도 비용의 문제가 이두사전 편찬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최근 국가기관에서 이두문헌 자료를 대량으로 입력한 덕분에 전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두사전 편찬 시의 비용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이두사전 편찬 시에 적용한 전산 기술의 기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마지막으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이두사전』에서 이두토의 의미와 구성 형태소를 이해한 결과를 간명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두토의 의미와 구성 형태소에 대한 이러한 설명으로 이두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달성되고, 이두 이해에 대한 새로운 식견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2. 기존 이두 목록 및 사전의 규모와 특징

2.1. 기존 이두 목록의 규모와 특징

기존 이두 목록 자료의 규모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이두 목록 자료의 규모와 특징

종류	연대	표제	독음	현대어	이두학	용례 수	채록자료	채록자료
----	----	----	----	-----	-----	------	------	------

		항목		풀이	습서		종수	시대
朝鮮語辭典	1925							
吏讀集成	1937	1,678	○	○		없음	없음	불명
文世榮 朝鮮語辭典 이두색인	1938	685	○	○		없음	없음	불명
朝鮮古語辭典 이두	1949	1,623	○	○		없음	없음	불명
李朝語辭典 부록 이두	1964/1979	2,365	○	○	○	없음	없음	불명
우리말큰사전 옛말과 이두	1992	미과악	○	○		미과악	미과악	미과악
이두학습서목록	2003	1,898	○			없음	없음	불명

(1)에 제시한 것들은 사전이 아니고 吏讀 ‘목록’이다. 이두의 독음과 풀이는 제시했으나 용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1925년판 『朝鮮語辭典』, 朝鮮總督府 中樞院이 1937년에 편찬한 『吏讀集成』, 1938년 文世榮의 『朝鮮語辭典』 이두 항목, 鄭熙俊이 1949년에 편찬한 『朝鮮古語辭典』의 이두, 1964년에 편찬된 『이조어사전』의 부록으로 실린 이두, 고정의(2003)의 이두 목록 등은 모두 용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에 편찬된 『우리말큰사전』 ‘옛말과 이두’는 부분적으로 용례를 제시했으나 넓게 파악해서 ‘사전’은 아니고 ‘목록집’으로 파악된다.

文世榮의 『朝鮮語辭典』은 이두 항목을 고유어, 한자어 등과 함께 사전의 표제 항목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朝鮮古語辭典』의 이두 목록은 『朝鮮古語辭典』 제2부 이두 ‘일러두기’에서 밝혔듯이 『吏讀集成』의 일본어 풀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수록 항목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못하였다.

『이조어사전』의 부록인 이두 목록은 『吏讀集成』과는 달리 표제 항목으로 제시한 이두에 대해 조선 시대 이두 학습서의 전거를 제시하고 있다. 활용된 조선 시대 이두 학습서는 ‘羅麗吏讀(이의봉, 정조 13년), 語錄解(1657), 吏讀(작자 연대 미상), 典律通補, 吏讀方言(五洲衍文長箋散稿), 語錄辯證說, 吏讀便覽, 儒胥必知, 朝鮮語辭典(1925)’ 등이다. 『吏讀集成』도 추가하였다.

1991년에 편찬된 『우리말큰사전』 ‘옛말과 이두’에서는 이두 항목을 이중적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알모질이숯거늘’ 정도로 읽히는 知不得是白去乙에 대해서 ‘알모질이숯거늘’을 표제 항목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知不得是白去乙의 한글 독음인 ‘지부득시백거을’도 표제 항목으로 함께 제시했다. ‘지부득시백거을’의 표제 항목이 知不得是白去乙의 독법을 알지 못하는 독자를 위한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알모질이숯거늘’과 ‘지부득시백거을’을 하나의 그릇에 함께 섞어 놓지 말고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옛말과 이두’에 수록된 이두 항목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어서 아직 진행하지 못하였다. 목산의 계산 결과에 의하면 약 6,400개의 표제 항목 실려 있을 것인데 이를 반으로 나누면 3,200개여서 ‘옛말과 이두’에 수록된 이두 항목은 3,20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정의(2003)의 이두 목록집은 ‘物譜(我東吏讀), 語錄辯證說(吏讀方言), 儒胥必知, 吏讀<吏讀>(李朝語辭典에서 인용), 吏讀集成, 吏讀便覽, 吏文大師, 吏文襟例, 才物譜, 典律通補, 朝鮮語辭典, 羅麗吏讀, 吏文, 註解語錄總覽(吏文語錄)’ 등에 수록된 이두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었다. 『이조어사전』의 부록인 이두 목록과 비교해 보면 ‘物譜(我東吏讀), 吏文大師, 吏文襟

例, 才物譜’ 등의 자료를 추가하여 이두 목록 자료를 정리한 것이었다.

『이조어사전』의 부록인 이두 목록과 고정의(2003)의 이두 목록집은 조선 시대 이두학 습서의 출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발전된 형태의 이두목록집으로 생각된다.

기존 이두 목록 자료집은 대체로 우리말 구를 중심으로 ‘표제항목’을 선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2) 가. 是沙餘良 이사남아 h 是沙/餘良 e 아스나마 『語錄』, 이사남아 『吏襍, 吏便, 朝鮮, 集成』, 이사아마 『儒必』, 이산나마 『羅麗, 吏文, 吏師』, 이사나마 『物譜』, 이스남아 『儒必, 典律』, 이스아마 『經襍』 f -일뿐더러. -일뿐 아니라. g 是/계사+(아/연결어마)+沙/연결어미+餘/동사+良/연결어미 i /自矣 家翁/段 文宗 上典 唯一 外孫/以 魯山君 切族/是沙餘良 自/段置 女/矣 身爲 暫無違心 常時款護/爲臥乎等用良 『1518年 魯山君傳係文記』

나. 是沙 이사 e 이사 『集成』, 이스 『儒必』, 이스 『經襍』 f -이야. -이랴. -이어야. g 是/계사+(아/연결어마)+沙/연결어미 i 坐罪 賊亦 加至四十貫/是沙 滿數/是去等 /必于 三十九貫 九百九十文數/良中 准至/爲良置 『大明律 1 加減罪例』.

다. 遲晚爲只爲使內在乙良 다만히기삼브리안견을안 h 遲晚/爲只爲/使內在乙良 e 지만하기 암바리견을안 『集成』 f 지만(遲晚)하도록 시킨 경우에는. 자백하도록 시키거들랑 g 遲晚/명사+爲/동사+只/명사과생접사+爲/동사+使/동사+內/보조어간+在/조동사+乙良/연결어미 i 因此軍事遲晚爲只爲使內在乙良 故犯失錯 勿論 並斬齊 『大明律 3 吏律 公式 增減官文書』

(2가)는 ‘『語錄』, 『吏襍, 吏便, 朝鮮, 集成』, 『儒必』, 『羅麗, 吏文, 吏師』, 『物譜』, 『儒必, 典律』, 『經襍』’ 등에서 是沙餘良를 표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2나)는 ‘『集成』, 『儒必』, 『經襍』’ 등에서 是沙를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 시대 이두학습서를 포함하여 이두 목록에서는 (2가)에 나오는 是沙餘良의 용례를 근거로 (2나)의 是沙처럼 是沙로만 나오는 용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是沙를 표제 항목으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가 (2다)의 遲晚爲只爲使內在乙良의 표제 항목 설정이다. ‘遲晚爲只爲, 使內在乙良’ 등을 각각 표제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고 遲晚爲只爲使內在乙良 전체를 하나의 표제항으로 설정하고 있다.

2.2. 기존 이두 사전의 규모와 특징

목록 수준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사전’의 면모를 갖춘 것은 장지영·장세경이 1991년에 편찬한 『이두사전』이다. 뒤를 이어 1995년에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의 『한국한자어사전』에 이두 항목 실렸으며, 2001년에 장지영·장세경의 『이두자료읽기사전』, 2003년에 배대온의 『歷代이두사전』, 2006년에 鄭光·北郷照夫의 『朝鮮吏讀辭典』 등이 출간되었다. 기존 이두사전의 규모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3) 기존 이두사전의 규모와 특징

종류	연대	표제 항목	독음	현대어 풀이	이두학 습서	용례 수	채록자료 중수	채록자료 시대
이두사전(장지영·장세경)	1991	1,931	○	○	○	미파악	30	신라, 고려, 조선

한국한자어사전 이두	1995	1,462	○	○	○	4167	190	신라, 고려, 조선
이두자료읽기사전	2001	2,477	○	○		5179	280	신라, 고려, 조선
歷代이두사전	2003	1,263	○	○	○	미파악	105	신라, 고려, 조선
朝鮮吏讀辭典	2006	1,905	○	○	○	미파악	157	신라, 고려, 조선

(3)에 제시한 이두사전 중에서 『한국한자어사전』의 이두는 이두 목록 자료집에서처럼 우리말 구를 중심으로 표제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지영·장세경의 『이두사전』, 장지영·장세경의 『이두자료읽기사전』, 배대온의 『歷代이두사전』, 鄭光·北郷照夫의 『朝鮮吏讀辭典』 등에서는 이두토를 구성하는 형태소까지도 표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是沙餘良라는 이두토에서 是沙餘良를 표제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은 물론 ‘是沙, 餘良, 是, 沙, 餘, 良’ 등을 모두 표제 항목으로 설정하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장지영·장세경의 『이두사전』, 장지영·장세경의 『이두자료읽기사전』, 배대온의 『歷代이두사전』, 鄭光·北郷照夫의 『朝鮮吏讀辭典』 등에서 알려진 모든 이두토에 대하여 일관되게 형태소 분석하여 그 결과로 도출된 형태소를 표제 항목으로 설정한 것 같지는 않다.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표제 항목으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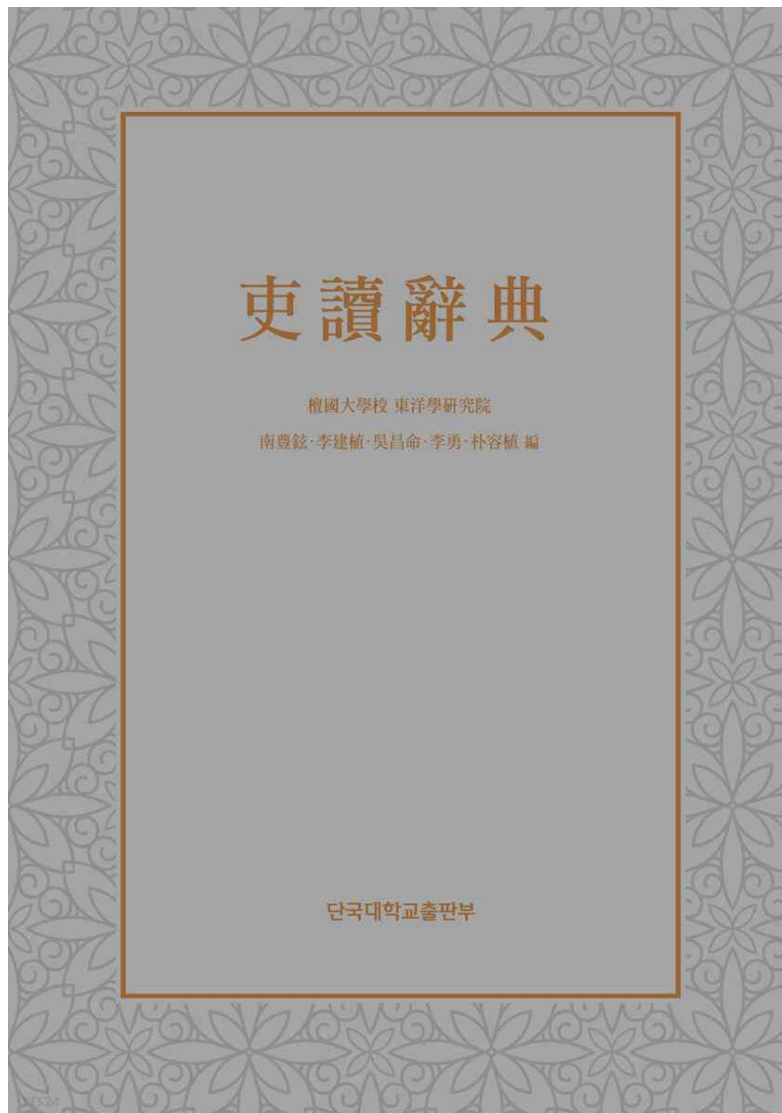
3.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이두사전의 규모, 구성, 편찬 과정

3.1.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이두사전의 규모

1) 이두사전의 규모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이두사전은 신국판 901쪽으로 간행되었다.

(4)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이두사전 표지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이두사전은 4,237개의 표제 항목에 11,913개의 용례로 구성되었다. 457종의 고도서와 975종의 고문서와 금석문에서 항목과 용례를 채록하였다. 4237개 표제 항목의 구성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5) 4,237개 표제 항목의 구성표

구분	이두사전 간행후 항목수	이두사전 간행 전 항목수 (2020년 6월 말)
용례의 빈도가 2 이상인 표제 항목 ¹⁾	항목수 파악 중	2,499
용례의 빈도가 1인 표제 항목	항목수 파악 중	1,663
용례가 없는 표제 항목	항목수 파악 중	225
합계	4,237	4,387

1) 앞에서 제시한 (6라)의 방법을 적용하여 용례의 빈도가 1인 표제 항목을 용례의 빈도가 2인 표제 항목의 수는 217개에 달했다.

(5)에서 용례가 없는 표제 항목은 기존의 이두 목록이나 사전에서 제시한 항목들이다. 기존의 이두사전에서 용례가 없는 표제 항목으로 제시한 것이 450여개에 이르렀다.(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함) 2차 편찬 작업의 결과 약 225개의 용례가 새로이 조사되었다. 50개 이상의 용례가 조사된 표제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50개 이상의 용례를 가진 표제 항목(2020년 6월말 기준)

표제항목	용례수
并以	121
良中	94
爲乎矣	84
乙良	80
爲去乎	76
等乙	72
乙仍于	71
并只	70
乙用良	63
亦中	59
向事	57
矣身	56
是如	53
向教是事	51
爲遣	50
爲旂	50

채록된 용례의 시대별 분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가. 왕조 별 용례 분포

왕조	간행 후 용례수	간행 전 용례수 2020년 6월말 기준
신라	항목 수 파악 중	130
고려	항목 수 파악 중	771
조선전기	항목 수 파악 중	5,750
조선후기	항목 수 파악 중	5,995
연대미상(조선후기)	항목 수 파악 중	182
합계	11,913	12,828

나. 세기 별 용례 분포

세기	간행 후 용례 수	간행 전 용례수 2020년 6월 말
5세기	항목 수 파악 중	4
6세기	항목 수 파악 중	13
7세기	항목 수 파악 중	2
8세기	항목 수 파악 중	91
9세기	항목 수 파악 중	19
10세기	항목 수 파악 중	27

11세기	항목 수 파악 중	62
12세기	항목 수 파악 중	87
13세기	항목 수 파악 중	270
14세기	항목 수 파악 중	1,727
15세기	항목 수 파악 중	1,123
16세기	항목 수 파악 중	3,237
17세기	항목 수 파악 중	3,512
18세기	항목 수 파악 중	1,338
19세기	항목 수 파악 중	1,078
20세기	항목 수 파악 중	56
연대미상	항목 수 파악 중	182
합계	11,913	12,828

30개 이상의 용례가 채록된 문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8) 30개 이상의 용례가 채록된 문헌

종류	문헌명	연대	간행후 용례수	간행전 용례수	용례의 출처
고도서	大明律	1395		1,067	
고도서	推案及鞫案	1601-1899		990	한중연
고도서	承政院日記	1625-1899		531	국편
고도서	瀋陽狀啓	1637		446	
고도서	壬辰狀草	1592		382	기록유산
고도서	各司謄錄	1640		374	국편
고문서	李浚兄弟決訟立案	1578		368	고자료관
고도서	農圃集	1592		220	번역원
고도서	養蠶經驗撮要	1415		170	
고도서	典客司日記	1640		170	국편
고문서	孫光晁決訟立案	1560		157	고자료관
고문서	尙書都官貼	1262		160	이승재
고도서	紹修書院謄錄	1546-1670		131	
고도서	大東野乘光海朝日記	1613		122	번역원
고도서	農書輯要	1517		122	
고문서	嘉靖卅三年二月初訣 訟立案	1554		97	고자료관
고문서	李志道訣訟立案	1586		96	고자료관
고도서	畢齋堂后日記	1482		77	국편
고문서	屏山書院不忘記	1629		66	고자료관
고문서	長城監務官貼文	1198		64	이승재
고도서	牛馬羊猪染疫病治療 方	1541/1578		63	
고도서	海行摠載	1763		63	번역원
고문서	李涵決訟立案	1583		61	고자료관
고문서	金孝盧司憲府繼後立 案	1483		60	고자료관
고도서	備邊司謄錄	1617		59	국편
고문서	李和開國功臣錄券	1392		59	고자료관

고도서	東學亂記錄	1894		58	국편
고문서	淨兜寺五層石塔造成 形止記	1031		54	남풍현
고문서	高麗末國寶戶籍文書	1390-91		52	고자료관
고문서	金孝盧安東府立案	1517		49	고자료관
고문서	權明利許與文記	1443		49	고자료관
고도서	各司受教	1555		47	국편
고문서	1600년대전반決訟立案	1600대		45	고자료관
고도서	科學事目	1551		44	
고문서	上院寺立案	1477		43	고자료관
고문서	鄭仁卿功臣錄券	1289		42	노명호
고도서	耽羅啓錄	1841-43		41	
고도서	征蠻錄	1592		40	기록유산
고문서	金務許與文記	1429		39	고자료관
고도서	左捕盜廳臚錄	1775-1884		39	
고문서	長城監務關文	1407		36	고자료관
고문서	白巖寺貼文至正丁酉 僧錄司貼文	1357		39	노명호
고도서	新昌令推斷日記	1509		35	기록유산
고문서	卜莊別給文記	1376		33	고자료관
고문서	松廣寺奴婢文書	1281		32	노명호
고문서	新羅華嚴經寫經造成 記	755		32	남풍현
고문서	和會文記	1527		30	고자료관

3.2.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이두사전의 구성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이두사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9) 이두사전의 구성 내용

- I. 간행사(동양학연구원장)
- II. 편찬사(연구책임자)
- III. 이두해설(남풍현)
- IV. 일러두기
- V. 이두사전 내용
 - [부록 1] 글자별 이두항목 찾아보기
 - [부록 2] 표제 이두 항목별 용례 빈도
 - [부록 3] 이두 학습서의 용례 없는 이두 목록
 - [부록 4] 용례 채록 자료 목록
 - [부록 5] 용례 채록 자료명 색인

‘이두해설’은 남풍현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것으로 ‘吏讀의 개념, 吏讀文의 발생, 吏讀文의 발달, 吏讀辭典의 언어’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일러두기는 이두사전을 이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10) 이두사전의 일러두기

일러두기

1. 사전의 구성

- ☞ 이 사전은 이두 해설, 사전 본문,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 ☞ 이두 해설은 이두의 주요 특징과 발달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 ☞ 사전 본문은 이두를 표제항으로 제시하고 표제항 각각에 대하여 讀音, 전래 이두 학습서의 독음, 현대어 풀이, 이두를 구성한 형태소 분석, 용례 등을 제시하였다.
- ☞ 부록은 표제항으로 제시한 이두를 다각도에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정보와 이두 용례 채록 자료 목록으로 구성되었다.

‘이두사전 내용’은 이두 토를 표제 항목으로 제시하고 한자의 음순대로 배열하여 제시하였다.

[부록 1] ‘글자별 이두항목 찾아보기’는 이두토를 구성하는 형태소를 표제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은 단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1) [부록 1] 글자별 이두항목 찾아보기

734 · [부록 1]

[부록 1] 글자별 이두 항목 찾아보기

【佳】 佳叱

【加】 加植內, 加于, 加于過甚, 加于的實, 加于支當不得, 加于知不得爲白齊, 加入, 上下是白加尼, 闔失是白加尼, 先加, 是加可, 是加尼, 是加喻, 是加隱喻, 是加乎, 是多加, 是白加可, 是白加尼, 是白加喻, 是白加隱喻, 是白加乎, 是白有加尼, 是白乎加尼, 是如白加尼, 是如是加尼, 是如是白加尼, 是如爲加尼, 是如爲白加尼, 是丕加尼, 是丕加喻, 是乎加尼, 是乎加喻, 是乎加隱喻, 是乎乙加尼, 是乎乙加喻, 是乎乙加隱喻, 爲加可, 爲加尼, 爲加乎, 爲多加, 爲白加尼, 爲白如加, 爲白有加尼, 爲如加, 爲有加尼

【可】 拷音爲白有如可, 教是白有如可, 教是乎可, 教

爲白多可, 爲白良音可爲白乎矣, 爲白是如可, 爲白如可, 爲白臥如可, 爲白有如可, 爲白乎可, 爲白乎乙可, 爲使內如可, 爲是如可, 爲如可, 爲有如可, 爲有叱如可, 爲音可, 爲音可事乙, 爲音可爲白在果, 爲音可爲在, 爲行如可, 爲乎可, 爲乎可望良白齊, 爲乎可向入, 爲乎去望良白如可, 爲乎如可, 爲乎乙可, 知不得是如爲有如可, 知不得爲有如可, 進使內如可, 次知是如可, 簡可向入

【家】 媿家

【各】 各乎

【脚】 根脚

【干】 仕官出干, 處干

【揀】 分揀, 斟酌分揀, 惠伊分揀

[부록 2] 표제 이두 항목별 용례 빈도는 다음과 같다. 그 일부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12) [부록 2] 표제 이두 항목별 용례 빈도

[부록 2] 표제 이두 항목별 용례 빈도

【加植】 加植內(1)	【侑音】 侑音(11), 侑音段(2), 侑音良中(3), 侑音良中置(1), 侑音是沙余良(1), 侑音是如(2), 侑音是臥乎在亦(1), 侑音是乎等用良(4), 侑音是乎羅(1), 侑音是乎矣(1), 侑音樣以(1), 侑音爲白良置(1), 侑音爲白有如可(1), 侑音爲白乎矣(1), 侑音爲臥乎所(2), 侑音爲有乎矣(1), 侑音爲乎乙喻在如中(1), 侑音乙(2), 侑音乙良(1), 侑音乙用良(1), 侑音以(2)
【加于】 加于(16), 加于過甚(1), 加于的實(1), 加于知不得爲白齊(1)	【庫以】 庫以(2)
【加入】 加入(1)	【古之】 古之(1)
【佳叱】 佳叱(2)	【故只】 故只(6)
【艱苦】 艱苦亦(1)	
【簡略】 簡略亦(1)	
【監考】 監考(3)	
【甲折】 甲折(4)	
【强亦】 强亦(6)	
【更良】 更良(30)	

[부록 3] 이두 학습서의 용례 없는 이두 목록은 다음과 같다.

(13) [부록 3] 이두 학습서의 용례 없는 이두 목록

[부록 3] 이두 학습서의 용례 없는 이두 목록

이두	이두 학습서	관련 이두
加于支當不得	더옥디당모질 『吏便』, 더옥지당모질 『羅麗, 吏文』, 더옥지당모질 『集成』	加于
各乎	씩로 『吏便』	
去沙	거사 『集成』	是去沙, 爲去沙 등
去有等以	거이신들로 『集成』	敎是去有等以, 無去有等以, 是去有等以, 爲去有等以 등
去有乙	거이시늘 『集成』	無去有乙, 是去有乙 등
去乙	거늘[을] 『集成』	是去乙, 爲去乙 등
結尾	결미 『羅麗, 集成』	
繼亦	니여 『吏便』	
諱乙	곳을 『集成』	

[부록 3] ‘가나다순 용례 채록 문헌 목록’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4) 가. 고문서와 금석문

명칭	연대	채록용례수	출처
家舍賣買明文	1498	4	고자료관
家舍賣買明文	1498	3	고자료관
嘉靖35年分財記	1556	3	고자료관
嘉靖卅三年二月初訟立案	1554	108	고자료관
各院通文抄冊	1850~1862	1	고자료관
各人等所志	1623	4	고자료관
葛項寺石塔造成記	798	7	남풍현

나. 고도서

명칭	연대	채록용례수	출처
嘉禮都監儀軌	1718	3	장서각
嘉禮謄錄	1658	1	장서각
各陵謄錄	1716	6	규장각
各陵修改謄錄	1670	27	규장각
各陵修理謄錄	1648	12	규장각

[부록 4] 용례 채록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15) 용례 채록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고문서 금석문

850 · [부록 4]

[부록 4] 용례 채록 자료 목록

1. 고문서와 금석문

명칭	연대	채록 용례 수	출처
廣開土大王碑	414	1	남풍현
瑞鳳塚銀合杆銘	451	1	남풍현
中原高句麗碑	495	2	남풍현
迎日冷水里新羅碑	503	1	남풍현
蔚州川前里書石銘追銘	539	1	남풍현
丹陽新羅赤城碑	540	3	남풍현
壬申誓記石銘	552	1	남풍현
戊戌塢作碑銘	578	3	남풍현
南山新城碑銘	591	2	남풍현

나. 고도서

2. 고도서			
명칭	예문 자료의 연대	채록 용례 수	출처
高麗史		4	책자
高麗史節要		1	번역원
大明律直解	1396	1067	번역원
朝鮮太宗實錄		4	국면
養齋經驗撮要	1415	170	책자
朝鮮世宗實錄		6	국면
慶尙道地理志	1425	6	책자
朝鮮世祖實錄		3	국면
山堂集	1458~1491	6	번역원
朝鮮成宗實錄		6	국면
畢齋堂后日記	1482	77	국면

[부록 5] 용례 채록 자료명 색인은 다음과 같다.

(16) [부록 5] 용례 채록 자료명 색인은 다음과 같다.

용례 채록 자료명 색인 · 885	
[부록 5] 용례 채록 자료명 색인	
1. 고문서와 금석문	【庚申】 庚申年奴玉山所志(미상)
【家舍】 家舍賣買明文(1498)	【庚寅】 庚寅年(미상)
【嘉靖】 嘉靖35年分財記(1556), 嘉靖卅三年二月初缺立案(1554)	【庚子】 庚子年李(崔)義立告目(미상)
【各司】 各司受教(1555)	【慶州】 慶州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719), 慶州居忠義衛孫宗賀(1606), 慶州府立案(1593), 慶州司首戶長行案其二(1382), 慶州司首戶長行案其一(1361), 慶州司首戶長行案序文(1361), 慶州倭寇擊退事實記(1380)
【各院】 各院通文抄冊(1862)	
【各人】 各人等所志(1623)	
【葛項】 葛項寺石塔造成記(798)	

3.3.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이두사전의 편찬 과정

1) 1차 편찬 과정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이두사전 1차 편찬 작업의 당초 계획은 『한국한자어사전』에 수록된 이두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라와 고려시대의 이두 관련 문헌에 나오는 이두를 채록하고, 鄭光·北鄉照夫가 수집해 놓은 조선시대 이두 자료에서 이두를 채록하는 편찬 작업이었다. 『한국한자어사전』에 수록된 이두자료는 표제 항목이 1462개이며 관련 용례가 4167개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남풍현 선생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황선엽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모셨고, 연구진으로 이건식, 오창명, 이용, 박용식 등이 참여하였다 이건식이 연구 책임을 맡아 표제 항목을 선정하고 용례를 수집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용은 신라와 고려의 이두 항목을 해설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오창명과 박용식은 조선시대 이두 항목을 해설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1차 편찬 작업은 2016년 12월 1일에 시작하여 2017년 11월 30일에 마무리 되었다. 1차 편찬 작업의 결과로 표제 항목이 2427개가 되었으며 관련 용례가 6867개가 되었다. 1차 편찬 작업으로 965개의 표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2700개의 관련 용례가 추가되었다.

2) 2차 편찬 작업의 과정

이두사전에 대한 1차 편찬 작업의 결과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하나의 측면은 이두토를 구성하는 형태소를 분해하여 표제 항목으로 설정하는 기준이 이두 자료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는가의 문제였다. 다른 하나의 측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이두 자료에 출현한 이두토의 대부분을 1차 편찬 작업 결과가 반영하였는가의 문제였다.

이두토를 구성하는 형태소를 분해하여 표제 항목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그 결과는 매우 유용할 것이지만 편찬의 대상이 된 이두 자료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2차 편찬 작업에서는 이두토를 형태소 분석하여 표제 항목으로 설정하는 기준을 버리고 이두 자료에 나타난 그대로를 표제항으로 설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두토가 연속으로 출현할 경우에 이들을 묶어 한 단위로 표제 항목을 설정하는 기준을 정하였다.

鄭光·北鄉照夫가 수집해 놓은 조선시대 이두 자료가 매우 빈약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두 자료를 대량으로 입력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두 용례를 채록하기로 하였다. 2차 편찬 작업에서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자료센터데이터베이스와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규장각원문정보시스템,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 문화재청의 국가기록유산데이터베이스’ 등이다.

4.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이두사전의 편찬 방법

4.1. 이두 채록 자료의 범위

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이두 자료 중에서 종이 형태이거나 디지털화되어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이두를 채록하였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 이두로 설정한 것은 모두 수용하였다.

자료 파손으로 문맥이 완전하게 보존되지 않은 이두 자료는 채록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려 초기의 중요한 이두 자료인 釋迦塔重修記와 佛國寺无垢光淨塔重修記 등을 이두 채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향찰 표기는 우리말에 대한 완전한 표기체계이므로 향찰 자료는 이두 채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2. 항목과 용례의 발굴 방법

이두 자료를 읽어 가면서 용례를 채록하는 작업이 이두사전 편찬의 정확성을 기하는 방법 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 절에서 소개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대규모의 이두 자료가 입력되어 서비스 되고 있어서 이러한 방대한 분량의 이두 자료를 대상으로 어느 한 개인이나 조그만 조직이 다루기에는 너무 벅찬 것을 넘어서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두 용례를 효율적으로 채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구사하였다.

(17) 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두 자료는 그 전체를 확보하여 이두 용례를 채록하는 최초의 데이터로 삼았다.

나. 만들어진 최초의 이두 자료 데이터에서 이두 표제 항목을 추출하고 추출된 이두 표제 항목으로 데이터를 검색하여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다시 이두 용례 채록 데이터를 확장하고 확장된 이두 자료를 통하여 표제 항목과 용례를 추출하였다.

다. 爲白이나 是白이 포함된 자료는 이두 자료일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爲白이나 是白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이두 자료 데이터를 확대하는 한편에 이두의 표제 항목과 용례를 추출하였다.

라. 용례의 빈도가 1인 경우는 오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추출된 표제 항목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용례의 빈도가 2가 되도록 하였다.

2차 편찬 작업은 2018년 1월에 시작하여 2020년 5월 30일에 마무리하였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에 이르기까지 14교의 교정을 보아서 2021년 3월에 간행하게 되었다.(발행일은 2020년 11월 3일)

4.2. 이두항목 설명 내용 예시

이두 표제 항목을 설명한 내용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18) 이두 표제 항목 설명 내용 예시

40 · 加植內

加植內 *더심안

㉠ (틀림없이) 더하여 심은. ㉡ 加/동사+植/동사+內/조동사+(ㄴ/동명사어미)

㉢ 合栢子木 百廿以 三年間 中 加植內 卅四 古有 八十六 『695年 新羅村落文書』

加于 더욱; 더우

㉠ 더욱 『儒必, 典律』, 더욱이 『物譜』, 더우여 『吏方』, 더욱 『語錄, 吏祿, 吏便, 朝鮮, 集成, 經祿』, 더욱이 『吏師』 ㉡ 더하여. 더욱. ㉢ 加/동사+于/부사파생접사+(ㄱ/보조사)

㉣ 太平六年 歲次 丙寅 十月日 米 伍拾肆 石乙 佳受 令是遣在如中 加于 物業乙 計會爲 太平七年 歲次 丁卯 十二月日 隨願僧俗等 一千余人乙 戶長 柳瓊 左徒 副戶長 承律 右徒 例以 分析爲弥 『1031年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變黃爲去等 加于 減食爲齊 『養蠶經驗撮要 26b』, 婢終德 奴終同等 乙 都日狀良中 并錄 教所 加于 閱望爲白乎等 用良 呈所志 白活爲白乎亦中 『1461年 河源所志』, 無告之民亦 加于 閱望爲白良尔 『1483年 金孝盧司憲府繼後立案』, 非復昔日顏貌 於國於私 損害俱極 加于 閱慮爲白良尔 臣矣 職乙良 斯連命遞 以安朝廷 俾延少須與微命爲白只爲 『東臯遺稿 3 領相時呈辭』, 又於本月二十一日 地震解怪祭獻官以 使內 如可 寒證得發 加于 差息無期爲白去等 在官調理 不得叱分 不喻 曠官廢事 絃如 惶悶無地爲白昆 『退溪先生文集 8 上監司狀三』, 五月 望後是去等 天氣始熱 土氣 加于 通和爲齊 『農書輯要 4』, 凡矣 祭祀良中置 唯一單孫以 盡心敬行爲臥乎所 加于 可憐爲乎等 用良 『1531年 河源妾良女甘莊別給文記 慶北別給文記 121』, 本官呈 所志爲行臥乎所 加于 閱望爲白良尔 『1545年 於乙同議送』, 其等徒等亦 他無開說之言 皆以虛事 傍音爲臥乎所 加于 奸謀莫甚爲白乎於 『1560年 孫光現決訟立案』, 入役 不冬是如 還爲隱諱爲白臥乎所 其奸謀詭狀 加于 彰著爲白齊 『1578年 李浚兄弟決訟立案』, 加于 就訟 不得是如 爲白如可 『1583年 李涵決訟立案』, 觀其賊勢 顯有過冬之意 加于 痛惋悶極爲白去乎矣 『壬辰狀草 1593年 8月 1日』, 嚙味情狀 加

于 判然爲白良尔 相考分揀施行 教事 『推案及鞫案 1:35』, 元告 朴元吉 父命石等 執捉之際 想必與其時執徐益明 以 爭訟 加于 判然是去等 『1629年 屏山書院不忘記』, 前頭之事 加于 可慮 罔知所爲爲白臥乎 事 『瀋陽狀啓 1642年 10月 17日』

加于過甚 더욱과심; 더우과심

㉠ 더욱 과심 『羅麗, 集成』, 더욱 과심 『吏文』 ㉡ 더욱 과심한. ㉢ 加/동사+于/부사파생접사+(ㄱ/보조사)+過甚/어근

㉣ 二十年後 今始就捕 情狀 加于 過甚 考諸律文 則犯罪時幼少 事發時長大 依幼少論亦 爲白在果 『承政院日記 1642年 3月 8日』

加于的實 더욱덕실; 더우덕실

㉠ 더욱덕실 『集成』 ㉡ 더욱 적실(하다). 더욱 확실(하다). ㉢ 加/동사+于/부사파생접사+(ㄱ/보조사)+的實/어근

㉣ 凶物理置之後 設祭祈祝之迹 昭不可掩 其主謀首惡之狀 加于 的實 並只 賜死爲只爲 『凝川日錄 六 1632年 11月 10日』

加于支當不得 더욱디당몰실

㉠ 더욱디당모질 『吏便』, 더욱지당모질 『羅麗, 吏文』, 더욱지당못질 『集成』 ㉡ 더욱 지탕하지 못하다. 더욱 감당하지 못하다. ㉢ 加/동사+于/부사파생접사+支當/어근+不得/부정소 ㉣ 加于 참조.

加于知不得爲白齊 더욱알몰실히몹저

㉠ 더욱 알지 못하옵니다. ㉡ 加/동사+于/부사파생접사+知/동사+不得/부정소+爲/동사+白/보조어간+齊/종결어미 ㉢ 大君推戴事段 加于 知不得爲白齊 『大東野乘 光海朝日記 1 韓應寅招』

加入 미상

㉠ 더하여 넣음. ㉡ 加/동사+入/동사+(ㄴ/동명사어미)

4.2. 이두 표제 항목 설명 구조

이두 표제 항목을 설명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4) 이두 표제 항목 설명 구조

- 가. 표제 항목
- 나. 독음 정보
- 다. 이두학습서 관련 정보
- 라. 현대어 풀이

마. 이두토의 구성소 분석 기술

바. 용례

4.3. 표제 항목의 구성

1) 표제 항목의 설정 기준

전래 이두 학습서와 『韓國漢字語辭』에서 표제 항목으로 설정한 동사류, 부사류, 명사류 등의 이두는 모두 수용하였다.

전래 이두 학습서에서는 단일 어절의 이두를 표제항으로 제시하였음은 물론, 是如爲白遣와 같이 是如와 爲白遣가 결합된 이두도 표제항으로 제시하였다. 이 사전에서도 이를 따라 단일 어절은 물론 복수 어절의 이두를 표제항으로 선정하였다.

朝鮮總督府中樞院의 『吏讀集成』에서는 是去沙와 爲去沙 등의 부분을 구성한 去沙도 표제항으로 설정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去沙와 같은 부분이 용례에 출현할 경우에는 표제항으로 설정하였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표제항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吏讀集成』에서 표제항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표제항으로 설정하였다.

종래의 이두 사전에서는 上下爲遣이나 上下是去乃와 같이 한자어 上下와 ‘-하-’류와 ‘-이-’류의 이두가 결합된 것을 부분적으로 표제항으로 선정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이두를 모두 채록하여 표제항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종래의 이두사전에서 所志是齊와 같은 경우는 표제항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는 所志 항목에 포함해 제시하였다.

이두 채록 시에 답습에 의한 오류도 발견하였다. 爲乎白矣와 爲乎臥事段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들은 爲乎白矣와 爲臥乎事段의 오기로 판단된다. 이두를 연구할 때에 이러한 오류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 오류 표기인 爲乎白矣도 표제항으로 제시하고 오류에 대해 설명하였다. 臥乎가 乎臥로 잘못 바뀐 것으로 추정되는 ‘爲白乎臥乎事是良尔, 爲乎臥事段, 爲乎臥所無不冬爲白昆, 的只乎臥乎事是良尔’ 등의 경우는 표제 항목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2) 표제 항목의 이체자 통합 기준

용례에서는 이체자를 그대로 두었으나 표제 항목에서는 이체자를 정체자로 통합하였다. 이 사전에 보이는 정체자와 이체자의 종류는 ‘岐/歧, 等/𡇗, 𡇗/弥/尔/𡇗, 貌/兒/貞, 并/並/竝/并, 無/无, 樣/樣, 臥/卧, 隱/𡇗/𡇗, 條/条, 齊/齊/ 𡇗, 第/弟’ 등이다. 이두에서 尔은 일반적으로 ‘곰’을 표기하는 데에 쓰이지만 간혹 ‘머’를 표기하는 𡇗의 이체자로 사용된다.

戈는 弋와는 의미가 다른 것이어서 표제 항목에서는 戈를 弋로 수정하였다. 卜은 負에서 기원한 것이나 자형에 한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 정체자로 통합하지 않았다. 段은 자료에서 𡇗으로 나타나는데 段과 𡇗은 의미와 독음이 다른 것이어서 𡇗을 段으로 바로 잡아 제시했다. 了는 了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了로 수정하였다.

‘𡇗, 𡇗分, 𡇗, 分𡇗’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체자로 통합하지 않았다. 𡇗과 乎乙도 정체자로 통합하지 않았다. 이들은 쓰기와 판독의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결과된 것이기 때문이다.

‘夜味’의 味와 ‘夜末’의 末은 이체자 관계가 아니므로 ‘夜味/夜末’와 같은 표기 방법으로 표제항을 제시하였다.

3) 표제 항목의 배열 순서

현대의 독자들을 위하여 이두 표제 항목을 구성한 글자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이두의 표제항을 배열하였다.

‘令, 立, 了, 學, 流, 尔, 劣, 餘, 不, 劣’ 등은 각각 ‘령, 립, 료, 료, 류, 며, 뿐, 불, 올’ 등의 음으로 배열하였다.

4.4. 표제 설명 항목의 구성

1) 표제 설명 항목의 구조

표제 항목에 대한 설명 항목은 讀音, 현대어 풀이, 형태소 분석 기술, 용례 등으로 구성하였다. 하나의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爲乎矣 ㅎ오디

e 하오되 『朝鮮, 集成』, ㅎ오되 『吏便』, ㅎ오디 『物譜, 儒必』, ㅎ오디 『羅麗, 吏師, 經襍』, ㅎ온디 『吏文』

f 하되. 함에. g 爲/동사+乎/보조어간+(ㄴ;ㄷ/동명사어미)+矣/연결어미

i 又 孽子 崔埴亦 去丁巳年分 承襲爲乎矣 右崔埴矣段 賤母所生是在亦中 年少蒙昧爲於 『1262年 尙書都官貼』

표제 항목에 이어서 표제 이두에 대한 讀音을 15세기 언해 표기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약물 e 뒤의 내용은 전래 이두 학습서에 제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약물 f 뒤의 내용은 표제 이두가 나타내는 의미를 현대어의 어법에 맞게 풀이한 것이다.

약물 g 뒤의 내용은 표제로 제시한 이두를 구성한 형태소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약물 i 뒤의 내용은 표제로 제시한 이두가 출현한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2) 讀音 제시의 기준

이 사전의 대상이 된 이두 자료는 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연대적으로 그 폭이 매우 넓다. 따라서 이두를 구성한 글자의 의미와 문법 기능을 분석하여 15세기 국어 문법을 기준으로 讀音을 제시하였다.

讀音의 확정시에 이두 학습서의 讀音이 있는 경우에 전래 이두 학습서의 讀音을 따랐다. 이두 학습서의 讀音이 없는 경우에는 吏讀를 구성한 형태소를 분석하여 추정된 독음을 15세기의 문법에 맞게 제시하였다.

이두의 표기에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15세기의 문법을 기준으로 보충되어야 할 문법 형태소를 ‘()’의 안에 제시하였다. 爲白爲의 경우에는 연결어미 ‘-아/어’에 대응되는 글자가 결여되어 있으나 연결어미 ‘-아/어’를 ‘()’의 안에 보충하여 爲白爲의 讀音을 ‘ㅎㄹㅎ(야)’로 제시하였다.

동명사 어미 ‘-ㄴ’과 ‘-ㄷ’은 이두에서 각각 ‘隱’과 ‘乙’로 간혹 실현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동명사 어미 ‘-ㄴ’ 또는 ‘-ㄷ’이 연결 어미로 통합되어 동명사어미 ‘-ㄴ’ 또는 ‘-ㄷ’을 표기하는 글자 ‘隱’과 ‘乙’이 이두의 표기에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讀音의 제시에서 동명사 어미 ‘-ㄴ’과 ‘-ㄷ’을 보충하였으나 간명한 제시를 위해 ‘()’은 표시하

지 않았다.

15세기 언해의 표기를 기준으로 독음을 제시하였다. 다만 표제 이두의 문자와 독법 간의 상관 관계를 명확하게 보이기 위하여 분철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독음을 2개로 제시할 경우 ‘;’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예) 加于 더욱 ; 더우

통일신라 시대 이전 이두 항목의 경우 15세기 언어에 기반하여 독음을 추정하여 제시하되 독음의 앞에 ‘*’ 표시를 부기하였다.

통일신라 신라 시대 이전 이두 항목의 경우 그 독음을 추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미상’으로 제시하였다.

3) 이두 학습서

전래 이두 학습서에서 제시한 讀音 정보는 고정익 선생이 작성한 “문헌별 이두 목록 및 독법 비교 색인” 자료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 자료는 고정익(1992, 이두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口訣研究 10)이다.

이두 학습서의 명칭은 약칭으로 제시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약칭	이두 학습서
羅麗	羅麗吏讀
物譜	物譜(我東吏讀)
語錄	註解語錄總攬(吏文語錄)
儒必	儒胥必知
吏讀	吏讀(李朝語辭典)
吏文	吏文
吏方	語錄辨證說(吏讀方言)
吏師	吏文大師
吏襍	吏文襍例
吏便	吏讀便覽
才物	才物譜
典律	典律通補
朝鮮	朝鮮語辭典
集成	吏讀集成

이두 학습서의 서지 사항은 고정익(1992)에 설명되어 있다.

『儒胥必知』에서 제시한 讀音이 두 가지일 경우에 하나를 儒必로 다른 하나를 儒必2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經俚襍說』에 수록된 이두의 독음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經俚襍說』의 약칭은 經襍으로 하였다.

4) 현대어 풀이

이두를 구성한 형태소의 의미와 문법 기능을 고려하여 현대어 풀이를 제시하였다.

이두를 구성한 형태소가 나타내는 의미와 아울러 문맥에 따른 의미를 제시하였다.

의존 형태소의 경우에는 ‘-’를 부기하였다.

5) 형태소 분석 기술의 목적과 방법

[형태소 분석 기술의 목적]

이두의 讀音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또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두를 구성한 형태소를 분석하고 분석된 형태소의 문법 기능을 제시하였다.

이두는 시대에 따라 그 사용 방법이 달라지고, 또 이두 표기는 보수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이두의 讀音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다. 따라서 이 사전에서는 讀音 제시의 간명화를 위하여 이두를 구성한 형태소를 분석하여 이두가 가지는 역사성과 이두 표기의 보수성의 문제를 처리하였다. ‘호온딕’ 또는 ‘호올딕’로 독음될 수 있는 爲乎矣의 경우 15세기의 어형으로는 ‘호딕’에 대응되는데 ‘호온딕, 호올딕’와 ‘호딕’의 어형 사이에는 동명사어미 ‘ㄴ’ 또는 ‘ㄷ’이 소거되는 문법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爲乎矣의 형태소 분석을 ‘爲/동사+ 乎/보조어간+ (ㄴ;ㄷ/동명사어미)+ 矣/연결어미’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태소 분석 기술에서 ‘(ㄴ;ㄷ/동명사어미)’의 표기 방식은 동명사어미 ‘ㄴ’과 ‘ㄷ’이 소거된 사실을 함축하고 있으며, ‘矣/연결어미’에 선행된 (ㄴ;ㄷ/동명사어미)에 대한 명시적인 기술로 15세기의 연결 어미 ‘-오딕’가 ‘-오-/보조어간+ ㄴ;ㄷ/동명사어미+ ㄷ/의존명사+ ㄹ/처격조사’ 정도의 구성에서 기원한 것임을 설명해 낼 수 있다.

[형태소 분석 기술의 방법]

이두의 형태소 경계를 ‘+’로 구분하고 분석된 형태소의 문법 기능을 ‘/’ 뒤에 명시하였다

예) 爲乎矣의 형태소 분석 : 爲/동사+ 乎/보조어간+ (ㄴ;ㄷ/동명사어미)+ 矣/연결어미

다음의 이두는 문법 형태소 분석을 제시하기 난해한 것이다.

전반부	후반부	난해 이두
乙	遭	乙遭
乎乙	遭	教是乎乙遭/教是孚遭, 上使爲孚遭 上下是孚遭, 捧上是孚遭, 是如是乎乙遭 /是如是孚遭, 是如爲乎乙遭, 是乎乙遭/是孚遭, 爲乎乙遭
白乙	遭	是白乙遭
乎乙	只	是如是乎乙只, 是孚只, 爲孚只爲, 上下爲孚只爲, 是乎乙只, 向事是乎乙只
白乎乙	只	是白乎乙只/是白孚只
乎乙	去乃	是孚去乃
乎乙	去乙	是乎乙去乙/是孚去乙
乎乙	去等	是乎乙去等/是孚去等
乎乙	去乎	爲孚去乎
乎乙	加尼/等尼/如尼	是乎乙加尼/是孚加尼, 是乎乙等尼, 是乎乙如尼
乎乙	加喻/加隱喻	是乎乙加喻/是孚加喻, 是乎乙加隱喻
乎乙	如可	是乎乙如可/是孚如可
乎乙	如乎	是乎乙如乎
乎乙	在果	上使爲孚在果, 爲乎乙在果
乙	齊	乙齊
乎乙	齊	是乎乙齊/是孚齊
白乙	齊	爲白乙齊
乎乙	乎矣	是孚乎矣
乎	去乃	是乎去乃
乎	去乙	是乎去乙
乎	如可	是乎如可
乎	加尼/如尼	是乎加尼, 是乎如尼

乎	加喻/加隱喻	是乎加喻, 是乎加隱喻
乎	在果	爲乎在果

위의 이두에서 전반부의 이두 문법 형태소인 白과 乎는 보조 어간일 가능성이 높으며 乙은 동명사 어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반부 이두 문법 형태소에서 遣은 연결 어미이고, 齊는 종결어미이며, ‘去乃, 去乙, 去等, 去乎, 加尼/等尼/如尼, 加喻/加隱喻, 如可, 如乎, 在果, 乎矣’ 등은 보조 어간이 선행한 연결 어미이고, ‘只, 只以’는 명사 파생접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동명사 어미 乙뿐만 아니라 동명사 어미 乙을 개재한 ‘白乙, 乎乙’ 등이 ‘遣, 齊, 去乃, 去乙, 去等, 去乎, 加尼/等尼/如尼, 加喻/加隱喻, 如可, 如乎, 在果, 乎矣, 只, 只以’ 등과 직접 결합된 것은 이두의 문법 상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또한 乎 뒤에 ‘去乃, 去乙, 如可, 加尼/如尼, 加喻/加隱喻, 在果’ 등이 분포하는 것도 문법 상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이 사전의 연구진 중 한 분인 이용 선생은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의 ‘白乙, 乎乙’ 등의 독음을 ‘-을’로 하고, 의미를 ‘-읍-’ 정도이며 乎는 乎乙의 생략 표기로 파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에 제시한 向事是乎乙只는 1901년의 『各司謄錄』 자료에 나오는 ‘向事的只이읍기로’와 유사한 문법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용 선생의 견해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문제로 판단하여 ‘爲良乙爲, 爲乎乙爲, 爰周爲良乙爲’ 등에 근거하여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의 문법 형태소 결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爲/ᄃᆞ’를 보충하여 독음과 문법 형태소 분석을 제시하였다.

[어휘 형태소의 기술 방법]

어휘 형태소의 품사로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부사 등을 제시하였다.

예) 見遣 ⇒ 見/동사+ 遣/연결어미
 今如 ⇒ 今/명사+ 如/형용사
 件記是齊 ⇒ 件記/명사+ 是/계사+ 齊/종결어미
 其徒等 ⇒ 其/대명사+ 徒/명사+ 等/복수접사
 故只 ⇒ 故只/부사

파생 접사가 첨가된 이두는 어휘 형태소에 본래의 품사를 표시하였다.

예) 加于 ⇒ 加/동사+ 于/부사파생접사
 岐只 ⇒ 岐/동사+ 只/명사파생접사

한자어에 ‘ᄃᆞ(爲)-’나 ‘-이(是)-’가 결합된 형태소는 ‘명사’로 표기하였다.

예) 磨鍊爲白在如中 ⇒ 磨鍊/명사+ 爲/동사+ 白/보조어간+ 在/동사+ (ㄴ/동명사어미)+ 如中/의존명사_처격조사

파생 접사와 결합된 형태소의 경우에 고유어 표기인 증거가 없을 경우 ‘어근’으로 표시하였다.

예) 艱苦亦 ⇒ 艱苦/어근+ 亦/부사과생접사

고유어의 훈차 표기 징표인 ‘말음첨기’를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예) 倂音段 ⇒ 倂/동사+ 音/말음첨기_명사과생접사+ 段/보조사

敎是白如乎 ⇒ 敎/동사+ 是/말음첨기+ 白/보조어간+ 如/보조어간+ 乎/연결어미

進叱去等 ⇒ 進/동사+ 叱/말음첨기+ 去/보조어간+ (ㄴ/동명사어미)+ 等/연결어미

[문법 형태소의 기술 방법]

문법 형태소의 종류를 조동사, 보조어간, 연결어미, 종결어미, 동명사(형)어미, 명사형어미, 격조사, 보조사, 파생접사, 의존명사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선어말어미라는 용어 대신에 조동사와 보조어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교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어말어미라는 용어는 형태소의 위치에 대한 정보만 줄 뿐, 문법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종래의 선어말어미란 용어로는 역사적으로 폭이 넓은 이두 형태소의 용법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조동사와 보조어간은 문법화하기 이전 동사와의 의미적 연계성이 드러나느냐에 따라 나눈 것이다.

이 사전에서 설정한 조동사에는 內와 在가 있다. 內는 ‘합당’의 의미를 가지며 在는 ‘완결’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사전에서 설정한 보조어간은 다음과 같다.

의미 기능	15세기어 관련 문법 형태소	이두 표기
주체존대	-시-	賜
객체존대	-습-	白
상대존대	-이-	是
회상	-더-	可, 加, 等, 如
확인	-거/어/나-	可, 去, 良
현재	-느-	飛
욕구	-려-	要, 將來
욕망	-과-	果, 欲
의도	-오/우-	乎
가능	-음직-	可只

고려 시대 이두의 보조어간 白은 ‘겸양’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연결어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연결어미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 사전에서는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을 제시하지 않았다.

15세기어 관련 문법 형태소	이두 표기
-고	遣, 古
-곤	昆
-나	那, 乃
-니	尼
-닐/늘	乙
-닐	於
-다가	加可, 多加, 多可, 良可, 如加, 如可
-도록	巴豆, 巴只
-든	等
-디	喻

-디	大, 矣
-마리어	而, 而亦
-아/어/여	良, 羅, 如, 亦
-오/우	于, 以
-온	乎
*이기/익	己只, 已只
-즉	則

15세기 평서형 종결어미 ‘-다’에 대응되는 이두 표기는 ‘多, 良, 如, 齊, 聳’ 등이며 의문형 종결어미 ‘-가’에 대응되는 이두 표기는 ‘可, 去, 納’ 등이며, 원망의 종결어미 ‘-저’에 대응되는 이두 표기는 ‘結’이다. 신라 시대 이두 자료에 나타나는 평서형 종결어미에는 ‘也, 耶, 哉, 之’ 등이 있다.

동명사(형) 어미로는 15세기의 ‘-ㄴ’을 표기한 隱과 15세기의 ‘-ㄹ’을 표기한 乙이 있다.

명사형 어미로는 15세기의 ‘-口’을 표기한 音과 15세기의 ‘-기’를 표기한 只가 있다.

격조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라 시대 이두 자료에서는 처격의 中이 나타난다.

기능	15세기어 관련 문법 형태소	이두 표기
주격	-이, -씩서	教是, 是, 亦, 弋只
대격	-을/를	乙
처격	-이/의, -애/에	良, 良中, 丫, 如中, 亦, 亦中
구격	-로	以, 乙奴
속격	-이/의, -스	矣, 之, 叱
접속	-와/과	果
서술격	-여	亦

주격조사 是는 『養蠶經驗撮要』에만 나타난다.

如中은 의존명사 ‘ㄷ’에 처격 조사 ‘아귀’ 정도가 결합된 형태를 표기한 것으로 ‘의존명사_처격조사’로 표시하였다.

보조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5세기어 관련 문법 형태소	이두 표기
-ㄱ	只
-갓	佳叱
-곰	尔, 爾
-나	那
-썩녀	耳亦
-판	段
-도	都, 置, 投
-도록	所只, 巴只
-마다	每如
-사	沙
-은/는	隱, 者
-을랑	乙良

파생접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기능	15세기어 관련 문법 형태소	이두 표기
복수접사	-들	等
명사파생접사	-이	是, 伊
	-기	只
	-음	音
사동접사	-이	是
부사파생접사	-로	以
	-이/히	是, 伊, 兮
	-아/어/여	良, 如, 亦
	-오/우	于, 乎
	-데/명	丁

㉞ 의존명사는 다음과 같다.

15세기어 관련 문법 형태소	이두 표기
ㄷ	等
쑤	分, 分叱, 岔, 劈, 叱分, 岔
바	所
이	是
식	式
樣	良, 樣
第	第, 齊
則	則

㉞ 但은 ‘ㄷ/의존명사+ 아/처격조사+ 은/보조사’ 정도의 ‘단’을 표기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㉞ 喻는 의존명사와 주격 조사 ‘-이’나 계사 ‘-이-’가 결합된 ‘디’를 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㉞ 喻를 ‘의존명사’로 처리하고 그 뒤에 계사 ‘-이-’를 보충하여 제시하였다.

6) 용례

㉞ 용례는 예문과 출전으로 구성하였다.

爲旅 ㅎ며

e 하며 『朝鮮, 集成』, ㅎ며 『語錄』, ㅎ며 『羅麗, 儒必, 吏便, 經襍』 f 하며. g 爲/동사+旅/연결어미
i 又 靑衣童子 着 四伎樂人等 竝 伎樂爲旅 『755年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加于 物業乙計會爲 太平七年歲次
丁卯 十二月日 隨願僧俗等一千餘人乙 戶長柳瓊 左徒 副戶長 承律 右徒 例以 分析爲旅 『1031年 淨兜寺五層石
塔造成形止記』

㉞ 위에서 i 다음이 예문이고 출전은 예문의 뒤에 ‘『』’의 안에 제시하였다.

㉞ 예문의 작성 연대순으로 용례를 제시하였다. 연대 미상 예문은 마지막에 제시하였다.

㉞ 이두의 의미와 문법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맥의 예문을 제시하였다.

㉞ 예문에 들어 있는 표제어에는 진하게 표시하였다.

㉞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의 본문은 15세기에 언해되었으므로 관련되는 예문도 함께 제시하였다.

예) 鼻口中 出血爲去等 加蒲黃[부도조젯ㄴㄹ]爲乎事 / 고히며 이베 피 나거든 부도조젯 글
를 더 녀흐라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8』

입력이 가능하지 않은 글자는 글자의 구성소를 ‘{ }’의 안에 제시하였다.

예) 右明文事段 矣身亦 上典宅 農所逢授 累年 舍音以 使內爲如可 年年所出多數無{才+面}爲
跡 『1611年 私奴德義土地賣買明文』

오자가 분명한 것은 바른 글자를 ‘()’의 안에 보충하였다.

예) 萬日(一)良中 他人等 偽造文記爲白去乃

디지털 기반의 정보 검색 기능을 고려하여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자료 명칭을 사용하여 출전을 제시하였다.

고문서와 금석문의 경우 자료 명칭 앞에 연대를 제시하여 제시된 용례의 시대를 파악하기 쉽게 하였다.

예) 『1611年 私奴德義土地賣買明文』

연월일로 구성된 고도서의 경우 자료 명칭 뒤에 연월일을 서기력으로 제시하였다.

예) 『承政院日記 1642年 3月 8日』

장차가 있는 고도서의 경우 자료 명칭 뒤에 해당 장차를 제시하였다. 다만, 『大明律直解』의 자료 명칭 뒤에 내용 구분 목차를 제시하였다.

예)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8』, 『大明律直解 1 名例律 公事失錯』

『推案及鞫案』의 경우 비록 연월일 자료이지만 제시된 예문의 원본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推案及鞫案』 영인본의 책수와 쪽수를 제시하였다. 즉 『推案及鞫案 1:35』에서 1은 1책을, 35는 영인본의 35쪽을 말한다.

예문이 두 쪽에 걸쳐 있을 경우 ‘-’를 사용하여 앞쪽과 뒤쪽을 구분하였다.

7) 예문의 띄어쓰기

예문은 의미를 고려하여 적절히 띄어 썼다.

복수 어절의 표제항은 표제항에서는 붙여 썼으나 예문에서는 어절 단위로 띄어쓰기 하였다.

教是味爲等如 기신맛흐트러

i 矣身段 場市往來爲如可 軍兵中 混入 被捉爲有去乎 相考分揀施行 教是味 爲等如 招辭是白置 有亦 『推案及鞫案 6:99』

수량 명사구는 ‘수관형사’와 ‘수량 단위 의존명사’를 붙여서 제시하였다.

☞ 보조사로 문법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띄어 썼다.

☞ ‘爲-’의 이두는 앞 성분과 띄어 쓰지 않았으나 ‘教-, 教是-, 爲是-, 令-, 令是-’ 등의 이두는 앞 성분과 띄어 썼다.

4.5. 부록 구성 안내

1) 부록의 구성

☞ 이 사전의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글자별 이두 항목 찾아보기, 표제 이두 항목별 용례 빈도, 이두 학습서의 용례 없는 이두 목록, 이두 용례 채록 자료 목록, 이두 용례 채록 자료 명 색인’ 등으로 부록을 구성하였다

2) 글자별 이두 항목 찾아보기

☞ ‘글자별 이두 항목 찾아보기’는 이두를 구성한 글자별로 관련된 이두 항목을 제시하여 이두의 심층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見】見遣, 見內, 見令賜矣, 見賜

【遣】遣, 見遣, 遣沙, 教是遣, 教是白遣, 教是孚遣, 教是乎遣, 教是乎乙遣, 衿分爲白遣, 逃亡合是遣, 等是遣, 等是白遣, 令是遣, 令是遣在如中 (생략)

☞ 이두를 구성한 글자의 이두 내의 위치를 진하게 표시하였다.

4) 표제 이두 항목별 용례 빈도

☞ 문법적으로 중요한 이두를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표제 이두 항목별 용례 빈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教所】教所(2), 教所不喻去有在等以(2), 教所不喻去有在而亦(1), 教所乙(1)

【教是】教是1(12), 教是2(21), 教是去乃(3), 教是去等(4), 教是去有等以(2), 教是去乙(5), 教是去乎(2), 教是遣(7), 教是故(2), 教是昆(1), 教是乃(1), 教是段(1), 教是等用良(1), 教是等乙(1), 教是等乙用良(1), 教是良(1), 教是良在乙(3) (생략)

☞ ‘()’ 안의 숫자는 채록된 예문의 수를 말한다.

5) 이두 용례 채록 자료 목록

☞ 이두 용례 채록 자료의 목록은 ‘고문서와 금석문’과 ‘고도서’로 나누어 간행 연대순으로 제시하였다.

☞ 자료의 명칭, 간행 연대, 채록 용례수, 출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 연월일 자료의 경우 원자료에서 제시한 예문의 연대만을 제시하였다.

☞ 출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위치로 디지털 텍스트로 입력되지 않은 자료는 ‘책자’로 표기하였다.

☞ 예문으로 제시된 자료 중에서 디지털로 입력된 자료는 그 예문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명을 제시하였다. 사이트명은 줄여서 제시했고 사이트의 정식 명칭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약칭	사이트 명칭과 주소	기관명
강원권역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 센터 (http://waks.aks.ac.kr)	강원대학교
고자료관	고문서자료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정보 (http://kyu.snu.ac.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록유산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문화재청
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고전번역원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 (http://yn.ugyo.net/index.do)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Ugyonet (http://www.ugyo.net)	한국국학진흥원
장서각	한국학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main.jsp)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기록	장서각국가기록전적센터 (http://royal.aks.ac.kr/Default.aspx)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중연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http://www.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권역	한국학자료센터 해외권역 센터 (http://kostma.korea.ac.kr)	고려대학교
호남기록	호남기록문화시스템 (http://honam.chonbuk.ac.kr/index.jsp)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 호남권역 센터 (http://hncostma.org/emuseum/service)	전북대학교

위에 제시한 사이트에서 이 사전에서 제시한 이두 자료를 검색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다. 위 사이트 각각에서 예문의 띄어쓰기 방법이 이 사전의 방법과 다른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트의 검색 색인 정보가 이 사전의 띄어쓰기와는 상이하게 작성되어 이 사전에서 제시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예문의 다른 부분을 가지고 검색하여 해당 예문을 검색할 수 있다.

신라와 고려 시대의 이두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다.

南豊鉉(2000), 『吏讀研究』, 태학사.

南豊鉉(2014), 『古代韓國語 論攷』, 태학사.

盧明鎬 외(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校勘註解篇』, 서울대학교출판부.

李樹健(1981), 『慶北地方古文書集成』, 영남대학교출판부.

李丞宰(1992),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한국학중앙연구원(1982-), 『古文書集成』, 한국학중앙연구원.

6) 이두 용례 채록 자료명 색인

이두 용례 채록 자료를 연대순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두 용례 채록 자료명 색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1. 고문서와 금석문

【家舍】家舍賣買明文(1498)

【嘉靖】嘉靖35年分財記(1556), 嘉靖卅三年二月初訣訟立案(1554)

【各司】各司受教(1555)

【各院】各院通文抄冊(1862)

【各人】各人等所志(1623)

【葛項】葛項寺石塔造成記(758), 葛項寺石塔造成記(798)

2. 고도서

【嘉禮】嘉禮都監儀軌(1718), 嘉禮謄錄(1658)

【各陵】各陵謄錄(1716), 各陵奉審修改謄錄(1812), 各陵修改謄錄(1670), 各陵修理謄錄(1648)

【各司】各司謄錄(1738), 各司受教(1555)

【各廬】各廬記事(1765~1805)

【澗松】澗松集(1585~1664)

【岡營】岡營日記(1879)

4. 결론

종래의 이두사전과 비교하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의 이두사전은 이두토의 양적 측면에서 확대되었고 그동안의 이두 연구 결과를 흡수하여 이해 측면에서 발전된 내용을 보여주었지만, 궁극의 이두사전과 비교하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의 이두사전은 이두토에 대한 양과 이해의 측면에서 너무나 보잘 것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의 이두사전이 궁극의 이두사전에 가까이 다가간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몇 가지를 언급해 둔다.

이두 문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이두토 표제 항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두토에 대한 규범적 용례를 정의할 수 있는 특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두토의 문법적 지위는 조사나 어미이므로 이두토가 나타낸 의미 기능을 분석하여 용례를 의미 기능에 따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두토가 가지는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는 국어의 조사나 어미의 의미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두 문헌 자료는 대체로 우리 민족의 생활과 역사를 기록한 자료이므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가 우리 민족의 생활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채록된 이두 용례에 대한 현대어 번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생략함

어말어미 표기자로 본 이두의 변천

이용(서울시립대)

1. 서론

이 글은 이두의 어말어미 표기자들의 시대별 양상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용(2017)에서는 조사 표기자들에 대해 같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 이두 텍스트의 연대 확정이나 문법형태 등의 파악을 위해서는 이두 표기자의 시대별 사용 양상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이두의 조사 표기자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미진한 채 남아 있어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하나는 조사 표기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이두 표기의 전체적인 경향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어미 표기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차자표기 즉 향찰, 구결 등과의 비교였다. 이에 이 글은 이전에 미완으로 남겨 두었던 것을 보완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용(2017)에서 조사 표기자의 변천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처음에는 ‘中’, ‘以’ 등 한문에서 기원한 조사 표기자를 쓰다가 8세기가 되어서야 음을 빌려서 조사를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고에서 조사하는 어미 표기자의 변천 양상이 정리되면, 그 결과를 조사 표기자와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이두 어말어미 표기자의 시대별 사용 양상 조사

2.1. 어말어미 표기자 연구 대상의 선정

- 이승재(1992), 서종학(1995), 배대운(1996) 등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여 어말어미 목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어말어미로 정리하기 어려운 것들은 제외
- 철저히 이두만을 중심으로 논의 진행함
- 자료의 원본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원본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라는 가정하에 조사 진행
-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논의 중간에 언급

2.2. 어미 표기자 사용 양상

2.2.1. 종결어미

2.2.1.1. 설명

- 기존 연구에서 설명법 어미를 표기하는 것으로 본 글자로는 ‘之, 如, 也, 矣, 齊, 哉, 兮, 亦, 結’가 있음
- 이 중에서 ‘兮, 亦, 結’는 제외

설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	
之	△	△	△	△			0	0	0	0	0	0										
如								0		0									0	0		
也					△		0	0	0													
矣								0		0			0									
齊																	0	0	0	0	0	0
哉							0	0														

* 0: 쓰이는 예

** △: 이두인지 한문인지 용법을 가리기 어렵거나 이두의 용법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예

*** \$: 이두 표기자가 아닌데 이두 표기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예

(1) 之

가.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0414 廣開土大王碑>

나. 太位 諸位 上下 衣服 來受 敎 跪營▶之◀ <0495 中原高句麗碑>

다. 作食人 眞宋知波珎干支 婦 阿兮牟呼 夫人 … 居次珎干支 婦 沙爻功 夫人 共 作▶之◀ <0539 蔚州川前里書石銘(追銘)>

라. 若國大安大亂世 可容行誓▶之◀ <0552 壬申誓記石銘>

마. 古人成之 東海欣支邊 散▶之◀ <0719 慶州甘山寺彌勒菩薩造成記>

바. 香水用尔沐浴令只但作處中進在▶之◀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사.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 <8세기 말 葛項寺石塔造成記>

아. 十方旦越勸爲成內在▶之◀ <0804 禪林寺鐘銘>

자. 節中 成▶之◀ <0889 英陽石佛坐像光背銘>

차. 衆矣 白賜臥乎 兒如 加知谷寺 谷中 入成造爲賜臥亦▶之◀ <0939 醴泉鳴鳳寺 慈寂禪師 碑陰銘>

카. 在位光 和上 鑄□□ 和上 供養村 合任 成▶之◀ <0967 星州石佛坐像背銘>

- ‘之’가 설명법 종결어미의 표기자로 쓰이는 예는 5세기부터 10세기까지에 걸쳐 확인됨

- (1가)에 대해 남풍현(2005: 15)에서는 명사 ‘墓’ 다음에 ‘之’가 쓰인다는 점에서 국어의 문말종결어미 ‘-다’로 번역된다고 봄

- 김병준(2011: 73-77)에서는 진한시대 ‘之’는 명사 다음에 오며 종결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고구려 등 한반도에서 보이는 ‘之’의 종결형 용법이 진한시대 공문서의 용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

(2) 如

가. 供養爲內 以後中坐中 昇經 寫在▶如◀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나. 賣▶如◀ 白 貫甲 一 合无去因 白 馬 二[並死之] <0758 新羅村落文書(正倉院)> [A촌]

다. 妹者 敬信太王姊在▶如◀ <8세기 후반 葛項寺石塔記>

라. 皆 無上菩提 成內飛▶如◀ <0856 竅興寺鐘銘>

다. 向前寺段 殘爲甚接人 不得是▶如◀ 爲去乙 <1378 長城監務官貼>

라. 其褒賞之典 有司 舉行爲良▶如◀ 敎是齊 <1392 李和開國功臣錄券>

마. 死罪乙良 唯只 照律爲乎矣 當死▶如◀ 申聞爲白遣 <1395 校訂大明律直解, 名例律, 【應

議者犯罪】>

바. 褒賞之典 有司 舉行爲良▶如◀ 敎事是 有等以 <1401 馬天牧佐命功臣錄券>

사. 其奴婢 永絶屬籍爲良▶如◀ 敎 遺書是白乎等用良 <1429 金務許與文記>

- (2가)를 제외하고는 ‘如’가 내포문의 종결어미로 오고 있음¹⁾

- (2라, 바, 사)에서는 명령의 의미가 보임

- 이승재(1992: 176)에서는 ‘-라’에 대응한다고 보고 ‘t>r’의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로 설명

- 8세기에 처음 보임

(3) 也

가. 辛未年十一月中作城▶也◀ <0611 明活山城 作城碑文>

나. 古人成之 東海欣支邊 散▶也◀ <0720 慶州甘山寺阿彌陀佛像造成記>

- (3나)를 (1마)와 비교하면 ‘古人成之 東海欣支邊 散’까지는 같고 ‘之’와 ‘也’만이 다름. ‘之’ 대신에 ‘也’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음

- 남풍현(2005: 20)에서는 (1마)와 같은 내용이 ‘散也’로 표현되어 ‘之’가 ‘也’로 바뀌었는데, 이는 이 吏讀文의 ‘之’가 指示代名詞가 아니라 ‘也(-이다)’와 같은 文末終結語尾로 쓰인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봄

- 한문의 용법과 관련

(4) 矣

가. 故所內使以 見令賜▶矣◀ <0798 永川菁堤碑貞元銘>

나. 大中□年 丙子 八月三日 竅興寺鐘 成內▶矣◀ <0856 竅興寺鐘銘>

다. 三月三日 光軍(?) 六隊 車 十八 年 一千以 十間 ▶入矣◀ <1010 開心寺石塔記>

- 한문의 용법과 관련

- 서종학(1995: 150-152), 배대온(1996: 150-153)에서는 연결어미 ‘오되’와 연결시키기도 했으나 종결어미로 보아야 할 것들임

(5) 齊

가. 已前 綱維乙 並只 陞失令是▶齊◀ <1262 柳璈功臣錄券(尙書都官貼)>

나. 內外兩班亦 白活出城不冬 無事避亂是▶齊◀ <1382 慶州司首戶長行案其二>

다. 屬從公狀是良置 不許入屬▶齊◀ <1390-91 高麗末國寶戶籍文書>

라. 其褒賞之典 有司 舉行爲良如 敎是▶齊◀ <1392 李和開國功臣錄券>

1) 신라시대의 이두에서는 如가 내포문에 한정되지 않았다.

經心內中 一收 舍利尔 入內▶如◀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石南嚴 藪觀音嚴中 在內▶如◀ <0766 永泰二年銘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

尾者 上仕而 汚去▶如◀ <0758 第二新羅文書 (758년 전후)>

마. 更良 申聞委官矣 字細推明乙 待候爲良沙 一定決斷▶齊◀ <1395 校訂大明律直解, 名例律, 【職官有犯】>

바. 其褒賞之典 有司 舉行爲良如 敎是▶齊◀ <1395 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

사. 蠶亦 初出爲去等 極暖爲只爲 看飼爲▶齊◀ <1415 養蠶經驗撮要>

아. 所生奴 吾 乙末年 三十三 等乙良 執捉者 賞給爲遣 平均分執爲▶齊◀ <1479 金淮妻盧氏許與文記>

- 13세기 후반 자료에 처음 보이는 표기로 다른 종결어미들을 대체
- 남풍현(2005: 25)에서는 ‘齊/제’가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720)에 처음 나온 ‘哉/직’와 연관되어 있고 ‘之’와는 語形과 機能이 전혀 다른 것으로 봄
- 齊는 동사어간과 직접 통합함(이승재, 1992: 175)

(6) 哉

가. 後代 追愛人者 此善 助在▶哉◀ <0720 慶州甘山寺阿彌陀佛像造成記>

나. 若大小便爲▶哉◀ 若臥宿▶哉◀ 若食喫▶哉◀ 爲者 香水 用尔 沐浴令只但 作作處中 進在之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 선어말어미 ‘在’와 통합한다는 점에서 ‘齊’와 다름

2.2.1.2. 의문

② -(乙)去

의문	5	6	7	8	9	10	11	12	13	14	15
-(乙)去										0	

(7) 乙去

가. 他人亦 現告爲▶乙去◀ 知想只遣 現告爲旆 <1395 校訂大明律直解, 名例律, 【犯罪自首】>

나. 犯法人亦 他人亦 現告爲▶去◀ 知想只遣 先告爲在乙良 <1395 校訂大明律直解, 名例律, 【犯罪得累減】>

- (7나)의 ‘爲去’는 ‘乙’이 생략된 표기임

2.2.2. 연결어미

2.2.2.1. 병렬 또는 계기

병렬	5	6	7	8	9	10	11	12	13	14	15
遣							0		0	0	0
古										△	
旆				0		弥	0		0	0	0

(8) 遣

가. 石塔伍層乙 成是白乎 願 表爲▶遣◀ 成是不得爲乎 天禧二年 歲次 壬戌五月初七日 身病以 遷世爲去在乙<1031 若木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 나. 不多人 率領爲拵 一旦良中 掃蕩爲▶遣◀ 再造王室復整三韓令是白乎 功業 重大帶礪難忘 敎事是良尔 <1262 柳璥功臣錄券(尙書都官貼)>
- 다. 右古次左 婢矣 長所生 逸三 奴矣 身乙良 同生弟 別將 梁弼矣 身亦 傳持使用爲▶遣◀ 出 父亦中 賜給事是 後良中沙 <1281 松廣寺奴婢文書>
- 라. 下去搔擾爲臥乎事是如有ㄷ以 禁止爲▶遣◀ 菩薩社 不動令是事 <1349 清州牧官文書>
- 마. 宣旨內 事意乙用良 共議案爰周爲▶遣◀ 今後 禪師若雲乙 下山禁止向事 出納爲乎事是去 等 <1357 白巖寺貼文 至正丁酉僧錄司貼文>
- 바. 三曰謀叛 本國乙 背叛爲▶遣◀ 彼國乙 潛通謀叛爲行臥乎事 <1395 校訂大明律直解, 名例律, 【十惡】>
- 사. 桑葉叱分 喫破爲遣 飲水 不冬 <1415 養蠶經驗撮要>
- 아. 所生奴 吾 乙未年 三十三 等乙良 執捉者 賞給爲▶遣◀ 平均分執爲齊 <1479 金淮妻盧氏 許與文記>

- 11세기 전반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임
- 이두에서 ‘-고’의 표기는 ‘遣’였던 것으로 보아도 괜찮을 듯

(8) 古

- 가. 錢七十六兩 作定爲▶古◀ 完成 明文書一張乙奴 永永放賣事 <1390 洪武23年奴婢文書(洪武年間 女奴賣渡文書 第一號)>

- 연결어미 표기자로서의 ‘古’는 이 예가 유일례
- 이 자료가 실려 있는 『北關邑誌』는 1872년 간행. 후대에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서종학, 1995: 141)

(10) 拵

- 가. 甥者 零妙寺 言寂法師在▶拵◀ 姉者 照文皇太后 君姊在▶拵◀ 妹者 敬信太王姊在也 <0785-98 葛項寺石塔造成記>
- 나. 別地主 無在▶弥◀ 衆矣 白賜臥乎兒如 加知谷寺谷中 入成造爲賜臥之 <0939 醴泉鳴鳳寺 慈寂禪師碑陰銘>
- 다. 右徒例以 分析爲▶拵◀ 日日以 石運 已畢爲 <1031 若木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 라. 右 崔誼矣段 賤母所生是在亦中 年少蒙昧爲拵 國家大體乙 想只不得爲遣 <1262 柳璥功臣錄券(尙書都官貼)>
- 마. 不多田地乙 菩薩社良中 屬令是▶拵◀ 供佛養僧祝上爲如乎事是如 有ㄷ以 <1349 清州牧官文書>
- 바. 一任爲乎所 不喻是▶拵◀ 年遠爲□□爲去乃 <1361 慶州司首戶長行案 其一>
- 사. 死罪 不喻在 三人乙 殺害爲拵 他人矣 四支乙 截割爲▶拵◀ 他人矣 生氣乙 採取爲拵 害人毒蟲 等物乙 畜養爲拵 <1395 校訂大明律直解, 名例律, 【十惡】>
- 아. 前許與內 貌如 不動爲▶拵◀ 矣邊奴 小斤夫万矣段 婢 年 陸拾陸 不用是在而 <1443 權明利許與文記>
- 자. 先執者乙良 論功給賞爲▶拵◀ 後次 別爲所 有去等 此文字內乙用良 辨正爲乎事是亦在 <1470-94 尹培許與文記>

- 8세기부터 계속해서 쓰임
- ‘弥’는 1차례 나타남

2.2.2.2. 선택

나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那				0							
乃				0	0				0	0	0

(11) 那

- 가. 若楮皮脫▶那◀ 脫皮練▶那◀ 紙作伯士▶那◀ 經寫筆師▶那◀ 經心匠▶那◀ 佛菩薩像筆師走使人▶那◀ 菩薩戒 授令弥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 나. 若見內人▶那◀ 向尔 頂禮爲▶那◀ 遙聞內▶那◀ 隨喜爲內▶那◀ 影中逕類▶那◀ 吹尔 逕風逕所 方處一切衆生▶那◀ 一切 皆 三惡道業 滅尔 <0766 永泰二年銘石造毘廬遮那佛造像記>

- ‘那’는 8세기 후반 자료에만 나옴
- 배대운(1996: 89)에서는 ‘那’가 ‘乃’보다 고형인 것으로 파악.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乃’에 대한 기록은 이러한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12) 乃

- 가. 念物 絲▶乃◀ 綿▶乃◀ 得 迫于 <0752 正倉院 毛氎貼布記(752년 이전)>
- 나. 願爲內等者 種々 施賜人▶乃◀ 見聞隨喜爲賜人▶乃◀ 皆 無上菩提 成內飛也 <0856 竅興寺鐘銘>
- 다. 參外員沙爲在▶乃◀ 參上 已上 員將 等乙良 丘史 五人乙 許初入仕爲良於爲教矣 <1262 柳璈功臣錄券(尙書都官貼)>
- 라. 年遠爲□□爲去▶乃◀ 近來 上戶長 姓名乙 科科以 推考行公 次第乙用良 <1361 慶州司首戶長行案 其一>
- 마. 官物乙 闕失爲在乙良 罪狀乙 必于 施行爲遣 勿論爲去▶乃◀ 其事乙 須只 明白推考爲齊 <1395 校訂大明律直解, 名例律, 【無官犯罪】>
- 바. 庭前良中 竹竿木竿中 立置高掛爲去▶乃◀ 園中 無烟處 兩邊 各立長竿爲遣 <1415 養蠶經驗撮要>

- 13세기부터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형태인 ‘在乃’, ‘去乃’가 나타남
- 14세기부터는 ‘去乃’만이 보임
- 배대운(1996: 89)에서는 중국 한문에서 ‘乃’가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이 두의 연결어미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제시. 그러나 아무래도 의미상으로는 거리가 있음

2.2.2.3. 원인 1

원인	5	6	7	8	9	10	11	12	13	14	15
良							0	0	0	0	0

良尔																0	0		0	0	0
尔							0														
良只																			0		
乎																0			0		0
于							0				0								0	0	0

(13) 良

- 가. 成是 不得爲 犯由 白去乎等用▶良◀ <1031 若木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나. 僧 正景廉亦 銀□壹□ □用▶良◀ <1102 僧正景廉石棺銘>
 다. 同寺飯子小鐘等亦 全闕 爲□乎等用▶良◀ <1224 利義寺飯子>
 라. 責役 各別爲在 外民乙用▶良◀ 耕作令是置 自利爲先爲齊 <1262 柳璈功臣錄券(尙書都官貼)>
 마. 此 文字 內 事意乙用▶良◀ 內外官司 辨別爲乎事是亦在 <1354 海南尹氏奴婢文書>
 바. 堂祭 十乙 爻定教是▶良◀ 光宗朝良中 堂祭乙段 號戶長 爻八乙 制定教事是置 <1361 慶州司首戶長行案 其一>
 사. 凡有人亦 本管官司良中 現告爲乎等用▶良◀ 差使捉來 推問爲去乙 無官犯罪 <1395 校訂大明律直解, 名例律, 【無官犯罪】>
 아. 去丙辰年分 身故爲乎等用▶良◀ <1443 權明利許與文記>
 자. 辛巳十月十七日 立案 右 立案所志內乙用▶良◀ 相考爲乎矣 <1461 河源(龜童)所志>
 차. 許與成給 不冬爲有如其等用▶良◀ 右 奴婢等乙 并錄爲乎矣 <1517 金孝盧粘連文記>

- ‘良’의 출현은 생각보다 늦은 편
- 대체로 ‘대격조사+用+良’의 관용적 표현으로 나타남
- 관용적 표현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良’이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지만 표기는 늦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

(14) 良尔

- 가. 荳原縣 田沓拜三十結六十三卜柴地段 山谷是▶良尔◀ 結卜數 不知 審檢 不得 <1221-6 修禪社寺院現況記>
 나. 右 事叱段 君臣名分亦 如天地設恒教事是▶良尔◀ 臣無有作福作威爲將來臥乎等用良 <1262 柳璈功臣錄券(尙書都官貼)>
 다. 尹光璵亦 子丹鶴亦中 奴婢 許與成文良中 訂筆使內白乎事是▶良尔◀ 科科以 斜只 立案 <1354 海南尹氏奴婢文書>
 라. 同年分 身故次 其矣 出子 奴龍萬亦中 傳許與 不得 身故爲良尔 無文證爲乎所 不喻▶良尔◀ 矣身亦 出父矣 許與論當 <1382 南氏奴婢文書>
 마. 印信官文書及應禁兵器果 文書等亦 私家良中 本無之物是▶良尔◀ 生微難便爲乎等用良 <1395 校訂大明律直解, 名例律, 【犯罪自首】>
 바. 小數給食爲齊 若多白色則 困餓所致是▶良尔◀ 小小給食爲良沙 <1415 養蠶經驗撮要>
 사. 證筆俱成文許給爲白臥乎事是▶良尔◀ 科科相考 施行向教是事 <1480 金孝之妻黃氏粘連文記(1)>

- ‘良’의 출현 이후에 출현

(15) 尔

- 가. 諸筆師等 各香花 捧▶尔◀ 右念行道爲 作處中 至者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나. 願請內者 豆溫愛郎 靈神賜那 二僧等那 若 見內人那 向▶尔◀ 頂禮爲那 遙聞內那 隨喜爲
內那 影中逕類那 吹▶尔◀ 逕風逕所方處 一切衆生那 一切 皆 三惡道業 滅▶尔◀ 自毗盧
遮那是等 覺去世爲▶尔◀ 誓內之 <0766 永泰二年銘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

- (14)를 고려할 때 표기에서 ‘良’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함
- ‘良尔’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16) 良只

- 가. 更良 奏聞 除▶良只◀ 法孫案牘施行爲良於爲 <1378 長城監務官貼>
나. 男女定婚之初良中 萬一 殘疾老弱及妾妻子息收養子息等乙 兩邊弋只 仔細相知爲▶良只◀
各從所願以 婚書相送 依例結族爲乎矣 <1395 校訂大明律直解, 戶律, 【男女婚姻】>

- ‘尔’과 달리 ‘只’만 있는 경우는 없음

‘于/乎’는 기존에 부사과생접사로 다루어 왔던 것임

(17) 于

- 가. 念物 絲乃 綿乃 得 追▶于◀ <0752 正倉院 毛氈貼布記(752년 이전)>
나. 太平十年 歲次 庚午十二月七日 牒以 寺代內應爲處 追▶于◀ 立是白乎味 了在乎等用良
<1031 若木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다. 石乙 准受令是遣 在如中 加▶于◀ 物業乙 計會爲 <1031 若木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
記>
라. 長城郡地 白巖寺 下安令是於爲 落點教等乙仍▶于◀ 下安令是白遣 <1378 長城監務官貼>
마. 官物乙 誤錯亦 損毀闕失爲乎事 他人矣 犯罪乙因▶于◀ 干連得罪爲乎 緣故段 犯罪人乙
遲晚覺察爲 <1395 校訂大明律直解, 名例律, 【流囚家屬】>
바. 蠶身亦 互相當擊乙仍▶于◀ 後日 薪內高致 造作 不冬 <1415 養蠶經驗撮要>
사. 子息 三甥妹亦中 成文許與事叱段 家翁教是 子息 迷少乙仍▶于◀ 奴婢乙 不分棄世教是去
乙 <1479 金淮妻盧氏許與文記>

- 연결어미 ‘-오/우’의 표기
- 의미적으로는 연결어미 ‘-아/어’와 연결
- 결합하는 용언으로는 ‘追’, ‘加’, ‘仍’, ‘因’이 있음
- 12세기부터는 ‘追’와의 결합이 보이지 않음

(18) 乎

- 가. 并以 各掌官弋只 追▶乎◀ 啓授使內良於爲教矣 <1262 柳璈功臣錄券(尙書都官貼)>
나. 官員仕官日 隨▶乎◀ 聞見 待候遣 <1395 校訂大明律直解, 刑律, 【婦人犯罪】>
다. 逃亡遺漏奴婢及田畝 有去乙等 現出爲乎 追▶乎◀ 依大典和 會分執爲乎 事 <1480 金光
礪 男妹 分衿文記>

- ‘于’와 마찬가지로 연결어미 ‘-오/우’의 표기
- 의미적으로는 연결어미 ‘-아/어’와 연결
- 결합하는 용언으로는 ‘追’, ‘隨’이 있는데, 둘 다 ‘쫓-’을 표기했을 것으로 추정됨
- 같은 문헌에서 쓰인 (17마)와 (18나)를 관찰하면 선행 용언에 따라 ‘于’나 ‘乎’가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2.2.2.4. 원인 2

원인	5	6	7	8	9	10	11	12	13	14	15
乙							△				
在乙							0		0	0	
去乙									0	0	0

(19) 乙

古石佛 在如賜▶乙◀ 重脩爲 今上 皇帝萬歲願 <0977 太平二年銘磨崖藥師坐像銘>

- 이두에서는 동명사어미 ‘-ㄴ’의 표기는 대체로 생략되는 경향을 보임
- 연결어미 “*ㄴ”을 표기하는 것으로 보는 데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의미상 구체적인 형상을 가진 ‘古石佛’을 重脩한다고 해야 자연스러움(이용, 2003: 94)

(20) 在乙

가. 議出納爲乎事▶在乙◀ 善州土集踞院主人 貞元伯士 本貫 義全郡乙 白旆 <1031 若木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나. 君臣禮正政 出由辟敎是如乎事是去有▶在乙◀ 去丙辰年分 崔忠獻亦 聚類結黨爲 殺活專權爲旆 <1262 柳璈功臣錄券(尙書都官貼)>

다. 矣亦中 仰使內如乎▶在乙◀ 矣發願修補爲 本社安邀爲乎 丹本大藏寶良中 右巾三矣身乙 所生 并以 屬令是白去乎在等以 <1281 松廣寺奴婢文書>

라. 倭賊人亦 同年四月初七日 右物色乙 偷取持去爲去▶在乙◀ 造成 <1351 感恩寺飯子>

마. 凡 文官亦 國家良中 大功勞 無▶在乙◀ 所任官亦 朦朧申聞爲 公侯官爵乙 差備爲在乙良 <1395 校訂大明律直解, 名例律, 【文官不許封公侯】>

- 선어말어미 ‘-在-’와 연결어미 ‘-(隱)乙’의 결합을 표기

- 15세기부터는 자료에 극히 일부만 보임

(21) 去乙

가. 奉聖旨 賞罰人主之柄 不屬私門爲▶去乙◀ 丙辰年 已來 權臣 竊弄爲 <1262 柳璈功臣錄券(尙書都官貼)>

나. 長城郡土 白巖寺段 無田民殘廢古基山齊是▶去乙◀ 先師覺眞國師敎是 重創是遣 <1357 白巖寺貼文 至正丁酉僧錄司貼文>

다. 祖父母果 父母果 現在爲▶去乙◀ 戶別各居 家財 分執爲旆 <1395 校訂大明律直解, 名例律, 【十惡】>

라. 緣坐不冬爲白有▶去乙◀ 父矣 奴婢等乙 河緯地 戶籍良中 合錄是如 <1447 琴碁別給文記>

- 의외로 출현 횟수 적음
- ‘在乙’과 달리 15세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현

2.2.2.5. 원망

원망	5	6	7	8	9	10	11	12	13	14	15
良結										0	0

(22) 良結

가. 先師 重創道場乙 一任爲白乎所不喻 修營作法祝上爲白▶良結◀ 望白去乎事是去有在等以 <1357 白巖寺貼文 至正丁酉僧錄司貼文>

나. 四寸孫 孝盧乙 繼後爲▶良結◀ 說導爲如可 <1480 金孝之妻黃氏繼後立案>

- 상위문 동사로 ‘望-’, ‘說導爲-’가 오고 있음

2.2.2.6. 조건

조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等									0	0	
尸等										0	0
去等									0	0	0

(23) 等

가. 各 後所生 并以 子孫傳持使用爲良於爲 出納成給爲臥乎事是▶等◀ 右事須貼 <1262 柳璈功臣錄券(尙書都官貼)>

나. 具錄于后爲臥乎事是▶等◀ 今後乙良 上戶長姓名及四祖 掌印年月 并以 施行 <1361 慶州司首戶長行案 其一>

다. 一度爲乎矣 奉命出征時是▶等◀ 與者 受者 不在此限 <1395 校訂大明律直解, 刑律, 【因公擅科歛】>

- 동명사어미 ‘-乙’ + ‘의존명사 ‘-ㄷ’ + 주제의 보조사 ‘-隱’의 구성이 문법화한 연결어미의 표기(이용, 2003: 158-163)
- (24가)의 ‘尸等’을 참고할 수 있음

(24) 乙等

가. 啓受使內乎所 有 事是▶乙等◀ 聖住寺住持 性照禪師中延 所志內乙仍于 判付是乎 狀內爲乎矣 <1378 長城監務官貼>

나. 逃亡遺漏奴婢及田畝 有去▶乙等◀ 現出爲乎 追乎 依大典 和會分執爲乎事 <1480 金光礪男妹 分衿文記>

- 연결어미 (23)과 달리 ‘ㄹ든’이 모두 표기되고 있음
- 시기적으로는 생략 표기라고 볼 수 있는 ‘等’이 먼저임
- (24나)는 (25)를 참고할 수 있음

(25) 去等

- 가. 東班是去等 九品 西班是▶去等◀ 校尉 爲等如 差備爲良於爲教矣 <1262 柳璥功臣錄券(尙書都官貼)>
- 나. 他餘子息等亦 爭望起云爲行▶去等◀ 此文字內事意乙用良 內外官司 辨別爲乎事是亦在 <1354 海南尹氏奴婢文書>
- 다. 覺眞國師門徒等乙 不動入院 完護衆作法祝上是在 味 出納爲臥乎事是▶去等◀ 右事須貼 <1357 白巖寺貼文 至正丁酉僧錄司貼文>
- 라. 有大功勞爲▶去等◀ 右功勞乙 大常旗良中 書上爲有臥乎 人 <1395 校訂大明律直解, 名例律, 【八議】>
- 마. 日數 滿足後 其蛾 自生爲▶去等◀ 其中 蛾亦 翼縮爲弥 <1415 養蠶經驗撮要>
- 바. 後次別爲所 有▶去等◀ 此文字內乙用良 辨正爲乎事是亦在 <1470-94 尹培許與文記>

- 15세기 한글 자료에 보이는 ‘더든’에 대응되는 표기는 보이지 않음
- 표기만 보아서는 ‘-르든’을 표기한 것인지? ‘-든’을 표기한 것인지? 알 수가 없음
- 표기와 문법화의 문제가 얽혀 있음

2.2.2.7. 중단

중단	5	6	7	8	9	10	11	12	13	14	15
如可									0	0	0

(26) 如可

- 가. 崔怡亦 承繼爲 專權擅命威福自持爲▶如可◀ 故後 庶子 崔沆亦 傳繼爲旆 <1262 柳璥功臣錄券(尙書都官貼)>
- 나. 令史色員亦 犯罪人矣 罪狀乙 故只 輕論放送爲有▶如可◀ 還執爲在乙良 減一等齊 <1395 校訂大明律直解, 名例律, 【應議者之父祖有犯】>
- 다. 互相連接不冬爲只爲 一一排置爲有▶如可◀ 日數滿足後 其蛾自生爲去等 <1415 養蠶經驗撮要>
- 라. 四寸孫 孝盧乙 繼後爲良結 說善爲▶如可◀ 未及繼後爲白乎等用良 <1480 金孝之妻黃氏繼後立案>

- 13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2.2.2.8. 대조

대조	5	6	7	8	9	10	11	12	13	14	15
而亦									0	0	0

(27) 而亦

가. 忠臣義士 所以推心是如在▶而亦◀ 累世 私門成黨 甲兵自衛爲有在乎 由以 垂垂掃蕩人員無如在乙
 <1262 柳璥功臣錄券(尙書都官貼)>

나. 上京爲乎在▶而亦◀ 持音文字及大帳ㄱ乙 □當敎是 <1387 張戡所志>

다. 本來理合重罪是在▶而亦◀ 犯時良中 知不得爲在乙良 凡人例乙 依准論爲乎矣 <1395 校訂大明律直解, 刑律, 【毆妻前夫之子】>

라. 蠶段 鄉俗所尙隨土 各異爲在▶而亦◀ 蠶薪內外 寒濕蒸熱 不冬爲只爲使內乎所 最爲切要
 <1415 養蠶經驗撮要>

- 역접의 뜻을 갖고 있음
- 이두학습서에서는 ‘마리여’로 읽고 있음²⁾

3. 어말어미 표기자의 시대별 사용 양상의 정리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설명	之	△	△	△	△	0	0	0	0	0	0	
	如					0					0	0
	也				△	0	0	0				
	矣					0		0		0		
	齊										0	0
	哉				0	0						
의문	(乙)去										0	
병렬	遣							0			0	0
	古										△	
	旡					0		0			0	0
나열	那					0						
	乃					0	0				0	0
원인1	良							0	0	0	0	0
	良尔									0	0	0
	尔					0						
	良只										0	
	乎									0	0	0
	于					0		0			0	0
원인2	乙							△				
	在乙							0			0	0
	去乙									0	0	0
원망	良結										0	0
조건	等									0	0	
	尸等										0	0
	去等									0	0	0
중단	如可									0	0	0
대조	而亦									0	0	0

• 전체

- 기존에 1단계 이두로 다루어져 왔던 시기인 8세기 전반까지는 한문의 영향이 보임(之,

2) ‘爲有在而亦’를 다음과 같이 읽고 있음. 하이트견마리여 《吏師, 集成》, 하이트견마리여 《羅麗, 吏文, 典律》, 하이트견말이여 《物譜》, 하이트견마리여 《吏便》

也, 哉)

- 기존에 제2단계 이두가 출발한 것으로 본 8세기 후반에 어말어미의 표기가 눈에 띄게 늘어남
- 13세기 후반이 이두 표기의 변화에 있어서 또 다른 변곡점
- 8세기 후반과 13세기 후반이 변곡점
- 종결어미
 - 8세기에 들어서 ‘如’, ‘矣’까지 가세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
 - 13세기 말에 내포문(如)을 제외하고는 ‘齊’로 굳어짐
 - 13세기 말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연결어미
 - 8세기 후반에서부터 비로소 표기가 이루어짐
 - 음차를 이용한 표기에서 시작
 - ‘遣’, ‘良’은 11세기부터 표기 시작
 - 종결어미와 마찬가지로 13세기 말이 변곡점임

■ 참고문헌 ■

- 권인한(2016), 『廣開土王碑文新研究』, 박문사.
- 김병준(2011),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39-84.
- 남풍현(2000), 『吏讀研究』, 태학사.
- 남풍현(2005), 「韓國의 古代吏讀文의 文末助詞 ‘之’에 대하여」, 『구결연구』 15, 5-28.
- 남풍현(2006), 「상고시대에 있어서 차자표기법의 발달」, 『구결연구』 16, 6-25.
- 남풍현 외(2020), 『이두사전』, 단국대학교출판부.
- 노명호(2011),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 校勘譯註 篇』, 서울대학교출판부.
- 노명호·이승재(2008),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譯註」,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基礎的 檢討』,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 박성종(2006), 『朝鮮初期 古文書 吏讀文 譯註』, 서울대학교출판부.
- 배대온(2016), 『吏讀用言의 活用語尾研究』, 형설출판사.
- 배대온(2002), 『吏讀文法素의 通時的研究』, 경상대학교출판부.
- 서중학(1995), 『吏讀의 歷史的 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 安秉禧(1992), 『國語史 研究』, 문학과 지성사.
- 양주동(1965), 『古歌研究』, 박문서관.
- 오창명(1995), 「朝鮮初期 吏讀의 國語學的 研究-古文書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재(1992),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 이기문(1981), 「吏讀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52: 65-78.
- 이 용(2003), 『연결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역락.
- 이 용(2006), 「광개토대왕비문의 이두적 요소」, 『口訣研究』 17, 71-89.
- 이 용(2016), 「문자언어로서 한국어의 발생과 발달에 관한 시론적 접근」, 『口訣研究』 37, 133-163.
- 이 용(2017), 「助詞 表記字로 본 吏讀의 變遷」, 『口訣研究』 38, 109-149.
- 정 광(2003), 「韓半島에서의 漢字의 受容과 借字表記의 變遷」, 『口訣研究』 11, 65-66.
- 홍기문(1957), 『리두 연구』, 평양: 과학원출판사.
-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79년 張某 漢陽府 奴婢許與斜給立案에 대한 考察

조남곤(고려대)

目 次

I. 서론
II. 문서의 형식
III. 판독

IV. 해독
V. 결론

I. 서론

본고의 목적은 1379년(우왕 5)에 漢陽府에서 발급한 許與斜給立案을 판독하고 그 해독을 통하여 문서의 특징과 문서에 나타난 이두의 용법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 고문서는 興海 裴氏 臨淵齋 宗家の 문서로 洪武 12년(1379)에 前 承奉郎 珍島郡事 張某가 勿金の 어머니인 之上에게 노비를 허여한 사실에 대하여 한양부에 所志³⁾를 올려 立案⁴⁾을 발급 받은 것이다. 이것을 처음 발굴한 학자는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南權熙 교수이다. 그는 2002년 3월에 발행된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에 이 자료를 처음 실어 학계에 알렸다. 이 문서는 현전하는 입안 문서 가운데 원본이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입안 문서이다.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입안 문서는 1354년 尹丹鶴奴婢許與斜給立案이지만 이 문서는 후손이 원본을 여덟 조각으로 나누어 책 형태로 배접함으로써 원본이 많이 변형되었다. 따라서 고려 말의 입안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바로 본고에서 소개하는 ‘1379년 張某 漢陽府 奴婢許與斜給立案’(이하 ‘張某 漢陽府 立案’으로 약칭)뿐이다. 이 문서는 문서학적으로뿐만 아니라 史料 면에서도 연구 가치가 크며, 고려 시대의 이두 형태와 용법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국어학 연구에도 유용한 자료이다. 또한 독특한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서 고려 시대 篆刻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張某 漢陽府 立案」에 대한 연구는 남권희 교수의 소개와 박하늘(2018, 2019)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박하늘(2018, 2019)도 이 고문서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張某 漢陽府 立案」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기술한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⁵⁾ 고려 시대 고문서로서 여러 면에서 연구 가치가 큰 이 문서가 그동안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전혀 생각지 못한 이유가 있다. 「張某 漢陽府 立案」을 남권희 교수가 처음 발굴하고 이를 『高麗時代 紀錄文化 研究』에 탈초·번역해 놓았는데 부정확하게 판독한 곳이 많고, 다섯 곳의 着官⁶⁾도 전혀 판독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본 문서의 그림[도27]과 ‘永樂 6年 粘連文記’의 그림[도29]이 서로 뒤바뀌어 배치되었고 본 문서의 입안에 있는 착관 그림은 누락되었다. 이 문서는 앞 부분의 입안 신청 소지가 거의 결락되어 있고 또 입안 부분과 착관이 난해한 초서로 되어 있어 판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와 같이 자료 소개마저 부실하고 부정확하므로 그동안 이 귀중한 문서에 대하여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대방가의 실수를 목도하면서 학문 연구의 어려움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선학의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나 엄밀한 방법으로 확실성 있는 일만을 해야 할 것이다.’⁷⁾

3) 所志는 양반이나 서리, 평·천민이 관청에 올리는 訴狀이나 請願書로서 白活[발괄]이라고도 한다. 최승희(1989: 306-307) 참조.

4) 立案은 조정이나 관아에서 발급하는 문서로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어떤 사실(매매·양도·결승·입후 등)을 확인하여 이를 인증(공증)해 주는 문서이다. 최승희(1989: 267) 참조.

5) 박하늘(2019: 123)에서 “최근 입안의 착관과 관인을 통해 이것이 1379년 한양부에서 발급한 문서임을 밝혀내었다”라고 하였기에 관련 논문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에 필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물어보았는데 논문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였고, 고문헌을 연구하는 모임인 영산고문헌연구회의 회지 『고문헌』에 의견을 밝혔다고 하였다. 『고문헌』 제7호의 실린 박하늘 씨의 글(원본 문서가 남아있는 최고의 사급입안 1379년 한양부 사급입안)은 5쪽 분량의 자료 소개 글인데 내용이 소략하고 추정 근거가 부정확하여 본고에서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루지 않는다.

6) 소지에 대한 처결 책임자를 적은 부분을 着官이라고 한다.

선행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은 연구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더 많은 용기와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II장에서는 「張某 漢陽府 立案」의 형태 정보를 간단하게 기술하고 이 문서의 형식과 구조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본 문서에 대해 命名하면서 고문서의 명칭 문제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남권희(2002)와 박하늘(2018, 2019)에서 잘못 판독한 부분을 바로 잡고 판독하지 못한 글자들에 대하여 實證的 方法으로 정밀하게 판독해 나갈 것이다. 정밀한 관찰과 비교·대조의 방법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피상적 추정에 의하여 원문의 글자를 판독하는 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결코 고문서 이두 연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실증을 통하여 고문서 이두문의 행초서자를 판독하는 방법은 이미 조남곤(2021)에서 시도된 바 있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草書 形態와 文理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문을 판독하는 방법은 본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만이 난해한 행초서로 되어 있는 고문서 이두문을 제대로 판독할 수 있고 올바른 해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IV장에서는 III장의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張某 漢陽府 立案」에 대한 해독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본고는 이를 통해 이 고문서에 사용된 이두 형태의 의미와 용법을 기술하고 이 문서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문서의 형식

「張某 漢陽府 立案」과 같은 사급입안의 양식과 발급 절차에 대해서는 최연숙(2005)와 박하늘(2018, 2019)에서 충분히 기술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문서의 현황, 형식과 명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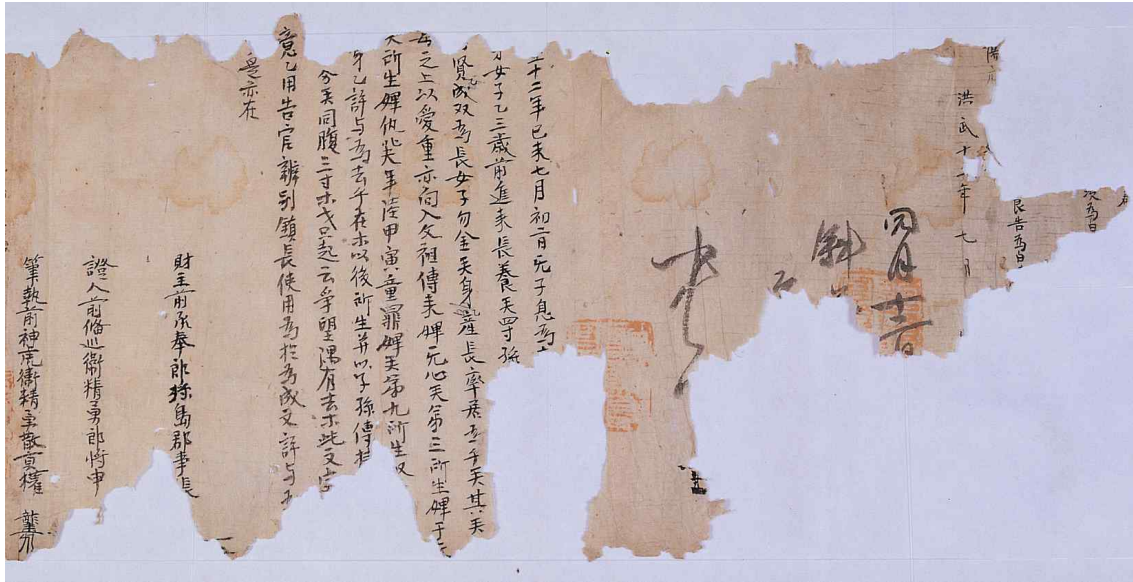
「張某 漢陽府 立案」은 원래 안동 도목 홍해 배씨 임연재 종가의 소장 문서였으나 지금은 한 고문서 도매상이 소유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이 문서는 오래 전에 다른 많은 고문서들과 함께 고문서 도매상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고, 최근에 안승준 선생님을 통해 원 문서가 여전히 고문서 도매상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문서는 지난 2002년에 촬영되었다. 장서각의 안승준 선생님이 고문서 도매상을 설득하여 고문서 도매상이 소유하고 있는 2천 2백여 점의 고문서들을 일주일 동안 장서각으로 옮겨 와 촬영하였다. 그러나 허락 받은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고문서들을 촬영하다 보니 각각의 고문서들에 대한 세부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張某 漢陽府 立案」의 경우에도 문서의 크기와 같은 기본적인 형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2년에 촬영한 원본 사진의 상태가 좋고, 이번에 이 문서 소유자가 최근에 찍은 사진(<그림 3>)⁸⁾을 안승준 선생님을 통해 볼 수 있어서 이 문서를 고찰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⁹⁾

7) 이기문(1991: 81) 참조.

8) 최근 사진을 보면 20년 전에 찍은 사진과 달리 남아 있던, 소지 첫 행의 郡의 君 자와 소지 5행의 陽府가 모두 결락되어 있다. 가치가 매우 높고 희귀한 고려 시대 고문서가 전문 기관에 의해 수집·관리되지 못하고 비전문가들에 의해 이렇게 훼손되어 가도 되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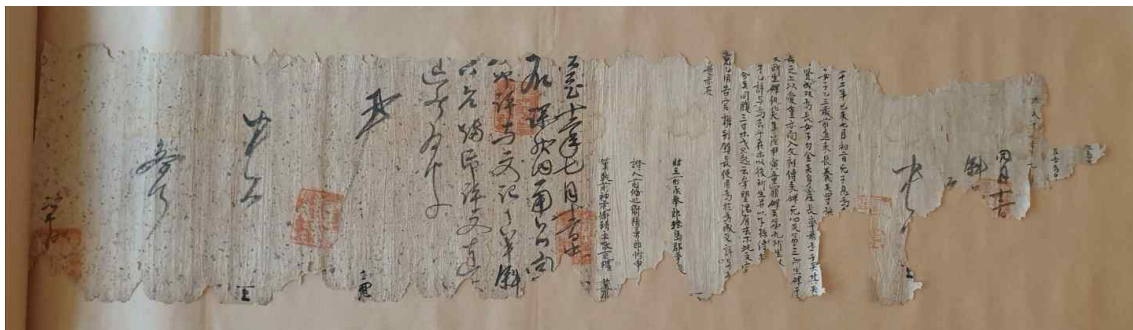
9)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귀중한 정보를 알려 주신 안승준 선생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림 1> 「張某 漢陽府 立案」의 所志와 許與文記(2002년 촬영 사진)



<그림 47> 「張某 漢陽府 立案」의 典議(2002년 촬영 사진)



<그림 48> 「張某 漢陽府 立案」(2022년 촬영 사진)

이 문서의 보존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지 않다. 입안 신청 소지는 마지막 행을 제외하고는 결락이 심하고, 소지의 끝에 적은 題音[데깁]¹⁰⁾의 경우는 가운뎃부분과 아랫부분이 떨

어저 없어졌다. 또한 許與文記¹¹⁾의 윗부분과 첫 두 행의 중간 이하 부분이 결락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여덟 번째 행까지는 아랫부분이 결락되었다. 그러나 전의의 경우에는 아래 부분의 두어 글자만 결락되었을 뿐 대체로 원문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 문서의 내용 파악에 크게 유용하다.

고문서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서 양식의 기본 요소인 발급자와 수취자 그리고 작성 연대와 문서 發受의 목적을 확인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문서의 형식과 구조, 나아가 문서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이 문서는 立案 申請 所志, 許與文記, 典議¹³⁾가 발급 당시의 상태대로 차례로 점련되어 있는 문서이다. 소지와 전의에 기록된 연호와 연월 표기로 볼 때, 1379년(우왕 5)에 발급된 입안 문서이다. 문서의 발급처는 漢陽府¹⁴⁾이고 수취자는 財主이자 소지의 제출자인 前 珍島郡事 張某이다.

발급자와 수취자, 작성 연대, 그리고 문서의 점련 형태(입안 신청 소지-허여 문기-전의)로 보아 이 문서는 고려 말인 1379년(우왕 5)에 전 진도 군사 장 아무개가 勿金의 어머니인 之上에게 노비 2구를 허여하고 입안 신청 소지에 허여 문기를 점련하여 관할 官인 한양부에 제출하여 이를 증명 받은 문서이다. 따라서 이 문서의 명칭은 ‘1379년 張某 漢陽府 奴婢許與斜給立案’으로 命名할 수 있다.

고문서의 명칭은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문서의 대한 명칭은 일반적으로 ‘작성 연대+수취자+발급관+문서 유형+문서 종류’로 구성된다. 물론 약칭을 쓸 수 있고 일부 구성 요소를 생략할 수도 있으나 제목과 같이 문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어 보여야 하는 곳에서는 문서명의 구성 요소를 모두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다. 문서명에 작성 연대를 표기하는 이유는 발급 관청에서 같은 해에 같은 종류의 공문서를 여러 건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문서를 조사하다 보면 이런 예가 종종 보인다. 문서의 종류명 앞에 문서 유형을 명기해야 하는 이유는 문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立案과 같은 종류의 고문서의 명칭을 한자로 적어야 하는 것은 한글로 적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同音으로 인한 語彙的 重義性(lexical ambiguity)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가령 「張某 漢陽府 立案」의 張某를 한글로 적게 되면 이 말은 ‘장 아무개’로 해석될 수도 있고 ‘丈母’로도 해석될 수 있게 되어 의미 이해에 지장을 준다. 또한 漢陽府를 한글로 적게 되면 이것이 관청의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분명히 알 수 없게 되어 문서의 실체와 본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斜給이나 立案, 明文과 같은 명칭도 동음으로 인한 중의성을 야기할 수 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제각기 그것의 본질에 맞는 명칭이 있으며 그것의 본질에 맞는 명칭을 부여할 때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고문서의 명칭을 정할 때도 고문서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즉 그 본질과 특성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정확한 명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 문서에는 官印이 적색 장방형으로 모두 여섯 개가 찍혀 있다. 점련처 세 곳에 하나씩 찍혀 있고 題音과 典議에 각각 한 번 그리고 典議를 작성한 吏屬의 직명인 記官에 한 번 찍

10) 題音[데깁]은 官에서 백성의 소지나 청원서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를 내리던 글발로 題辭라고도 한다.

11) 이 사급 입안에 점련된 허여 문기는 別給文記의 일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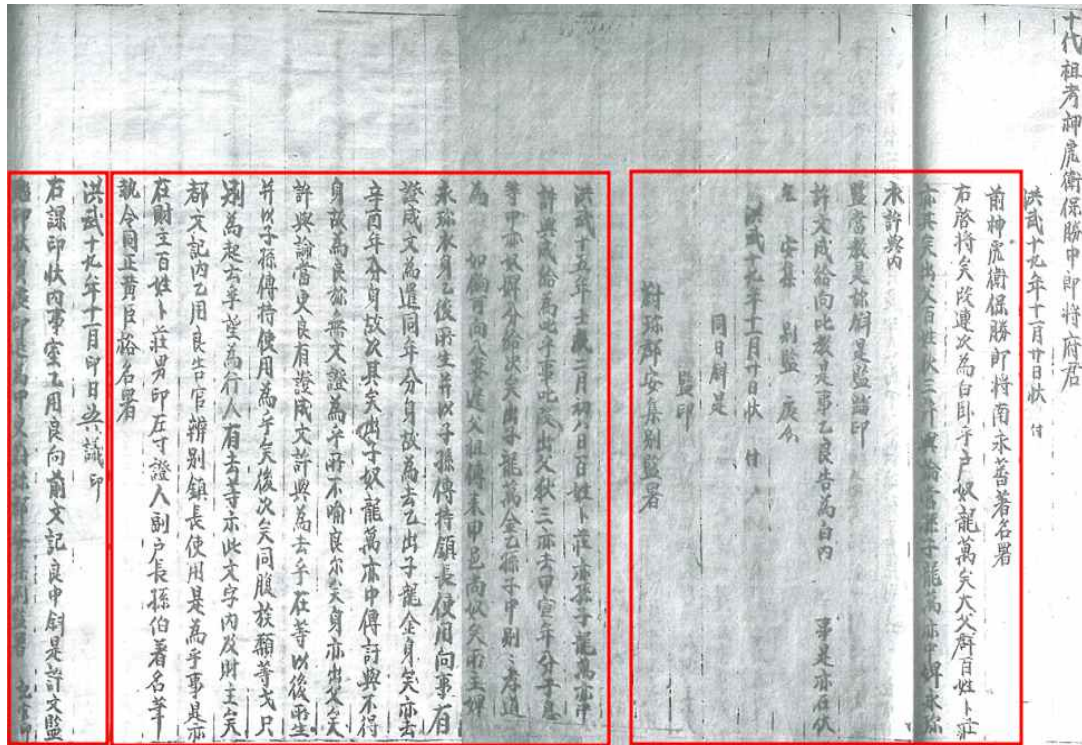
12) 이에 대해서는 박성호 외(2020: 103-107)을 참조할 것.

13) 고려시대에는 立案을 典議라고도 불렀다.

14) 漢陽府는 南京留守官의 후신이다. 충렬왕 34년(1308)에 충선왕이 고쳤다. 문서 발급처가 漢陽府라는 사실은 3장 판독에서 밝힐 것이다.

혀 있다.

고려 시대의 입안 문서는 이 문서와 1354년 尹丹鶴 耽津縣 奴婢許與斜給立案(이하 「尹丹鶴 耽津縣 立案」으로 약칭), 1386년 南永蕃 蔚珍郡 奴婢許與斜給立案(이하 「南永蕃 蔚珍郡 立案」) 등 모두 세 건이 전하는데 이 가운데 이 문서와 「南永蕃 蔚珍郡 立案」은 ‘소지-허여 문기-전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尹丹鶴 耽津縣 立案」은 ‘소지-허여 문기-증필인의 소지-전의’¹⁵⁾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9> 「南永蕃 蔚珍郡 立案」



<그림 5> 「尹丹鶴 耽津縣 立案」

「尹丹鶴 耽津縣 立案」의 증필인 소지는 소지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조선 시대의 招辭¹⁶⁾와 같이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조선 시대의 일반적인

15) 후손이 8조각으로 나누어 배접한 순서가 아니라 원래 점려된 문서의 순서이다.

16) 招辭는 관에서 재주나 증필 등 관계인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는 신문을 하고 받은 진술, 혹은 그 진술을 기록한 것이다. 供招라고도 한다.

사급입안의 서식은 ‘所志-許與文記·明文-招辭(倣音·條目)-立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尹丹鶴 耽津縣 立案」의 증필인의 소지는 증필인이 직접 재주의 노비 허여 사실을 소지의 형식으로 작성해 관에 제출한 것이므로 관에서 재주나 증필 등 관계인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는 신문을 하고 받는 진술인 조사와는 다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하늘(2018: 50-51)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 세 건의 고려 시대 입안 형식을 보면 고려 시대에는 입안 발급 시 증필인의 진술 문서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것은 입안 발급 시 증필인의 사실 확인 진술을 반드시 갖추어야 했던 조선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인데 이는 고려 말에 입안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고려 시대에 관에서 청원인에게 사급입안을 발급해 줄 때, 증인과 필집에게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증인과 필집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판독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서를 학계에 처음 소개한 것은 남권희(2002)에서이다. 그러나 남권희(2002)는 판독에 오류가 적지 않고 아예 손대지 못한 부분도 많아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권희(2002)에서 잘못 판독한 부분을 바로잡고 아직 판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초서 형태와 문리를 고려하여 실증적 방법으로 원문을 판독해 나가 고자 한다.¹⁷⁾ 또한 官印의 篆書 印文에 대해서도 실증을 통해 그 내용을 밝혀 볼 것이다. 이 문서의 관인은 문서의 발급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며 또한 고려 말의 정치·사회상의 일면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먼저 데김의 세 번째 행에 윗부분만 보이는 글자는 監의 초서자로 보인다. 글자 형태로 볼 때 초서자 監의 윗부분과 모양이 비슷하고(<그림 6> 참조), 이 입안이 발급되고 나서 7년 뒤에 울진군에서 발급된 「남영변 울진군 입안」에도 斜是¹⁸⁾ 뒤에 監印이 이어지기 때문이다(<그림 4> 참조).

남권희(2002)에서는 이 문서의 데김에 나타나 있는 着官을 查로 판독하였는데

이 부분은 소지에 대한 처결 책임자의 관직명을 적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아래 着押이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착관과 착압은 점려된 전의의 7행에 있는 것과



<그림 6> 초서자 監의 비교

17) 판독 시 결락된 글자의 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고, 결락된 글자의 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로 표기하기로 한다. 또한 결락된 글자를 형태와 문리에 근거하여 분명히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그 글자를 적어 넣고, 추정한 글자가 확실치 않으면 □ 뒤의 () 안에 기입하기로 한다.

18) 斜是는 斜只와 같다.

도 일치한다. 이 착관은 判官이라는 두 글자를 省略의 기법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생략의 기법은 「修禪社主乃老宣傳消息」(1281)에 나타나 있는 조인규의 필체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심영환(2007)에 따르면 고려 시대의 초서는 王羲之의 『十七帖』과 智永의 『真草千字文』의 영향을 받았으나 고려 시대 사급입안에 나타나는 초서는 정확한 결구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麗末鮮初의 사급입안의 초서체는 略體나 省劃 등의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²⁰⁾ 이 문서의 데깁에 보이는 判官의 判 자는 <그림 7>과 같이 判의 행서나 초서자의 일부 획만을 취해 적은 것이며 官 자 역시 <그림 8>과 같이 초서자의 일부 획을 줄여 쓴 글자이다. 이와 같이 형태 비교를 통하여 우리는 데깁의 착관과 전의의 7행의 착관에 보이는 초서가 判官임을 알게 되었다.



<그림 7> 초서자 判의 비교

남권희(2002)에서 허여 문기의 제8행의 첫 글자를 竟으로 판독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 이 글자는 意로 판독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 쓰인 意는 ‘글이나 말의 내용’을 의미하는 辭意의 意이다. 8행의 끝부분에 표기된 許與 다음의 이지러진 글자를 남권희(2002)에서는 ‘五’자로 판독하였는데 이는 문리로 보아 ‘圖[乎事]’로 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爲乎事是亦在/호은일이여건’은 결사 부분에 자주 나타나는 투식 표현이다.



<그림 8> 초서자 官의 비교

허여 문기 안의 재주의 착명 서압 부분을 보면 財主 張 아무개는 知珍島郡事를 지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남권희(2002)에서는 珍을 將으로 판독하였는데 여기서 사용된 글자는 珍 이외의 다른 글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證人 뒤의 前을 典으로 판독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 또한 筆執의 姓인 權 뒤에는 그의 이름자인 ‘龍圭’를 변형한 착명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署押]이 아니라 [着名 署押]이라고 판독해야 할 것이다.

박하늘(2018)에서는 허여 문기의 財主의 姓氏를 裴로 오독하였다. 박하늘(2019: 123)에서도 이 문서를 ‘裴가 자신의 수양녀에게 노비를 허여한 사실을 공증한 허여사급입안’이라고 잘못 기술하였다. 해당 한자는 그 형태로 보아 張으로 판독하는 것이 옳다. 允踏印을 監踏印으로, 向事を 爲乙事로 읽은 것도 문제다. 전자는 문맥보다는 형태를 고려하여 판독해야 하고, 후자는 형태와 문맥을 모두 고려하여 판독해야 한다. 踏印의 위쪽 글자는 監보다는 오히려 습에 가까우나 습은 획이 하나 부족하다. 退者 밑의 글자를 向事が 아니라 爲乙

19) 判의 이미지는 장서각 한국고문서자료관에서 가져왔다.

20) 심영환(2007)에 「張某 漢陽府 立案」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아마도 당시에 이미 「張某 漢陽府 立案」이 공개된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21) 官의 이미지는 장서각 한국고문서자료관에서 가져왔다.

事로 읽으면 의미 연결이 부자연스러워진다. 이에 대해서는 4장 해독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하자.

입안의 첫 행 끝부분에는 典議를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日 뒤에 아래 획이 이지러진 글자는 典의 초서자의 윗부분과 가운데부분의 조각이기 때문이다.

2행의 婢 다음 글자를 詳으로 판독한 것은 課의 오독으로 보인다. 詳의 결구는 2행의 그것과 같지 않다. 여기의 課는 다음 글자인 狀과 함께 쓰여 신청하는 글 곧 所志라는 뜻으로 쓰인다. 踏印 다음의 초서자는 許 자로 보는 것이 좋다. 4행의 마지막 글자는 앞의 連 자로 미루어 次가 올 자리로 생각된다. 連次는 ‘이어지다’, ‘점련하다’의 뜻으로 해석된다.²²⁾

남권희(2002)는 5행의 退 자 뒤부터 9행의 마지막 글자 官 앞까지의 아홉 글자를 전혀 판독하지 못하였다. 退 뒤의 글자는 者의 正草이고 그 뒤는 向事로 보인다.

작관 부분에는 모두 세 명의 관리와 한 명의 향리가 서명을 하였는데 그것은 차례로 尹, 判官, 叅軍²³⁾, 記官으로 판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尹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글자이니 문제 될 것이 없고, 判官은 앞에서 판독하였다. 이 문서 맨 끝에 관인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두 글자 記官 역시 판독이 아주 어려운 글자는 아니다. 세 번째 작관의 첫 글자는 초서 형태만을 보아 서도 叅 자가 확실하다. 문제는 叅의 아래에 위치한 글자이다. 叅은 비슷한 용례가 있기 때문에 판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그 아래 글자는 軍 자로 보기가 쉽지 않다. 이 글자는 초서 형태로는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官印과 사료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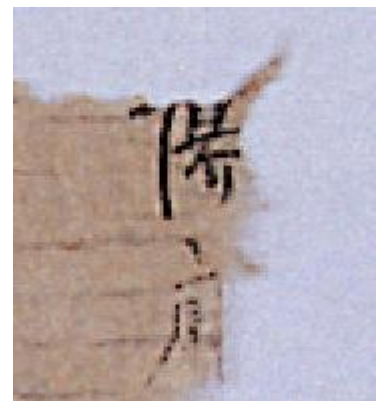
<그림 10>은 입안 신청 소지 5행에 보이는 ‘陽府’이다. 이 부분은 문서 수취자의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 중 일부인데 문서 수취자의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은 대개 ‘官府名+處分’이나 ‘官職名+處分’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이 문서의 판독을 통해서 이 문서의 작성 연대를 확인하였고, 작관 내용이 尹, 判官, 叅○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처결 담당



<그림 9> 초서자 典의 비교



<그림 10> 초서자 叅의 비교



<그림 11> 소지에 보이는 陽府

22) 노명호 외(2000: 126)에서는 連次를 粘連과 같은 뜻의 용어로 보았다.

23) 叅軍은 司錄叅軍事의 준말이다.

자들이 다스리는 관부가 ‘○陽府’라는 것도 파악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사료에서 정답을 찾거나 官印을 판독하는 것이다.

『高麗史』에 따르면 충렬왕 34년(1308) 7월에 왕이 죽고 이 해 8월에 충선왕이 복위하자 충선왕은 원나라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관제를 변경하여²⁴⁾ 京을 府로 강등시켰고²⁵⁾ 尹, 判官, 司錄(叅軍)을 두었다. 이에 따라 開京은 開城府로, 西京은 平壤府로, 東京은 鷄林府로 그리고 지금의 서울인 南京은 漢陽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공민왕 5년(1356)의 반원 개혁정치에 의해 다시 府가 京으로 환원되었다가 왕 11년(1362)에 다시 府로 되돌렸다.

이 문서는 1379년에 ‘○陽府’의 尹, 判官 등 네 명의 관원의 서명을 거쳐 발급된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 말에 府尹이 官의 으뜸 벼슬인 관청은 이전에 京이었던 곳 중에 하나일 테고 그곳은 위에서 기술한 開城府, 平壤府, 鷄林府 그리고 漢陽府 가운데 하나일 것인데 이 가운데 관부명에 陽 자가 있는 관부는 漢陽府뿐이므로 이 사급입안의 발급 관청은 漢陽府일 것이다.

다음은 관인을 통해 발급자를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자. 관인의 印文을 판독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문서의 발급자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서론의 주석 3에서 언급하였듯이 착관과 관인을 통해 이 문서가 한양부에서 발급한 문서라는 것을 처음 주장한 연구자는 박하늘 씨이다. 그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이 문서의 관인의 인문이 ‘南京留守官之記’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였다. 박하늘 씨의 주장과 같이 이 문서의 관인의 인문은 ‘南京留守官之記’가 맞다.²⁶⁾ 신진 연구자의 진리 탐구에 대한 열정에 존경을 표하고 싶다. 그러나 박하늘 씨가 제시한 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 문서의 인문과 결구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만 맞혔을 뿐, 그 정답의 근거로 제시한 篆書의 형태는 모두 부정확했다. 엄밀한 태도로 전서자의 형태를 實證하지 못하고 단순한 추정으로 결과를 얻은 탓이다. 또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림의 출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다음 그림은 원 문서의 관인의 인문과 박하늘 씨가 제시한 인문 그리고 본고에서 제시하는 인문을 대비해 놓은 것이다. 독자들이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가운데에 원 문서의 관인을 두고, 그 왼쪽에는 박하늘 씨가 제시한 전서 형태, 그 오른쪽에는 본고에서 제시한 전서 형태를 배치하였다.

24) 諸衙門, 隨時沿革, 不拘一體. 況本國, 官多虛設, 名存實少, 今商酌時便, 或併或省, 宜加勤恪, 各供爾職(『高麗史』 권33 世家 충선왕 복위년 11월 16일).

25) 그렇지만 읍격의 서열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고려 전기에 縣 → 知州府郡 → 都護府 → 牧·大都護府 → 京으로 이어지는 읍격의 서열이 충선왕대 지방제도의 개편 이후로 縣 → 知州郡 → 知府 → 牧 → 府(尹)으로 조정되고 읍격에 부합하는 외관이 파견됨으로써 그에 따른 서열체계가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최동녕(2017: 58) 참조.

26) 留 자는 본자인 畱 자를 썼다.

		
<그림 12> 박하늘 씨가 제시한 전서 형태	<그림 13> 「張某 漢陽府 立案」의 官印	<그림 14> 본고에서 제시하는 전서 형태

본고에서 제시한 전서 그림은 중국 貴州教育出版社에서 펴낸 『中國篆刻大字典』에서 인용한 것이다. 오른쪽 맨 위의 그림은 清代의 전각가인 趙之琛이 쓴 南 자로 「張某 漢陽府立案」에 보이는 인문의 첫 글자와 결구가 거의 일치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南 자 바로 아래에 있는 한자는 京의 전서로 중국 宋代의 印이다. 「張某 漢陽府立案」과 전서의 양쪽 맨 아래 획이 더 구부러져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형태가 거의 같다.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글자는 留의 본자인 畱로 趙之琛이 쓴 전서자이다. 이 사급입안에 쓰인 전서자와 형태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글자는 守의 古印인데 역시 결구가 거의 같다. 왼쪽 칸의 맨 위 글자는 官의 전서로 曹魏의 印이다. 맨 아래쪽의 양편이 열려 있는 모양도 「張某 漢陽府立案」의 그것과 일치한다. 왼쪽 칸의 가운데에 있는 글자는 之의 전서자로 唐의 官印이다. 이 문서의 之 자는 당의 관인과 획이 시작되는 방향이 서로 일치하며 결구도 거의 같다. 조해명(2004: 67)은 수당 시대의 관인의 특징으로 크기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고, 수대의 관인과 달리 당나라의 관인은 之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당나라 때에 비로소 記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하였다고 기술하였다. ‘印章’을 뜻하는 記 자는 바로 뒤에 나온다. 이로 보아 고려 시대의 관인이 당의 관인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記의 전서자는 매우 다양해서 한 가지로 나타내기 어렵다. 대체로 본고에서 제시한 글자나 박하늘 씨가 제시한 글자가 많이 쓰이는데 이 문서의 마지막 전서자는 이 두 글자와 결구의 전체적인 틀은 같으나 세부적으로는 같지 않다. 특히 글자의 오른쪽 부분은 己 자를 위아래로 두 번 연결해 쓴 것 같은 형태인데 이러한 결구 모양은 전각대사전에서도 볼 수 없는 글자이다. 아마도 오른쪽의 네 글자와 왼쪽의 세 글자의 길이를 맞추려고 記의 상용 글자를 길게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實證的 분석을 통해서 「張某 漢陽府立案」의 인문 내용이 ‘南京畱守官之記’임을 확인하였다. 남경유수관은 한양부의 전대 명칭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렬왕 34년(1308) 7월에 왕이 죽자 이 해 8월에 복위한 충선왕이 기존의 관제를 변경하여 京을 府로 강등시켰는데 이때 남경유수관은 한양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관인 분석을 통해 이제 우리는 이 사급입안이 漢陽府에서 발급한 문서라는 사실을 더 확

실히 알게 되었다.²⁷⁾

본고에서 판독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所志]

- 01 [] 圖 []
- 02 [] 次爲白 []
- 03 []
- 04 [] 良告爲白 []
- 05 國陽府□(尹)圖
- 06 洪武十二年七月回國²⁸⁾

[題音]

- 07 同月十二日
- 08 斜只
- 09 圖 []
- 10 判官(着押)

[許與文記]

- 11 國國十二年己未七月初二日无子息爲 []
- 12 因女子乙三歲前進來長養矣四寸孫 []
- 13 □賢乙²⁹⁾成双爲長女子勿金矣身乙³⁰⁾產長率居爲乎矣其矣□
- 14 母之上以愛重亦向入父祖傳來婢无心矣第三所生婢于□(矣)
- 15 因所生婢仇叱夫年陸甲寅童鼎婢矣第九所生奴 []
- 16 因身乙許与爲去乎在 ㄱ 以後所生并以子孫傳持 []
- 17 □(萬)分矣同腹三寸 ㄱ 戈只起云爭望隅有去等此文字因
- 18 意乙用告官辨別鎮長使用爲於爲成文許与爲
- 19 圖是亦在
- 20 財主前承奉郎珍島郡事張□□(着名署押)
- 21 證人前備巡衛精勇郎將申□□(着名署押)
- 22 筆執前神虎衛精勇散員權(着名署押. 名:龍圭)

[典議]

- 23 洪武十二年七月十二日國
- 24 右課狀內乙用良向圖
- 25 國婢許与文記良中斜

27) 1379년, 한양부에서 입안 발급에 ‘南京留守官之記’를 사용한 이유가 궁금하고 흥미롭다. 그러나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료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 기회로 미룬다.

28) 결락된 한자어가 所志일 수도 있다.

29) 賢과 成 사이에 조그맣게 乙을 끼워 넣었다.

30) 身과 產 사이에 조그맣게 乙을 끼워 넣었다.

26 只允踏印許文連因

27 退者向事

28 尹(着押)

29 判官(着押)

30 叅圍

31 記官

IV. 해독

위의 판독 결과를 구절에 따라 해독하면서 이 문서의 어학적 특징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고찰해 보겠다. 각 문장은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단어별로 띄어 쓰되 한문구인 경우에는 붙여 적기로 한다. 밑줄은 이두를 표시한 것이다.

1) [] 圖 []

첫 행은 始面이다. 입안 신청 소지의 시면에는 일반적으로 신분, 성명, 착명 등 신청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다. 이 문서에서도 신청자에 대한 정보가 적혔을 것이다. 이는 1행에 부분적으로 보이는 郡자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1행의 결락된 내용은 ‘前 承奉郎 珍島郡事 張 着名(署押)’ 정도로 추정된다. 1)은 ‘…(진도) 군(사)…’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 次爲白 []

본 문서의 2행은 次爲白만 보인다. 2행은 소지의 기두어가 제시되고 이어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張某 漢陽府 立案」은 비슷한 시기에 발급된 「南永蕃 蔚珍郡 立案」과 내용과 형태 면에서 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다. 「南永蕃 蔚珍郡 立案」의 소지에서는 ‘右 啓將³¹⁾矣段’이 기두어로 쓰였고 이어 ‘連次爲白卧乎 戶奴 龍萬矣…’와 같이 본문이 시작된다. 우리는 「南永蕃 蔚珍郡 立案」의 소지 본문 시작 부분과 본 문서 2행의 次爲白이 같은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문서의 소지 2행의 기두어와 본문 시작 부분의 내용도 「南永蕃 蔚珍郡 立案」와 같이 ‘右 啓狀矣段 連次爲白卧乎’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2행의 ‘爲-/히-’는 동사 어간 혹은 동사파생접미사로 볼 수 있고 ‘-白-’은 동사 어간 뒤에서 검양법 선어말어미로 기능한다. 2)는 ‘이어지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3행은 모두 결락된 부분이라 내용을 추정하기 어렵다.

3) [] 良 告爲白 []

31) 將은 소지의 다른 표현인 狀을 잘못 쓴 것이다. 「南永蕃 蔚珍郡 立案」은 원 문서가 아니라 전사 자료인데 잘못 전사한 글자가 여러 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문서를 연구할 때, 전사 자료는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4행 역시 「南永蕃 蔚珍郡 立案」의 6행과 일치한다. 「南永蕃 蔚珍郡 立案」 6행은 ‘許文成給向叱教是事乙良告爲白內圖圖事是亦在’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4행의 良은 이두의 보조사 ‘-乙良/-으란’의 일부이고 告爲白은 ‘告爲白內卧乎/ㅎ옴아누온’의 일부로 보인다. 3)은 ‘...을 고하(는)’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國陽府□(尹) 國圖

이것은 소지의 본문(결사)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문서 수취자의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소지의 수취자를 기재하는 곳에는 官의 명칭을 적기도 하고 수령을 적기도 하였다. 고려 말의 다른 두 사급입안에는 모두 수령을 적었다. 따라서 4)는 ‘한양부윤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5) 洪武 十二年 七月 回 國

소지 작성일과 所志(혹은 狀)라는 문서 종류를 적는 부분이다. 洪武는 중국 명나라의 제1대 황제 太祖의 연호이고 홍무 12년은 1379년이다. 狀은 ‘소지의 한문식 표현’(박병호, 1996: 620)으로 고려 시대에 소지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다. 5)는 ‘홍무 12년 7월 일(장)’으로 해석한다.

6) 同月 十二日 回 斜只 圖[] 判官 (着押)

입안 발급을 결정하는 題音이다. 同月 十二日是 청원인이 제출한 증빙 문서를 인증한 날 짜이며 付는 ‘부로’의 뜻이다. 박재우(2006)에서는 여기에 쓰인 付를 ‘소지의 접수 날짜’로 보았다. 결정‘斜只-/빋기-’는 ‘인증하다’나 ‘확인하다’의 뜻을 지닌 동사류 이두이나 간혹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監 뒤는 踏印이 있어야 할 자리이다. 6)은 ‘같은 달 12일 부로 살펴 인증하고 도장을 찍음. 판관 (착압)’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7) 國圖 十二年 己未 七月 初二日

이 부분은 별급 문기의 첫머리이다. 재주가 특정인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분재 방식을 別給이라고 하는데 이 문기가 바로 별급 문기에 해당한다. 별급 문기의 대부분은 연호와 연월일로 시작된다. 十二年 위에 연호가 결락되었지만 앞의 소지 6행에 나타나 있는 소지 작성일을 통해 연호를 추정할 수 있다. 7)은 ‘홍무 12년(1379) 기미 7월 초2일’로 해석한다.

8) 无子息爲[] 回女子乙 三歲前 進來長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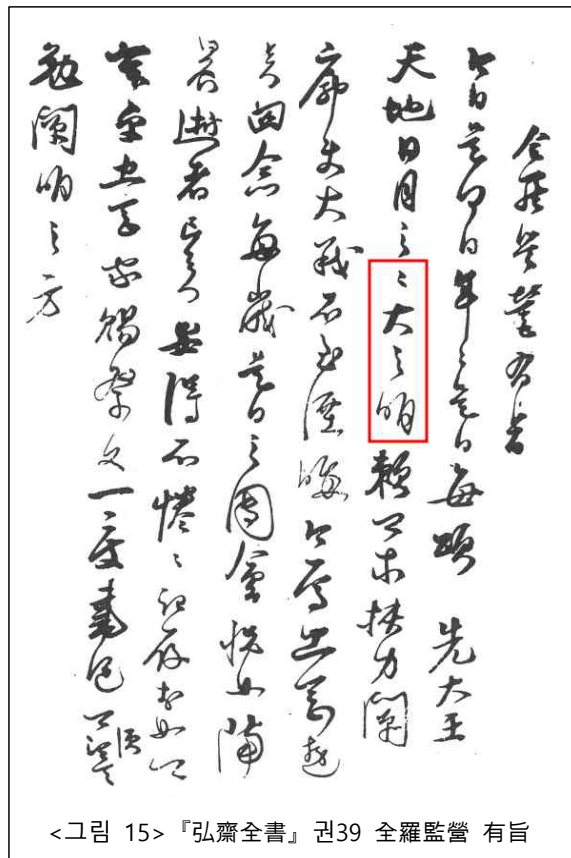
문리로 보아 无子息 뒤에는 ‘爲乎 ㄸ用良/ㅎ온들쓰어...’ 정도가 나타날 수 있다. 고문서에 쓰인 女子라는 말은 대개 ‘딸’이나 ‘딸자식’을 의미한다. ‘-乙/-를’은 대격 조사의 기능을 하는 이두이다. 8)은 ‘자식이 없는 까닭으로 □촌 딸을 3세 전에 데리고 와 길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9) 矣 四寸孫[] □賢乙 成双爲 長女子 勿金矣 身乙 產長率居爲乎矣

‘矣/의’는 1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이두어로 문맥에 따라 ‘나’나 ‘저’로 해석한다. 成双은 ‘쌍을 만들어 주다’, ‘짝을 만들어 주다’ 정도로 해석되는 한자어이다. 長女子는 ‘큰딸’을 의미한다. 남권희(2002)에서는 成双爲長女子를 ‘같이 키운’으로 해석하였다. 矣는 속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勿金 뒤의 矣가 그것이다. 속격의 矣는 麗末鮮初까지는 자주 출현하였는데 이후로는 점점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다. 身은 명사류 이두로 ‘몸’으로 읽는다. ‘-乎矣/-오디’는 ‘전제’를 나타내는데 현대어로는 ‘-되’나 ‘-는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두에서 ‘전제’를 나타내는 이두토는 이외에도 더 있다. ‘-去(乙)ホ/-거(ㄷ)’은 ‘-乎矣/-오디’와 의미 기능이 거의 같고, ‘-如乎/-다운’도 ‘전제’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석은 ‘-였는데’ 정도로 하면 된다. 9)는 ‘나의 사촌 손(자) □현을 짝을 이루게 하여 큰딸 물금을 낳아 길러 데리고 살았는데’ 정도로 해석된다.

10) 其矣 □母 之上以 愛重亦 向入

‘其矣/그의’는 대명사와 속격 조사의 결합형으로 뒤의 □母를 수식한다. □母의 □에는 出, 生, 親과 같은 한자가 쓰일 수 있는 환경이지만 정확히 어떤 글자가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之上은 勿金을 어머니이다. 이는 문맥으로 보아 주격의 기능을 하는 조사류 이두로 생각된다. 이가 주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는 대체로 기관이나 행정 단위 명사 뒤에서이나 이가 주격으로 기능하는 표기에 쓰였다는 점은 이미 이승재(1992: 116)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승재(1992: 116)에서는 「修禪社主乃老宣傳消息」의 4행의 ‘主掌都官以’와 張戡所志의 2행의 ‘矣身以’의 예로써 이가 주격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므로 고유명사 之上의 뒤에 쓰인 以도 주격 조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가 개인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결합되어 주격의 기능을 하는 예는 드물기 때문에 예외로 보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다. 그러면 之上 뒤의 以를 주격 조사가 아니라 구격 조사로 볼 가능성은 없을까? 之는 至(이르다, 도달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之上은 至上 곧 最上과 의미가 같다. 현대국어에서는 ‘지상으로’의 꼴로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 말이 正祖의 문집인 『弘齋全書』에도 사용되었다. 정조가 우의정 김종수 및 전라 감사 정민시에게 각각 유시(諭示)하는 글에 한 번씩 나타나 있다. 아래는 원문을 제시하고 탈초·번역한 것이다.



<그림 15> 『弘齋全書』 권39 全羅監營 有旨

- 1 全羅監營有旨ハ
- 2 今日是何日(ハ)叱ロ 年年是日ハ 每頌 先大王
- 3 天地日月之之大之明イヤ 賴卿等挾力闡
- 4 廓ッフ 使大義 不至湮晦ハ 今焉忠憲ハ 逝
- 5 矣ヲ 回念每歲是日之團會ハ 悅如隔
- 6 晨ハ 逝者ハ 已矣ヲ 安得不惓惓記存於如卿
- 7 輩乎何 忠憲家ハ 賜イハ 祭文一度ハ 書送ッヒ 卿須益
- 8 勉闡明之方ッハ

전라감영 유지이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해마다 이날이면 언제나 선대왕의 천지 일월같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밝으심**을 송축하였는데 경들이 협력하여 크게 밝힌 일에 힘입어서 대의가 인멸되어 없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제 충헌이 서거하였다만 돌이켜 생각건대 매년 이 날에 단란하게 모인 일이 마치 어제 일과 같다. 영영 떠난 사람은 그만이지만 어찌 경과 같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기억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충헌의 집에 내린 제문 한 통을 써서 보내니 경은 마땅히 더욱 밝힐 방도에 힘써라.

위와 같이 之 자는 至(이르다, 도달하다, 지극히)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므로 之上以는 ‘지상으로’, ‘최상으로’, ‘가장’의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지상으로’로 해석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愛重亦(애중히) 向入(생각하여)’와도 의미적, 문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나 문제는 至의 뜻으로 쓰인 之의 예를 더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之가 ‘이르다, 도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뜻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데 왜 이러한 뜻으로 쓰인 之의 용례는 더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단 之上以의 以를 주격 조사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명사 愛重 뒤에 쓰인 ‘-亦/-히’는 부사과생접미사로 볼 수 있다. ‘向入-/앗들(어)’는 ‘생각하여’ 정도의 뜻을 지닌 이두어이다. ‘向入-’의 ‘向-’은 조선 후기 학습서에서 ‘앗, 아, 아안’ 등으로 읽고 있는데 오창명(1995: 311)에서는 『南宗通紀』의 고려말 노비문서에 쓰인 ‘威給 向叱教是 事’를 근거로 들어 ‘向-’의 독음을 ‘앗-, 앓-’으로 추정한 바 있다. 특이한 점은 ‘向入-’에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점이다. 16세기 고문서에 ‘向入良’이 두 번, 대명률직해에 ‘向入在乙良’이 한 번 쓰였을 뿐이다.³²⁾ 10)은 ‘그의 친모 지상이 사랑스럽고 소중히 생각하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11) 父祖傳來 婢 无心矣 第三所生 婢 于□ 因所生 婢 仇叱夫 年 陸 甲寅 童鼎 婢矣 第九所生 奴□□□□ 園身乙 許与爲去乎 在 ㅅ이

父祖는 조상을 뜻하는 말이다. 仇叱夫는 노비명으로 ‘긋부’ 혹은 ‘국부’로 읽을 수 있겠다. 叱이 사람 이름에 쓰이면 ‘ㅅ’이나 ‘ㄱ’으로 실현된다. 婢童鼎을 童鼎婢로 바꿔 썼다. 이런 예가 분재기에 종종 나타난다. ‘矣身/의몸’은 1인칭 대명사로 ‘나, 저’의 뜻을 지닌 말이다. 속격 조사와 보통 명사가 결합된 형태이나 대명사처럼 쓰이는 이두어이다. ‘-去乎/-거온’은 확인법 선언어말어미와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결합된 형태로 ‘~하니, ~한 것이니’ 정도의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뒤에 동사 ‘在-’가 왔기 때문에 ‘-乎/-온’이

32) 조남곤(2019: 77-78) 참조.

앞 문장에 결합하여 명사적 용법의 동명사어미로 기능한다. ‘-在/-견’도 동명사로 기능하는데 여기서는 관형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ㄱ/ㄷ’는 의존명사로 -以/-로‘는 구격조사로 쓰였다. 11)은 ‘조상으로부터 전하여 온 비 무심의 제3소생 비 우□의 6소생 비 곳부 나이 6(갑인생), 비 동정의 제9소생 노 아무개의 몸을 허여한 일이 있으므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12) 後所生 并以 子孫傳持[]

後所生은 得後所生의 준말로 노비를 얻고 난 후에 그 노비에게서 태어난 자식을 말한다. ‘并以’는 부사류 이두로 ‘아오로’로 읽고, ‘아울러, 모두’의 뜻으로 쓰인다. 「尹丹鶴 耽津縣立案」와 「南永蕃 蔚珍郡 立案」을 참조하면 子孫傳持 뒤에 결합된 부분은 ‘使用爲乎矣’ 정도로 추정된다.

12)는 ‘득후소생과 아울러 자손들이 전하여 가지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13) □(萬)分 矣 同腹 三寸 ㄱ戈只 起云爭望 隅 有去等

‘萬分’은 가정을 나타내는 말로 ‘만일’이라는 해석한다. ‘-ㄱ/-ㄷ’은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戈只’는 주격 조사로서 쓰이는 이두토로 ‘익’이나 ‘이기’로 읽는다. 戈只로도 쓴다. 隅의 독음은 ‘몽’이다. 현대어로 ‘구석’ 혹은 ‘까탈’ 정도로 해석되는 이두어이다. (1ㄱ)은 隅가 ‘구석’의 뜻으로 사용된 예이고 (1ㄴ)은 ‘까탈’의 뜻으로 사용된 예이다.

(1) ㄱ. 扶護 隅 無乎ㄱ用良 <1408년 尼僧張氏 奴婢許與斜給立案 14>

(도와서 보호할 구석이 없으므로)

ㄴ. 萬一 爭端 隅 有去ㄱ <1503년 裴以順妻 金氏 姉妹 和會文記(1491년 傳准)>

(만일 싸움질의 단서를 만드는 까탈이 있으면)

(13)은 ‘만일 나의 형제와 삼촌 들이 일어나 말하고 다투고 원망하는 까탈이 있으면’ 정도로 해석된다.

14) 此 文字 囙 圖意乙用 告官辨別 鎖長使用爲於爲 成文許与爲囙 圍是亦在

文字는 文書란 뜻이고, 辭意는 ‘글이나 말의 내용’을 뜻한다. ‘乙用/을쓰’ 뒤에 良을 쓰지 않았는데 이런 현상은 드물다. 爲於爲는 ‘ㅎ늘삼’으로 읽고 ‘하도록 (하여)’ 정도로 해석한다. 爲於爲에 사용된 於是 『광주천자문』과 『석봉천자문』에서 모두 ‘늘 어’로 읽었다. ‘늘-’은 ‘났다(勝)’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爲於爲에서 ‘늘’은 訓假字이며 동명사어미로 기능한다. 爲只爲는 ‘ㅎ기삼’으로 읽는데 爲於爲과 뜻이 같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도록’보다는 ‘하기 위하여’로 해석해야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 박희숙(1985:242-243)에서는 『吏文』의 ‘爲白只爲/ㅎ늑기위’에 근거하여 爲只爲를 ‘하기 위하여’로 읽을 것을 권하였다.

‘爲-/ㅎ-’ 뒤의 ‘-乎/-은’는 관형사형어미로 기능하여 동사 爲-가 뒤의 명사 ‘事/일’를 꾸밀 수 있게 하였다. ‘是-/이-’는 계사 어간이고 ‘-亦/-여’은 종결어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在/-견’은 이 문장에서 동명사어미로 쓰였다. 14)는 ‘이 문서 안의 내용으로 관에 고하여

따져서 판결을 받고 오래도록 사용하도록 문서를 만들어 줄 일이라는 것'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15) 財主 前 承奉郎 珍島郡事 張 □□ (着名 署押)

허여 문기의 발급자인 재주의 서명이 표시된 부분이다. 승봉랑은 고려 때, 정육품의 문관 품계이다. 『世宗實錄』 「地理志」, 『高麗史』 「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의하면 진도는 고려 때 나주의 任內로 하고 뒤에 현령을 두었다고 하였는데 이 사급입안의 허여 문기에는 재주가 자신의 신분을 前 珍島郡사로 적었다. 珍島郡사의 정확한 명칭은 知珍島郡事로서 珍島郡을 다스리는 知事라는 뜻이다. 『高麗史』 「百官志」에 따르면 知郡事は 품계가 5품 이상이다. 공식적인 사료들에 따르면 고려 시대에 珍島는 縣令이 다스리는 곳이었지 知郡사가 다스리던 곳은 아니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珍島郡邑誌』를 찾아보았는데 이 책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珍島郡邑誌』의 연혁에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보인다.

- (2) ㄱ. 新羅因高麗改爲珍島陞 郡守兼防禦使 移治于近隣海邊之今龍藏坪 <진도군읍지 02>
(신라를 지나서 고려 때에는 진도군으로 승격되어 군수가 방어사를 겸하였고 육지가 가까운 바닷가로 관부를 옮겼는데 지금의 용장평이다.)
- ㄴ. 更抄人丁入補後革羅諸縣鄉 而郡治則因舊貫之 <진도군읍지 02>
(국가에서 다시 장정을 뽑아서 읍내에 들어가 무너진 성을 보수한 뒤 모든 현, 향의 제도를 없애 버리고 옛날처럼 진도군이라 하였다.)

(2ㄱ)은 진도가 고려 때 군으로 승격되었다는 사실을 적은 기록이고 (2ㄴ)은 삼별초의 난의 진압 과정에서 진도가 폐허가 되고 진도군민들이 몽고병들에게 끌려가 경내가 텅비게 되었는데 나라에서 다시 장정을 뽑아 성을 보수하고 기존의 縣과 鄉을 혁파하고 옛날처럼 진도군으로 회복시켰다는 내용이다.

그후 진도군은 충정왕 2년(1350)에 왜구의 침략으로 인해 내륙 지방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군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진도가 다시 군으로 회복되는 것은 조선 태종 9년 무렵이다. 『진도읍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국가에서 편찬된 공식적인 사료에도 빈틈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사학자들이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재주인 진도군사 장모는 『진도읍지』의 내용을 고려하면 충정왕 2년(1350) 이전에 진도군사를 지냈을 것이다. 15)는 '재주 전 승봉랑 진도군사 장 (작명 서압)'으로 해석한다.

16) 證人 前 備巡衛 精勇郎將 申 □□ (着名 署押)

16)은 '증인 전 비순위 정용낭장 신 (작명 서압)'으로 해석한다.

17) 筆執 前 神虎衛 精勇散員 權 (着名 署押. 名: 龍圭)

필집의 작명 서압은 재주와 증인과 달리 온전하게 보인다. 작명은 이름을 독특하게 변형

한 것인데 이 문서의 필집은 착명을 크게 변형해 쓰지는 않아서 이름자(용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17)은 ‘필집 전 신호위 정용산원 권(착명 서압)’으로 해석한다.

18) 洪武 十二年 七月 十二日 國圖

18)은 입안의 시면에 해당한다. 고려 시대에는 입안을 典議라고도 불렀다. 박병호(1996: 621)에서는 典議를 ‘관장하여 事宜를 평정한다’는 뜻으로 추정하였고 ‘立案’과 같은 뜻으로 보았다. 노명호 외(2000: 120)에서는 이 말을 “담당하여 처리함”으로 해석하였다. 18)은 ‘홍무 12년 7월 12일 전의’로 해석할 수 있다.

19) 右 課狀 內乙用良 向圖 國婢 許與文記良中 斜只 允踏印 許文 連因 退者 向 事

課狀은 所志와 같은 뜻이다. 여기에 쓰인 內는 ‘내용’이라는 뜻으로 ‘안’으로 혼독했을 수도 있다. 乙用良는 ‘으로써’로 해석한다. ‘向前’은 ‘앞전, 아전, 안전’으로 읽히며 ‘앞(의), 이전(의), 지난번(의)’ 정도로 해석된다. ‘良中’은 ‘아기’나 ‘아희’로 읽는데 이두문에서는 주로 처격 조사로 사용된다. ‘斜只’는 ‘빗기’로 읽는다. 중세국어에서 ‘비끼어, 비스듬히’의 뜻으로 쓰이는 부사 ‘빗기’에 대응되는 이두어이다. 입안의 결사 말미에 쓰인 ‘退者向事’는 지금까지 전혀 나타난 적이 이두 형태인 것 같다. 박하늘(2018)에서는 向事를 爲乙事로 판독하였는데 그러면 의미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退(者)向事의 용례는 있어도 退(者)爲乙事의 용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판독이라 보기 어렵다. 退者라는 표현은 종종 보는 것이지만 이것에 向事가 이어지는 용례는 본 적이 없다. 退者는 ‘발급하는 것’, ‘돌려주는 것’ 정도로 풀이되는 것인데 여기에 ‘행할 일’로 해석되는 向事가 결합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退者向事를 ‘발급하는 것을 행할 일’ 정도로 풀이한다. 19)는 ‘위의 신청 소지의 내용으로 앞의 노비를 허여 문기에 대하여 증명하여 마땅히 관인을 찍어서 입안을 허락하고 점련하여 발급하는 것을 행할 일’ 정도로 해석한다.

20) 尹 (着押) 判官 (着押) 叅圍 記官

20)은 한양부 담당 관리 및 이속의 서명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윤 (착압), 판관 (착압), 참군 (착압), 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원문 해독을 종합하고 이 사급입안에 사용된 이두를 품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원문 해독

...(진도) 군(사)...

...이어지는...

...을 고하(는)...

한양부윤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홍무 12년 7월 일 (장)

같은 달 12일 부로

살펴 인증하고

도장을 찍음.

관관 (착압)

홍무 12년(1379) 기미 7월 초2일. 자식이 없는 까닭으로

□촌 딸을 3세 전에 데리고 와 길러 나의 사촌 손(자)

□현을 짝을 이루게 하여 큰딸 물금을 낳아 길러 데리고 살았는데 그의

친모 지상이 사랑스럽고 소중히 생각하여

조상으로부터 전하여 온 비 무심의 제3소생 비 우□의

6소생 비 굿부 나이 6(갑인생), 비 동정의 제9소생 노 아무개의

몸을 허여한 일이 있으므로 득후소생과 아울러 자손들이 전하여 가지고...

만일 나의 형제와 삼촌 들이 일어나 말하고 다투고 원망하는 까탈이 있으면 이 문서 안의
내용으로 관에 고하여 따져서 판결을 받고 오래도록 사용하도록 문서를 만들어 줄 일이라는
것

재주 전 승봉량 진도군사 장 (착명 서압)

증인 전 비순위 정용낭장 신 (착명 서압)

필집 전 신호위 정용산원 권(착명 서압)

홍무 12년 7월 12일 전의

위의 신청 소지의 내용으로 앞의

노비를 허여 문기에 대하여 증명하여

마땅히 관인을 찍어서 입안을 허락하고 점련하여

발급하는 것을 행할 일

운 (착압)

관관 (착압)

참군 (착압)

기관

2. 이두 정리

1) 명사류 이두

- ① 실질명사: 身(몸), 隅(몸), 內(안), 向前(앗전, 아전, 안전), 事(일)
- ② 형식명사: 𠂆(드)
- ③ 대명사: 矣(의), 其(그, 저)

2) 동사류 이두

- ① 단일동사: 用-(쓰-), 在-(겨-), 有-(잇-), 斜只-(빚기-), 向-(앗-)

② 합성동사: 向入-(앗들-, 앓드러)

③ 계사: 是-(이-)

3) 부사류 이두

并以(아오로)

4) 조사류 이두

<격조사>

① 주격조사: 戈只(익), 以(이),

② 속격조사: 矣(의)

③ 대격조사: 乙(을/를)

④ 처격조사: 良中(아기>아히)

⑤ 구격조사: 以(로)

<보조사>

① 주제보조사: 乙良(으란)

5) 어미류 이두

<선어말어미>

① 객체높임(겸양법) 선어말어미: -白-(-습-)

② 서법 선어말어미: -去-(-거-)

<어말어미>

① 종결어미: -亦-(-여)

② 연결어미: -乎矣(-오되), -良(-아), -去等(-거든), -於爲(-닐삼/늘삼)

③ 동명사어미: -乎(-온), -在(견)

6) 접사류 이두

-敎-(-이시-), -亦-(-듯-), -爲-(-히-), -亦 (-히)

V. 결론

-생략-

참고문헌

- 김창현(2006), 『고려의 남경, 한양』, 도서출판 신서원.
- 羅恪淳(1993), 「高麗時代 楊州地方의 變遷과 그 官人의 任用形態」, 『郷土서울』 53, 서울特別市, 45-91.
- 南權熙(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古印刷博物館.
- _____(2000), 『吏讀研究』, 태학사.
- 남풍현·이진식·오창명·이용·박용식 편(2020), 『吏讀辭典』, 단국대학교출판부.
- 노명호·박영제·박재우·오영선·윤경진·윤선태·최연식·이중서(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上)-校勘譯註篇』, 서울대학교출판부.
- 노명호·박재우·오영선·윤경진·윤선태·최연식·이중서(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下)-研究·圖版篇』, 서울대학교출판부.
- 文叔子(2004),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景仁文化社.
- 閔丙河(1968), 「高麗時代의 漢陽」, 『郷土서울』 3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3-26.
- 박성종(2016), 『朝鮮前期 吏讀 研究』, 도서출판 역락.
- 박성호·문숙자·손계영·박준호·고민정·김봉좌(2020), 『한국고문서입문』 1, 국사편찬위원회.
- 박용운(2009), 『『高麗史』 百官志 譯註』, 도서출판 신서원.
- 박종기(2016), 『『高麗史』 地理志 譯註』,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박준호(2016),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주)박이정.
- 박하늘(2018), 「조선시대 사급입안 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2019), 「조선시대 斜給立案의 양식과 발급 절차」, 『古文書研究』 54, 韓國古文書學會, 115-148.
- _____(2020), 「자료소개: 원본 문서가 남아 있는 최고의 사급입안 1379년 한양부 사급입안」, 『고문헌』 7, 영산고문헌연구회, 16-20.
- 朴漢高(1977), 「高麗時代의 서울地方」, 『서울六百年史』(第一卷), 서울特別市, 111-152.
- 박희숙(1985), 「大明律直解의 吏讀研究」,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영환(2007ㄱ), 「朝鮮時代 掌隸院 立案의 着官 研究」, 『古文書研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9-56.
- _____(2007ㄴ), 「朝鮮時代 古文書의 草書體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李基文(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 이승재(1989), 「高麗時代의 吏讀資料와 그 判讀」, 『震檀學報』 67, 진단학회, 115-131.
- _____(1992),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 장세경(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 조남곤(2019),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의 이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2021), 「修禪社主乃老宣傳消息에 대한 고찰」, 『古文書研究』 59, 韓國古文書學會, 1-33.
- 조해명 저, 전영숙·서은숙 공역(2004), 『돌의 미학 篆刻』, 學古房.
- 珍島文化院 編(1987), 『珍島郡邑誌』, 珍島郡.
- 최동녕(2017), 「高麗 忠宣王代 地方制度의 개편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연숙(2005),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

최승희(1989),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王邦蜀 編(1994), 『中國篆刻大字典』 上·中·下, 貴州教育出版社·臺灣地球出版社

師村妙石 編(1986), 『篆刻字典』 上·下, 東方書店.

赤井清美 編(1982), 『行草大字典』 上·下, 東京堂出版.

기존 吏讀 자료의 보충과 재해석

- 濟州 지역 吏讀文을 중심으로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吏讀 자료의 보충
3. 吏讀의 재해석
4. 마무리

오창명 (제주국제대)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2023년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의 기획 주제인 ‘吏讀’와 관련한 발표 내용 가운데 하나로 작성하였다. 적절한 내용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동안 吏讀文과 吏讀를 봐 오는 과정에서, 기존 吏讀 자료나 吏讀辭典이나 吏讀資料事典 등에서 확인되지 않고 언급되지 않은 것, 언급되었더라도 재논의가 필요할 듯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필자가 근래에 집중적으로 봐온 吏讀 자료가 조선시대의 儀軌류의 吏讀文과 濟州 지역 고문서의 吏讀文이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선 기존 吏讀 자료에서 보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봤고, 이어서 기존 吏讀 자료에서 재해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봤다. 여기서 ‘보충’이라는 말은 기존 吏讀辭典이나 吏讀資料事典 등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찾는다는 뜻을 담아서 썼고, ‘재해석’이라는 말은 吏讀를 읽을 때의 문제, 吏讀를 분석할 때의 문제, 吏讀를 뜻풀이할 때의 문제, 吏讀의 구조 분석의 문제 등을 아우르는 말로 썼다.

이 글을 쓰면서 기초 자료로 쓴 것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儀軌류와 장서각의 한국고문서자료관(archive.aks.ac.kr)의 고문서, 제주 지역 고문서이다. 조선시대의 儀軌류는 규장각이나 장서각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를 서비스하는 자료를 이용했고, 기타 고문서는 장서각의 한국고문서자료관(archive.aks.ac.kr)의 고문서 이미지 자료를 활용했고, 제주 지역 고문서는 필자가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미 출간하여 책자화하거나 이미지화하여 제공하는 것들을 이용했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주로 이용한, 규장각이나 장서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儀軌류와 장서각 한국고문서자료관의 고문서는 일일이 밝히지 않겠고, 제주 지역 고문서 일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 우선 여러 장의 고문서를 소장한 집안의 고문서를 밝혀둔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김만일 후손가 소장 고문서
서귀포시 대포동 이지환 씨 소장 고문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능성구씨 종가 소장 고문서
 서귀포시 중문동 고재일 씨 소장 고문서
 서귀포시 하원동 강성택 씨 소장 고문서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동래정씨 소장 고문서
 제주시 애월읍 어도리 진주강씨 소장 고문서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강태복 씨 소장 고문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수산강씨 종가 소장 고문서

제주 지역 고문서 가운데 소위 分財記류와 明文류, 所志류 등에서 吏讀文이 일반적으로 쓰였는데, 시기적으로 이른 것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의 것, 곧 1500년대 후반과 1600년대의 것인데, 그리 많지는 않다. 가장 많은 것은 18세기, 곧 1700년대의 것이고, 그 뒤로 많은 것은 19세기, 곧 1800년대의 것이다. 그리고 20세기 초반과 일반강점기의 것도 간혹 확인되고 있다.

2. 이두자료의 보충

2.1 夜味·夜未(배미) / 夜尾·夜米(배미), 所味(배미) / 野味(야미)

고문서 따위에서 확인되는 夜味와 夜未는 ‘배미’의 吏讀 표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기존 이두사전에에도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소리를 반영한 夜尾·夜米, 所味 등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夜味와 夜未, 夜尾, 夜米 등의 표기에서 味와 未, 尾, 米 따위를 생략한(곧 ‘배미’에서 둘째 음절 ‘미’를 생략한), 불완전한 표기인 夜도 기존 이두사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배미’의 이두 표기 夜味·夜未의 원음을 되살리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한자음인 듯이 반영한 野味도 확인되는데 기존 이두사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 ① 伏在道內面大獨洞村前坪 騰致二字畚五斗五升落只十三夜尾 所耕負束庫乙 價折錢文伍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嘉慶十三年(戊辰: 1808년)五月初四日大門前明文>
- ② 矣身從近耕食次 本所畚 外北先 小巨勿員 遼字五十九畚十一負一束三夜尾三斗落只庫果 添價伍兩乙 依數捧上是遣 <嘉慶十七年(壬申: 1812년)二月初六日鶴山瞻學所庫直申性萬前明文>
- ③ 安部將宅 上畚七夜米四斗, 中畚四夜米三斗八升…… <辛卯三月日龍潭畚種子記>
- ④ 一直, 尋十九田內廿一ト二束【四才八谷 光音四斗落】, 論五十八畚內十ト九束【四所味 光音三斗落】, 慮四十一田十ト六束【十九谷 光音二斗落】, 散十畚內十ト四束【一所味 光音三斗落】 <『古文書集成』 16책: 안동 하회풍산류씨편(Ⅱ), 田畓案>
- ⑤ 傳來畚伍野味員 斬字五十四田八束果 五十三畚三負四束 合四負二束二斗落只庫乙 價折錢文一百柒拾伍兩 依數捧用是遣 <光武七年癸卯(1903년)三月二十七日前明文>
- ⑥ 矣自記賣得 西面加山坪里 伏在稱字畚下片三夜三斗落只ト數六ト七束庫 價折錢文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古文書集成』 38, 康熙伍十玖年(庚子: 1720년)正月二十六日連谷寺內三綱處明文>

『吏讀辭典』(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2)에는 夜味段과 夜味乙 등의 이두 연결형(통합형?)을 등재했는데, 이러한 연결형을 등재한다면 다음의 연결형도 일일이 등재해야 할 것이다.

夜味庫叱

- ⑦ 上典主宅牌子據靈光道內面可陽坪 伏在生字畚二夜味拾斗畚落只果 上坪陳田肆斗落只果 同坪金字畚肆斗落只六夜味庫叱 合畚拾肆斗落只 所耕負束庫叱乙 價折錢文壹百貳拾兩乙 依數捧上爲遣 <乾隆四十三年(戊戌: 1778년)三月初六日前明文>

夜味庫乙

- ⑧ 伏在於汝於員 澄字四十一畚十二負七束, 七十一畚內一夜味二負八束, 兩作并十五負五束六斗落只八夜味庫乙 價折錢文陸拾兩 依數捧上是遣 <乾隆伍拾參年(戊申: 1788년)四月廿六日柳營將宅奴石哲前明文>

夜味庫叱乙·夜味庫乙

- ⑨ 傳來畚後坪前 傳字員四十一畚內 實二負一斗落一夜味庫叱乙 價所錢文四十貳兩 依數捧用是遣 <同治六(八?)年己巳(1869년)二月二十九日 再從侄前明文>
⑩ 竹山東部面長光里 伏在無字三十二畚陸負一束伍斗落十夜味庫乙 價折錢文三百什兩 依數捧用是遣 <同治十二年癸酉(1873년)十二月十四日安東川前金氏門中竹山所前明文>

夜未庫良中

- ⑪ 竹長資字所羅員畚租四斗落只肆夜未庫良中 價折正五升木捌疋 依數捧上爲遣 <萬曆貳拾參年(乙未: 1595년)參月貳拾肆日孫忠義戶奴連守處明文>

夜味等庫良中

- ⑫ 東邊牙次治 伏在■字以盈■■■量案寒字第四十三直畚伍斗落■■■負參參夜味等庫良中 價折■■■伍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康熙參拾年(辛未: 1691년)三月初九日, 僧允悅前■■■>

夜味乙

- ⑬ 自己買得畚上朴谷員 空字四十一畚六ト一束二斗落只三夜味乙 價折錢文伍十五兩 依數捧上是遣 <道光七年丁亥(1827년)十二月十六日金生員宅奴莫夏前明文>

夜味果

- ⑭ 道內面甫里山坪 伏在水頭里畚字庫所耕負束五斗落壹夜味果 同坪隣畚字所耕負束壹斗落庫壹夜味 合陸斗落庫乙 價折錢伍拾兩 依數捧上爲遣 <嘉慶拾陸年(辛未: 1811년)三月初三日幼學辛行溫前明文>.

2.2 付只〔부치기〕, 付〔부치기〕, 付只田〔부치기왓〕, 付田〔부치기왓〕

升付只·刀付只, 斗付只, 石付只 / 刀付·升付, 斗付, 石付 // 付只畚, 付只田·付田, 斗付只田·斗付田, 升付只田, 斗付只田, 石付只田·石付田 // 斗付只田庫, 升付只畚, 斗付只田, 石付只田庫 // 斗付只田庫乙, 斗付只庫乙

付只는 ‘부치-(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에 명사형성접사 ‘-기’가 붙은 ‘부치기’를 쓴 이두인데, 지금까지 다른 지역 이두문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제주 지역 이두문에서는 여럿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 확인되는, 다른 지역 이두문에서도 付只가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이두사전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등재하지도 않았다.

이 付只(부치기)는 앞에 斗(말), 升·刀(되), 石(섬)이 덧붙은 升付只·刀付只(되부치기), 斗付只(말부치기), 石付只(섬부치기) 등과 같이 쓰이는데, 이것들은 각각 ‘말부치기’, ‘되부치기’, ‘섬부치기’의 이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付只 뒤에 畝이 붙은 付只畝는 ‘부치기논’(부치기의 논)의 이두 표기이고, 付只 뒤에 田이 붙은 付只田은 ‘부치기밭’의 이두 표기라 할 수 있다.¹⁾

‘부치-’의 옛말이 ‘브티->부티-’로 실현되었다면, ‘부치기’에 대응하는 옛말도 ‘브티기>부티기’ 정도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付只에서 只를 생략한(곧 ‘부치기’에서 ‘-치기’를 반영하지 않은), 불완전한 표기인 付가 쓰이기도 해서, 斗付(말부 <=> 말부치기), 升付(되부 <=> 되부치기)와 같이 只를 생략하여 쓰이기도 하고, 여기에 田을 덧붙여 斗付田과 같이 쓰이기도 했다.

- ① 妻過傳得畊食爲如乎 皮牟拾斗付只田 <萬曆肆拾捌年(庚申: 1620년)玖月初玖日姜繼勳處明文>.
- ② 父母前傳得畊食爲如乎 皮文里內員 皮牟壹石付只 <天啓陸年(丙寅: 1626년)五月貳拾伍日姜應善亦中明文>.
- ③ 婢矣身 不能埋葬是乎乎以 棺板壹部及埋葬則功價本大橋路員 皮牟貳拾斗付只田乙 金弘補處買得爲在 田 <順治拾貳年(乙未: 1655년)正月初拾日木手金莫連處明文>.
- ④ 水山里 北過泥田員乾畚租種柒升付只畝 <康熙肆年(乙巳: 1665)拾貳月貳拾伍日徐起元處明文>.
- ⑤ 妻叔祖母成姻別給爲在 中文里北過上基員 皮牟貳斗付只 <康熙參拾玖年(庚辰: 1700년)正月拾柒日高允重處明文>.
- ⑥ 々稀川員 祖上傳來畊食畝陸片 合租種柒升付只 肆標東宋繼發畝 南梁重憲畝 西吳繼禧畝 又同員 皮牟壹斗田付只田庫 肆標東南吳繼禧畝 西高贊斗田 北宋繼發田 兩庫田畝 肆標分明田畝以 永永報給 及本文記段 他田畝并付乙仍于 不得許與爲去乎 <乾隆貳年丁巳(1737년)正月初參日高允重處明文>(중문 고재일 가 고문서)
- ⑦ 獨子員粟壹刀付只……許門員粟壹刀付只 <己卯(1879년)十二月十七日前別監姜世翼前明文>.
- ⑧ 掃条卡希川員 衿得一片畝 租種壹斗付 無仇尼員 流來田 牟種貳拾伍斗付 <嘉慶十六年(辛未: 1811년)四月十七日都會明文>
- ⑨ 家坐北片員 流來田 牟種貳斗付 北仇員 衿得田 牟種柒斗付 念小洞員 衿得田 粟種捌升付 <嘉慶十六年(辛未: 1811년)四月十七日都會明文>
- ⑩ 九代祖父母主掃祭條段 今岳北過總川田員 相換田 粟種一斗八刀付 <同治八年己巳(1869년)十一月二十五日先世掃祭條列錄文>

並付只以(-부치기로)

- ⑪ 無他宅移賣次 扶餘公洞面棠坪里 草家內外舍七間果 棗木與栗木果 罪字畝六斗落結十六ト八 同字田七斗落結五ト一束應乙 價折錢文壹百兩 依數交易捧上爲去乎 舊文記段 他田畝並付只以 新文記一張導良 以給日後相考事 <고문서자료관, 奴小云(1878)>.

斗付只田庫(부치기밭곳)

- ⑫ 養祖母衿得田旋 下牛屯里里內員皮牟陸斗付只田庫 報給爲去乎 <康熙肆拾參年(甲申: 1704년)貳月拾壹日高允重處明文>

斗付只庫乙(부치기곳을)

- ⑬ 五寸叔母夫姜應善亦 其子繼勳 教訓則 其功不小是如 論賞以 明月城內伏在田 皮牟捌斗付只庫乙 許給後 將

1) 제주방언에서는 ‘밭(田)’이 일반적으로 ‘밭’으로 실현되는데,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앗’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至貳拾余年畊食爲如可 <崇禎參年(庚午: 1630년)伍月貳拾壹日姜應善處明文>.

斗付只田庫乙(부치기밭곳을)

- ⑭ 勢不得已父前衿得爲在 今勿岳里內大街員 皮牟貳拾斗付只田庫乙 四標段 東姜德男田 南洪卜田 西北小路爲在 四標分明正爲在田庫乙 價本拾疋以 准折 正木拾疋捧上爲遣 <順治拾伍年(戊戌: 1658년)正月二十六日姜姬載處明文>.
- ⑮ 家夫生時買得起耕爲如乎 居老里以 西過員 皮牟壹石付只田庫 四標段 東買者田 南小路 南大川 北金德南田 肆標爲 分明爲在 田庫乙 同金崗前 放賣爲遣 <康熙陸年丁未(1667년)捌月拾柒日前座首金崗前明文>.

刀田(되밭)

(閏四月)二十八日甲午. 陰. ○買龍尋員五片田 五刀畝 給四十兩 <溪上日記>

2.3 畚庫(논곳), 畚庫乙(논곳을>논곳을), 田畚庫叱(밭논곳/전답곳)

畚庫는 단국대학교출판부의 『한국한자어사전』에 차자어라 하여 등재하고, ‘논꼬’로 읽고 “논의 사투리”라 설명하였다. 그러나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의 『吏讀辭典』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畚庫乙을 두 사전 모두에 등재되지 않았다.

기간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논꼬’와 ‘논코’가 “논의 물꼬”라 하고, ‘논코’는 경북방언이라 했다.

그런데 아래 이두문에 보이는 畚庫와 畚庫乙은 이두의 통합형(?)과 이두의 연결형이라 할 수 있고, 畚庫는 ‘논꼬’를 쓴 것이 아니라, ‘논곳’을 쓴 것으로, 田庫·田廬의 구성과 같은 것이다. 畚庫乙을 田庫乙과 같은 구성이다.

기존 이두사전에는 畚庫와 畚廬·畚庫叱, 田庫와 田廬, 田庫乙과 田廬乙 모두를 등재하지 않았다. 田畚庫, 田畚庫乙도 등재하지 않았다.

- ① 四標段 東南賣者畚 西■■田 北李景光畚 四標爲木如 分明爲在畚庫乙 價■■段 木綿參疋准計 依數捧上爲遣 <康熙肆年(乙巳: 1665)拾貳月貳拾伍日徐起元處明文>.(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강태복 가 고문서)

田庫(밭곳>밭곳), 田庫乙, 田庫乙以

- ② 養祖母衿得田旋□下牛屯里里內員皮牟陸斗付只田庫報給爲去乎 <康熙肆拾參年(甲申: 1704년)貳月拾壹日高允重處明文>
- ③ 矣身父別給田 所臥木員皮牟拾斗付只田庫 四標段 東及北梁宋泰田 南姜碩上田 西姜永貴田 四標分明百爲在 田庫 價本段 正木壹疋準計捧上爲乎矣 <乾隆肆拾壹年(丙申: 1776년)拾二月貳拾日高莫先處明文>.
- ④ 々稀川員 祖上傳來畊食畚陸片 合租種柒升付只 肆標東宋繼發畚 南梁重憲畚 西吳繼禧畚 又同員 皮牟壹斗 田付只田庫 肆標東南吳繼禧畚 西高贊斗田 北宋繼發田 兩庫田畚 肆標分明田畚以 永永報給 及本文記段 他田畚并付乙仍于 不得許與爲去乎 <乾隆貳年丁巳(1737년)正月初參日高允重處明文>(중문 고재일 가 고문서)
- ⑤ 四標分明田庫乙 永永推給放賣爲去乎 <康熙參拾柒年(戊寅: 1698년)參月拾參日李孝積處明文>
- ⑥ 四標爲木如 分明田庫乙以 永永報給爲去乎 <康熙參拾陸年(丁丑: 1697년)拾貳月拾伍日校生高允重前明文>

- ⑦ 汝矣上典宅 英陽田畝庫乙 放賣爲有如何 欲爲還退爲乎木以 ■只洞一百田庫乙 姑爲訣給爲乎矣 <『古文書集成』 6, 乙酉二月二十五日私奴乙男處不忘記>.

兩庫, 兩庫田, 兩庫田乙

- ⑧ 四標分明兩庫田乙 貸口壯雄牛價 永永報給放賣爲置 <康熙伍拾參年(甲午: 1714년)二月貳拾日高允重前明文>

2.4 片(파니), 片田(파니왓), 片畝(파니논)

片은 제주 지역 이두문에서 자주 확인되는 것으로, 제주방언에 전하는 ‘파니’(표준어 ‘뽕기’/옛말 ‘뽕야기<16세기>’에 대응하는 말: 일정한 경계를 지은 논밭 면적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 또는 일정한 경계를 지은 논밭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 오늘날 일본식 한자어 筆地)에 대응하는 것으로 봐왔다.²⁾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지역 고문서에 쓰인 것도 확인되고 있다.

- ① 々稀川員 祖上傳來畊食畝陸片 合租種柒升付只 肆標東宋繼發畝 南梁重憲畝 西吳繼嬉畝 又同員 皮牟壹斗田付只田庫 肆標東南吳繼嬉畝 西高贊斗田 北宋繼發田 兩庫田畝 肆標分明田畝以 永永報給 及本文記段 他田畝并付乙仍于 不得許與爲去乎 <乾隆貳年丁巳(1737년)正月初參日高允重處明文>(중문 고재일 가 고문서).
- ② 掃条卞希川員 衿得一片畝 租種壹斗付 無仇尼員 流來田 牟種貳拾伍斗付 <嘉慶十六年(辛未: 1811년)四月十七日都會明文>

片田(파니왓)

- ③ 傳來 立下寓東里 家垵五間果 行廊四間 三家合垵三斗落, 所耕庫果 柿木十五株卧, 戶低三間果 芋田四片 合四斗落果 又垵田一斗落果 又垵田五升落果 前坪賤字太種田一石落果 又同字田八斗落果 又一斗落果 後洞柴場一結庫果 江邊柴場一結五十同庫果 甘拂松田四十同庫果 前後坪合畝六石四斗落庫 所耕庫乙 價折錢文壹千五百兩 依數捧上爲遣 <咸豐五年乙卯(1855)二月十八日前明文>
- ④ 傳來田石南員 慈字四什陸田陸卜二夕二斗落六片果 測字二什五田三卜一夕二斗落四片果 畝廉字四什三畝什二卜一束四斗落只庫乙 田畝合八斗落只庫乙價折錢文參栢捌拾兩 依數捧用是遣<『古文書集成』 1, 上之三十五年戊戌(1898)十一月二十七日前明文>.

片畝(파니논)

- ⑤ 掃条卞希川員 衿得一片畝 租種壹斗付 無仇尼員 流來田 牟種貳拾伍斗付 <嘉慶十六年(辛未: 1811년)四月十七日都會明文>

片果(파니와)

- ⑥ 由來 道內立石村前右宅 柴場北邊路下 陳處一片果 陳處下牛場一片果 牛場下築堰東邊陳處一片庫乙 價折錢文貳拾兩 依數捧用是遣 <『古文書集成』 27, 丙申(1896년)六月二十日辛生員前明文>.(전라남도 영광)
- ⑦ 傳來田石南員 慈字四什陸田陸卜二夕二斗落六片果 測字二什五田三卜一夕二斗落四片果 畝廉字四什三畝什

2) 중국어에서도 “구획된 논이나 밭, 임야, 대지 따위를 세는 단위”로 片(piàn)이 사용되는데, 이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二ト一束四斗落只庫乙 田畝合八斗落只庫乙 價折錢文參栲捌拾兩 依數捧用是遣 <『古文書集成』 1, 上之三十五年戊戌(1898)十一月二十七日前明文>.(경상북도 안동)

片田(파니왓)

⑧ (閏四月)二十八日甲午. 陰. ○買龍尋員五片田 五刀畝 給四十兩 <溪上日記>

2.5 衿得田(깃득밭), 衿得畝(깃득논)

衿得은 일찍부터 ‘깃득>깃득’의 차자표기, 곧 이두로 다루어 왔다. 그렇다면 衿得田, 衿得畝, 衿得田畝 등과 같은 통합형(?)도 ‘깃득전>깃득전’ 또는 ‘깃득밭>깃득밭’, ‘깃득답>깃득답’ 또는 ‘깃득논>깃득논’, ‘깃득전답>깃득전답’ 또는 ‘깃득논밭>깃득논밭’의 차자표기로 등재할 필요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이두사전에서는 이들 통합형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 ① 養祖母衿得田旋□下牛屯里里內員皮牟陸斗付只田庫 報給爲去乎 <康熙肆拾參年(甲申: 1704년)貳月拾壹日 高允重處明文>
- ② 家坐北片員 流來田 牟種貳斗付 北仇員 衿得田 牟種柒斗付 念小洞員 衿得田 粟種捌升付 <嘉慶十六年(辛未: 1811년)四月十七日都會明文>

2.6 爲等如(헛트러/훈돌다히) / 等如(헛트러/훈돌다히), 爲如(헛트러/훈돌다히), 爲𐄂(헛트러/훈돌다히)

기존 이두사전이나 이두자료사전에 일찍부터 爲等如와 爲木如·爲𐄂如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爲等如에서 爲를 생략한 等如, 爲等如에서 等を 생략한 爲如, 爲等如에서 如를 생략한 爲等·爲𐄂 등을 등재하고 그에 대해 풀이한 사전은 보이지 않는다.

- ① 父過祖上傳來畊食爲如乎 者仇川員錢田 粟貳斗付只 四標段 東西南北皆爲陳荒田是乎𐄂用良 爲𐄂如 四標是白去乙 同田庫乙 同人亦中 永永放賣爲去乎 <崇禎柒年(甲戌: 1634년)肆月初壹日姜應善處明文>.
- ② 南金金田 西及北小路等如 四標分明田庫□□□□ 永永報給爲去乎 <康熙三十五年(丙子: 1696년)四月二十七日李濬前明文>
- ③ 婢矣身 不能埋葬是乎𐄂以 棺板壹部及埋葬則功價本大橋路員 皮牟貳拾斗付只田乙 金弘補處買得爲在 田四標段 東奴昌仁田 南西小路 北張卜田爲如 四標分明正爲在 田庫乙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順治拾貳年(乙未: 1655년)正月初拾日木手金莫連處明文>.
- ④ 家夫生時買得起耕爲如乎 居老里以 西過員 皮牟壹石付只田庫 四標段 東買者田 南小路 南大川 北金德南田 肆標爲𐄂 分明爲在 田庫乙 同金崗前 放賣爲遣 <康熙陸年丁未(1667년)捌月拾柒日前座首金崗前明文>

2.7 是乎等乙以 / 是乎𐄂以(이온들로)

是乎等乙以는 기존 이두사전에 등재되어 있는데(是乎𐄂以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

‘이온드로’로 읽고, 乙을 중복 표기로 보았다. 그렇다면 ‘이온들로’로 읽는 것이 효과적일 듯하다. 그러나 等乙・ホニ을 ‘들’의 표기로 보면, 乙을 중복 표기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듯하다.

婢矣身 不能埋葬是乎ホニ以 棺板壹部及埋葬則功價本大橋路員 皮牟貳拾斗付只田乙 金弘祚處買得爲在 田 <順治貳年(乙未: 1655년)正月初拾日木手金莫連處明文>.

奴矣身 貧窮無比 上典宅石物穀 上年分 還上督納時 囚在獄中 他無備納之路是乎ホニ以 貸出七石納上之後 <康熙十五年丙寅(1686년)十一月三十日 上典主宅入納 明文>

2.8 上下教是乎拏(차하기시오며)

上下教是乎拏는 미등록 이두이다.

今此嘉禮時 世子宮嬪宮進排各樣器皿粧飾等 鐵染鎡鐵八斤 從實入次上下教是乎拏 松脂二斤 鐵炭・土乙音炭 并六石上下爲乎拏 鐵釜一座 用還次上下進排事 <景宗端懿后嘉禮都監儀軌(奎13092/肅宗32年, 1706) 手本秩, 丙子四月初五日>.

2.9 爲乎喩以(위호유이)

爲乎喩以(위호유이)는 미등록 어두이다.

敕命竹冊進上時 所盛腰彩輿 依膳錄 新造爲乎喩以 王世子冊禮時 腰彩輿 仍修補 行用爲乎喩 參商分付速爲舉行之地爲齊 <顯宗王世孫冊禮都監儀軌(奎13067/仁祖27年, 1649) 稟目秩, 戊子八月二十八日>

2.10 無乎是乎等以(없(스)온(일)이온드로)

無乎是乎等以은 미등록 이두이다.

西部爲牒報事本部字內璿源譜略頒賜件這這搜問是乎乃 無乎是乎等以 緣由茲以牒報爲去乎 相考施行爲只爲 <『璿源譜略修正儀軌』 권1(奎14124) 來關, 丁丑四月日>

3. 이두의 재해석

3.1 向事

이두에서 向事は 근대국어시대의 이두자료집에서 ‘아안일’ 또는 ‘안일’로 독음을 달았기 때

문에, 그렇게 음을 달고, ‘한 일’ 또는 ‘할 일’의 뜻이라고 하였다.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의 『吏讀辭典』에서는 ‘앗(은)일’ 또는 ‘앗(을)일’로 읽고 ‘한 일’ 또는 ‘할 일’의 뜻이라고 했다. 그리고 일부 글에서는 ‘앗안일’로 읽고, ‘할 일’로 번역하기도 했다.³⁾

그런데 向事의 연결형, 곧 向事關是去有等以, 向事關是去有良尔 등은 ‘앗(은)일관-----’으로 읽고, 向事關是去有亦是 ‘앗(을)일관----’으로 읽는 등 혼란된 독음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뜻풀이에서도 ‘-ㄴ’(과거)과 ‘-ㄹ’(미래)을 반영하는 등 혼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向事는 기본적으로 ‘앗(을)일’로 읽고, ‘할 일’로 뜻풀이를 하는, 미래의 일을 반영한 이두이다. 그런데 고문서에서는 과거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재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한 일’로 번역하면서 과거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大明律直解』에는 向事が 한 군데에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 상에서는 미래로 번역해야 하는데, 기존 번역문에는 과거인 듯이 번역해 놓았다.

各立所軍官員乙 改差向事 及軍官員犯罪爲去等 進來決斷向事乙良 並只 申聞使內遣 趣便以 使內不得爲乎矣 違者乙良 同罪論爲乎事(若軍官有改除別職 或犯罪取發 如無奏奉聖旨 亦不許擅動 違者 罪亦如之) <『大明律直解』卷14, 兵律, 軍政, 第221條 擅調官軍>

각 곳에 배치한 군관원을 이동 발령하는 일과, 군관원이 죄를 지었을 때 잡아와 결단하는 일은, 모두 임금에게 아뢰도록 하며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같은 죄로 논한다. <한국고전종합DB 번역문>

이른 시기 이두문에서는 1262년 柳璈 『尙書都官貼』에서 向事を 확인할 수 있다.

其中父祖別爲所有在 員等乙良 己身分不喻 子孫良中 至亦 並只 許通向事乙 各掌所司戈只 啓受使內良於爲下 於 <『尙書都官貼』(1262)>

內外子孫等乙良 來次宣敕良中 蔭職蒙會向事乙 這這 稱下爲良於爲教是 督本鄉加號功臣堂壁上圖畫教書修述 向事 及功臣錄券加施行爲置 仕朝後春秋齋名目讀唱向事沙餘良 <『尙書都官貼』(1262)>

3.2 弦如·絃如(시울여)

弦如와 絃如是 기존 이두사전에서 ‘시우려, 시오려, 시위여’ 또는 ‘시울셔, 시울여’로 읽고, ‘이어서, 연속하여’ 등으로 뜻풀이를 하였다. 그런데 이 弦如와 絃如가 쓰인 문장을 해석해보면, 이 뜻으로는 뭔가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의 『吏讀辭典』에는 弦如와 絃如를 부사라고 하였다.

① 啓請書寫八人段置 非身役 傭書之人以 逐日 各七張式 功役捧上 書吏三人乙用良 許多文書——查淮期於趁時畢書爲去乙 豐儲倉亦 上項 紙地趁不進排乙仍于 同倉次知色吏 自都監囚次知 督現爲良置 不爲動念爲臥乎所 書寫等 若致廢役 則虛費廩料 弦如 貴曹以 各別善處事 已爲移文爲有乎矣 <迎接都監都廳儀軌(奎14545/17世紀 初, 宣祖41年-光海君2年:1608-1610) 典禮 迎接, 九月二十四日>

② 訓鍊都監書籍廳兵書廳校印都監了 都監爲急急起送事 誌文已爲啓下 而謄錄付匠人等盡屬於諸都監爲乎等以 皆爲稱頃 不現爲臥乎所 誌石改造之役 國家莫重莫大之事是去乙 日期又迫 刻字之役 未及絃如 極爲可慮爲置 刻字匠吳景男趙涵洪延金善得曹友仁徐應得金成國姜賢金得林崔山湖申得男朴順洪金敬祥等 推捉 則皆爲貴都監匠人是如爲昆 <光海君私親誌石改修都監儀軌(奎14894/光海君10年, 1618) 一房, 座目, 戊午>

3) 박성종(2006), 『조선초기 고문서 이두문 주석』, 서울대학교출판부, p.19.

八月十五日>

- ③ 欲依前日青綃例 以綃匹處給價織造進排計料爲良置 其數極爲浩大爲玄等限內 必未及織造絃如 悶慮芥不喻 市上亦無有處生事 丁寧爲良尔 儀仗庫上前排青紅蓋中 可以取色仍用者 多有是如爲置 都監以 更良 參酌 定奪急速移文爲良去等 不得已改造者及不足數乙良 貿易進排計料爲去乎 相考施行事 <宣祖大王懿仁王后 祔廟都監二房儀軌(奎13512/光海君2年(1610) 권2, 二月十七日)>

이들 문장에 쓰인 弦如와 絃如를 보면, 단순히 부사로 보는 것도 어색하고, 絃如를 단순히 ‘이어서, 연달아서, 연속하여’와 같은 뜻을 가진 말로 보는 것도 어색하다.

『典律通補』別編의 「吏文」을 보면, 絃如를 ‘시우려’로 읽고, 예문으로 流離絃如를 들었다. 流離는 일정한 집과 직업이 없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닌다는 뜻을 가진 말로, 이 말 뒤에 絃如가 쓰인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絃如는 고려시대 이두문에서도 여럿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그 예문들을 살펴보면 그 뜻풀이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④ 人臣之意良中 擬議不冬教 罪惡是去有乙 節 議論不冬教第亦中 後代鑑戒 無教是 絃如教事是去有等以 右 崔忠獻及其時同心謀事爲在 同生弟崔忠粹等矣 子孫等乙良 按朝令是教事除良 禁錮令教是矣 <『尙書都官 貼』(1262)>
- ⑤ 右住持若雲亦 無田丁 供衆難便 領衆不得 雨漏分置使內不冬 間閣等亦 並只 頽落爲 絃如悶望是白去乎在等 以 <白巖寺貼文(僧錄司貼/1357)>
- ⑥ 臣 李芳遠 洪武貳拾參年七月初四日 別本 由以 鉉如教事是去有等以 <高麗末國寶戶籍文書(1390~1391)>.

이상의 여러 이두문에서 확인되는 絃如는 부사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동사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사라는 품사도 재고해야 하고, 뜻풀이도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3 -白乙-[-을-?/-을-?/-을-?]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의 『吏讀辭典』에서 爲白乙所와 爲白乙喻를 등재했는데, 각각 ‘흐쭉을 바, 흐쭉을디’로 읽었다. 그런데 爲白乙齊는 ‘흐쭉을(ㅎ)저’로 읽었다. 그러고서 이 세 이두에서 확인되는 乙을 동명사어미로 분석하였다. 한편 是白乙喻와 是白乙遣에 보이는 乙도 마찬가지이다.

爲白乙所와 爲白乙喻, 是白乙喻 등에 보이는 乙은 그렇다고 보이지만, 爲白乙齊와 是白乙遣 등에 보이는 乙은 그것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아직 등재되지 않은 爲白乙遣, 是白乙去乎, 是白乙乎拏 등에 보이는 乙도 마찬가지이다. 이때의 ‘-白乙-’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국한 혼용 문서에서 확인되는 ‘-을-’과 ‘-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독음과 분석, 뜻풀이 등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右明文爲臥乎段 矣身亦 艱難所致以 還[上(?)]長利 多受破爲白乙遣 對答不得仍于 私奴德連 名字付 挨岩員欣 字田六ト八束 六斗落只塵 價折[正(?)] 租拾陸[?] 依數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後(?)]次一族子息等 爭 望隅有去等 此明文內乙用良 [告(?)]官卞正爲乎事 <嘉靖四十五年(1566)閏十月初二日 私奴莫大處明文> 典特爲分揀 俾無他奴婢橫侵良役之弊教是乎則 令監主仁聲仁聞永有辭於他道他官是白乙去乎 行下向教是事

平昌令監主處分 丙戌二月日所志[着押]【題辭】 戶籍查實是在果 從當更查處向事 <慶尙道安東居金生員奴於屯伊 所志(병술년?)>

姜湫死後其同生和會時 他矣 衿得 奴婢乙 萬無自相衿付之理 是李大意 其曾祖 衿得 如是爲臥乎所 亦爲奸巧爲白乙乎於 設使姜湫衿得 而傳係于李成立 則姜湫之子栢齡亦 於朴文奎放賣文記良中 萬無筆執之理 是李大意亦 么麼後生以 不有祖上文券妄生奸謀非理好訟爲臥乎所 < 安東居生員金邦烈幼學金邦衡 所志>.

이때의 ‘-白乙-’은 是乎乙加尼에서 확인되는 ‘-乎乙-’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矣身上典漁業次均案付二兩稅船使用 去二月良中 來泊治下致島江頭是乎乙加尼 風濤大作 同船隻片片破碎是乎則 漁事狼狽 一島所共知也 而無船納稅 極爲冤枉 往呈本邑次 緣由仰訴爲去乎 後考次論理立旨成給 以爲頃案之地 千萬望良只爲行下向教是事 <扶安立下面愚礪里 居私奴萬葉 所志>

4. 마무리

이 발표에서는 기존 이두 자료에서 보충해야 할 것은 없는지, 재해석하고 재판단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몇 예를 통해서 생각해보았다. 이러한 것들은 필자가 여러 이두문을 살펴보고, 해독과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존 이두사전류의 지식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라고 본 것들이다. 이들 외에도 몇 예가 더 있는데, 쉬 판단이 서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일일이 소개하지는 못했다. 물론 이 글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연구하여, 앞으로 나올 이두사전이나, 개정이나 증보 따위를 거치는 이두사전에서는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학술대회 장소 및 식사 장소 안내

① 학술대회 장소 및 점심 식사 장소



②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버스 정류장



③ 버스 하차 장소 및 저녁 식사 장소

